202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2. 1

금융위원회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내실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 **(자문 기능 강화)** 각계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전현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위원을 위촉**하여, 금발심 회의와 자체평가 위원회 평가 간 **연결성 강화**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컨설팅 기능 제고**

⇒ 단순 사후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피드백기능 강화

○ **(종합적 평가지표) 계획의 이행도, 성과지표 달성도** 뿐 아니라, **정성적인 효과**나 **계획·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중간점검 활성화

○ **(지속적 내부점검) 매주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되는 **「정책조정회의」**(국장급 이상 간부 참석)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요 정책의 이행 실적을 점검**('21년 총 49회 개최)

- 미진 사항에 대해 **부처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회의 직후 **주요 내용을 각 실·국에 전파**하여 후속조치 촉구

□ 사후적인 환류 시스템 강화

○ **(정책 반영)** 자체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반영**, **'22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에 참고하는** 등 정책의 환류기능 강화

- 미흡과제의 경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제언** 등을 토대로 **보완·개선방안을 제시** 및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평가결과의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 **과제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평가항목**의 점수는 **평가자별 및 구간별로 강제배분**(상대평가)

- 필요시 관리과제의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가 가능하도록 **정성적 측정방법을 병용**

□ 평가방법

○ 정책담당자 및 평가총괄팀의 **내부적인 평가지원**과 함께 자체 평가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배분

< 평가등급 분포 기준(국조실 지침 의거) >

순위 누적 %*	등급명	총 38개 관리과제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1등급	1위
5%초과 **~20%이내**	우수 / 2등급	2 ~ 7위
20%초과 **~35%이내**	다소 우수/ 3등급	8 ~ 14위
35%초과 **~65%이내**	보통 / 4등급	15 ~ 25위
65%초과 **~80%이내**	다소 미흡/ 5등급	26 ~ 31위
80%초과 **~95%이내**	미흡 / 6등급	32 ~ 36위
95%초과~	부진 / 7등급	37 ~ 38위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총 38개 관리과제 62개 성과지표

○ 평가지표

- Ⅰ계획수립의 적절성*(30점), Ⅱ계획대비 성과 달성도(50점), Ⅲ포괄적인 정책효과성(20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계획수립의 적절성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 계획 수립 단계에서 외국 사례·통계 현황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적 충실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 상대평가 항목**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 상대평가 항목**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계획대비 성과달성도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 과제별 **추진계획의 준수** 여부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 상대평가 항목**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지표 개선** 및 **정성적 정책효과 발생** 여부

I. 계획 수립의 적절성

I-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측정방법

○ 계획수립 단계에서 외국 사례·통계 현황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적 충실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실시 (공청회, 현장간담회 등)

* '21년도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정책과제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21년 이전)에 실시한 것**을 실적으로 인정

⇒ 상황변화로 새로운 조사·의견수렴이 필요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 요인

판단근거	점수
- **ⓐ, ⓑ 모두를 실시**했으며 - 사전조사·의견수렴이 **충분히 계획수립에 반영**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8~10점**
- **ⓐ, ⓑ 모두를 실시**했으나 -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계획수립에 실질적인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7점**
- ⓐ, ⓑ 중 **하나라도 시행되지 않은 경우**	**1~3점**

○ **과제의 특성**상 사례분석이 **불가능**하거나 의견수렴이 **불필요**한 경우, 계획수립 과정 전반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여 점수부여

실적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 ⓑ 관련 실적을 각각 요약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등 분석결과
공청회/현장간담회/협의회/전문가회의 등 개최계획 또는 결과보고서

※ 과제의 특성상 사례분석이 불가능 하거나 의견수렴이 불필요한 경우 ①불가능/불필요한 사유와 ②전반적인 계획수립과정을 작성

I-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측정방법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강제배분(상대평가) 지표

판단근거	배분비율	점수
- 과제 간 **「2021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과제추진계획(분기별)을 비교 - 추진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이행난이도가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나열하여 상위 30% → 8~10점 중간 50% → 4~7점 하위 20% → 1~3점 부여	**30%** **50%** **20%**	**8~10점** **4~7점** **1~3점**

I-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강제배분(상대평가) 지표

- 단,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성과지표라 판단되는 경우 상대평가에 따른 배점 배분 후 추가적으로 0.5점 가점 부여

판단근거	배분비율	점수
- 과제 간 **「2021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비교 - 지표가 **정책목표를 잘 대표하고 있는지 목표달성 난이도가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나열하여 상위 30% → 8~10점 중간 50% → 4~7점 하위 20% → 1~3점 부여	**30%** **50%** **20%**	**8~10점** **4~7점** **1~3점**

II. 계획대비 성과 달성도

II-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

측정방법

ㅇ 과제별「2021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분기별)**의 준수** 여부

판단근거	점수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에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을 완료**한 경우	**14~20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 이상인 경우	**7~13점**
- 추진계획 대비 일정 준수사항이 80% 미만인 경우	**1~6점**
[가점] 3조항 이상의 법률 제·개정 완료 **3조항 미만의 법률 제·개정** 완료 **시행령·규정 제·개정** 완료 **내부지침·기준 제·개정** 완료	**+5점** **+3점** **+2점** **+1점**

ㅇ **일정지연**이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실적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추진계획 이행 실적을 각각 요약하여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 가점요인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을 경우 별도로 강조하여 기재 필요

※ 일정지연이 발생했고 이것이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상세히 작성

II-2.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30점)

측정방법

ㅇ 과제별「2021년도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목표 목표치 달성** 여부

* 성과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성과지표 목표 달성율은 여러 지표의 '평균치'로 계산

** 성과지표가 수치가 아닌 '000 방안 마련', '000 시행령 개정' 등 All or Nothing의 성격을 가진 경우
목표를 달성했으면 100%
달성하지 못했으면 기울인 노력을 토대로 달성율을 판단

판단근거	점수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 했으며 - 목표치 달성 이후 모니터링·홍보활동, 법안통과를 위한 대국회활동, 하위규정 제·개정준비 등 **사후적인 관리 노력이 충실히 이루어진 경우**	**25~30점**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 했으나 - 목표치 달성 이후 모니터링·홍보활동, 법안통과를 위한 대국회활동, 하위규정 제·개정준비 등 **사후적인 관리 노력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경우**	**20~24점**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0% 이상 ~ 100% 미만** 달성	**16~19점**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90% 미만** 달성	**15점 이하**

ㅇ 목표치 달성 실패가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실적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과 관련된 증빙자료 첨부

※ 목표치 100% 달성에 실패했고 이것이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상세히 작성

III. 포괄적인 정책 효과성

III-1. 정량적·정성적 정책효과 (20점)

측정방법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지표 개선** 및 **정성적 정책효과 발생** 여부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 ⓐ 성과지표로서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관리과제 추진으로 개선되는 계량화된 지표

ⓑ 통계·수치 등으로 나타낼 수는 없는 기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 강제배분(상대평가) 지표

판단근거	배분비율	점수
- **ⓐ, ⓑ 두 가지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순위를 나열하여 상위 30% → 14~20점 중간 50% → 7~13점 하위 20% → 1~6점 부여	**30%**	**14~20점**
	50%	**7~13점**
	20%	**1~6점**

실적 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계량화된 성과 작성시 **'개선' 효과**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작성

 * 예) 최근 5년치 수치 제시

- 국민불편 해소·국민편익 증진 관련 성과 작성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 위주**로 작성

2. 평가결과

(1) 총 평

□ ‘21년도 총 20개 과(2팀)의 38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1개(3%), 우수 6개(16%), 다소 우수 7개(18%), 보통 11개(29%), 다소 미흡 6개(16%), 미흡 5개(13%), 부진 2개(5%)로 나타남

- **우수 이상 과제**는 「공매도 제도 개선」,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등이며,

- **미흡 이하 과제**는 「크라우드펀딩 역할강화」, 「자금조달 환경개선」 등인 것으로 평가됨

⇒ 미흡 이하 과제의 보완필요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관리함으로써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금융안정을 위한 관리과제**(「가계부채 리스크관리 강화」 등) 및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관리과제**(「공매도 제도 개선」, 「일반청약자의 주식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가 우수평가를 받아 지난해의 노력을 인정받음

□ 총 38개 관리과제의 62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약 92%로

- 5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녹록지 않은 국회 입법여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개정 등),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여건 환경 악화**(크라우드 펀딩 조달실적 등)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공매도 제도 개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등 **7개 과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추가의견도 제시됨

○ **(공매도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이후 `21년 재개될 때 그 동안의 문제점 등이 개선되었다는 평가

- 시장 참여자들의 공매도 제도 이해를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추가의견

○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명확한 시장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금리 인상의 본격화 전 적절한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

○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도입 논의 10년 만에 비지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금융감독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는 평가

- 자산규모에 더해 정성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추가의견

○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정책시행 결과, 저신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신용관리 컨설팅을 통한 신용점수 향상 등 포용금융 측면에서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금융의 이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의견이 제시

○ **(일반청약자 주식시장 참여기회 확대)** 일반 청약자에 대한 균등배정방식을 도입하여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형평성 확대 및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법 내실화)** 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기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

○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대외적으로 성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과제이지만, 시의성이 있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이 있다는 평가

- 비은행권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의견도 제시

(3) 개선·보완 사항

□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고려해 7개 과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보완 추진

○ **(크라우드펀딩 역할강화)** 혁신기업의 성장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은 우수한 편이나, 국회논의 지연으로 제도가 정상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해 입법추진 지원 및 정책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

- 향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방안 검토예정

○ **(자금조달 환경개선)** 동산담보와 기술금융을 장려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리스크관리와 사업재편과의 연관성 보완 필요하다는 평가

- 현행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은행권 회수지원 수요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지원하여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

○ **(불법사금융 근절노력)** 과제의 성격상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이 필요한 만큼, 공동추진단의 지배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및 불법사금융 유발요인 등에 대한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

- 금감원, 경찰, 방심위 등 범정부 공동추진단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근절 및 단속을 지속할 예정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제재 강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부과를 위한 과징금 도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며, 향후 성과지표의 구체화 및 다양화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

- 수 차례 소위 논의로 대다수의 쟁점이 해소되었으나, 소수 의원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향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

○ **(新국제회계기준 도입)**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가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었으나, 국회논의 과정에서 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한 측면이 지적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노력을 지속*하고 법 개정 외의 수단을 통한 관행 노력을 지속할 예정

* 이용우 의원안 등 국회 제출안 검토 및 병합 심사 지속 추진

○ **(자동차·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제도 개선 노력은 인정되나, 여전히 과잉의료 등에 따른 손해율 악화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

-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상품 전환을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우수*
유한책임 담보대출 확대	*보통*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지표 신뢰성 제고	*우수*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보통*
제 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다소 우수*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다소 미흡*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의 시장 안착 도모	*다소 미흡*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지속발굴 및 민간투자 확산	*보통*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환경구축	*부진*
코로나19 대응 기업 자금지원	*보통*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다소 미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다소 우수*
언택트 금융 활성화	*다소 우수*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다소 우수*
금융산업 진입규제 합리화	*보통*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추진	*다소 우수*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다소 미흡*
금융회사 건전경영 확립	*다소 미흡*
新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시행 대비	*미흡*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개혁	*보통*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우수*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 유도	*다소 우수*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미흡*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우수*
자동차·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미흡*
중금리대출 활성화	*보통*
청년 주거비 부담 절감	*보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보통*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우수*
차세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다소 우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미흡*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	*매우 우수*
공시 투명성 및 투자자 이용편의성 제고	*보통*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적발·감시체계 및 제재 강화	*미흡*
일반청약자의 주식시장 참여기회 확대	*우수*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보통*
크라우드펀딩의 혁신기업 성장지원역할 강화	*부진*

Ⅰ-1-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증가율 관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관리 재개**

- 금년 **7월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안정세 회복 중**

* 증가율(전년동기비, %) : ('20년말) 8.0 ('21.7월) 10.0 (8월) 9.5 (9월) 9.2 (10월) 8.6 (11월) 7.7

○ **(상환능력심사 강화)** 상환능력 만큼 대출받는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가계대출 관리방안」**('21.4.29)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21.10.26)을 마련하여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등 추진

* (21.7월~) 규제지역 6억원초과 주담대 & 1억원초과 신용대출 → (22.1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 (22.7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 **(취약부문 관리)**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및 토지 등 **非주담대**에 대한 **관리 강화**

-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기준 하향조정(60%→50%) 및 금융회사별 DSR 규제비율 강화

- **非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全금융권에 도입('21.5.17)

○ **(서민·실수요자 보호)**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장치** 마련

- 4/4분기중 취급된 전세대출 총량한도에서 제외 및 잔금대출 TF 운영으로 입주사업장별 자금상황 모니터링('21.10월)

- **LTV·DTI가 우대**되는 무주택 서민실수요자 **지원대상**(주택가격 6억→ 9억원 등) 및 **우대수준 확대**(LTV +10→ 최대 +20)('21.7.1)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10.0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가계부채 증가율 및 질적 건전성 관련 지표 등 사전조사 실시
- 기 도입된 DSR 관리지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금감원 협의 등을 통해 DSR 주기적 이행상황점검 계획을 수립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가계부채 관리 TF」 운영 등을 통해 금감원, 업계, 협회 등과 함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Ⅰ-1-①-1-1-ⓑ-1-「가계부채 관리 TF」 관련 보도자료</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7.67</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등 제도정비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 등 미시적 관리를 병행하는 계획을 수립</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67</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DSR은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대출이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로서 DSR 이행상황 점검은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대출이 실행되는지 확인가능한 대표성있는 지표
-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인 DSR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상환능력에 부합하는 여신심사 관행의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임</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9.67</td><td>○「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DSR 이행실태 점검 (1분기)</td><td>○ 全 금융권 DSR 이행상황 점검</td><td>완료</td></tr><tr><td>가계부채 관리방안 마련 (2분기)</td><td>○「가계부채 관리방안(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마련</td><td>완료</td></tr><tr><td>DSR 이행실태 점검 (3분기)</td><td>○ 全 금융권 DSR 이행상황 점검</td><td>완료</td></tr><tr><td>DSR 이행실태 점검 (4분기)</td><td>○ 全 금융권 DSR 이행상황 점검</td><td>완료</td></tr></table>☞ Ⅰ-1-①-2-1-1-全 금융권 DSR 이행상황 점검
☞ Ⅰ-1-①-2-1-2-「가계부채 관리방안(4.29)」 및「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일부완료·미흡 사유 (필요시 작성)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9.33</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DSR 점검(횟수)</td><td>4회</td><td>4회</td><td>달성</td></tr></table></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14.67</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 지속 감소
* ('18)0.26% ('19)0.26% ('20)0.20% ('21.9말)0.17%
- (정량) 은행 주담대 평균 LTV : 지속 감소
* ('18) 51.6% ('19) 50.2% ('20) 45.6% (21.2Q말) 41.3%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정성) 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기존 "담보·보증 중심 → 상환능력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되며, 종전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만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가 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 기대
- (정성) 과도한 민간 신용팽창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해소 → 경제분야 불확실성 해소로 실물경제의 안정적·지속적 성장 뒷받침 가능</td></tr>
</table>

I -1-②	유한책임 담보대출 확대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잔액 확대**('20년 16.1조원 → '21.11월 27.6조원)

- 전체 정책모기지 중 유한책임대출 잔액 비중은 '20년 11.5% 수준에서 '21년(1~11월 기준) 18.2%로 크게 상승

②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대상 확대**('21.7월)

- 주택구입 용도에 한해 허용한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기존 대출 상환용도까지 적용범위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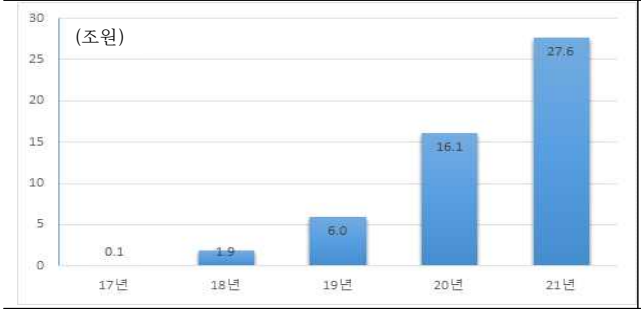
③ **금융기관 유한책임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

- 유한책임 주담대 취급실적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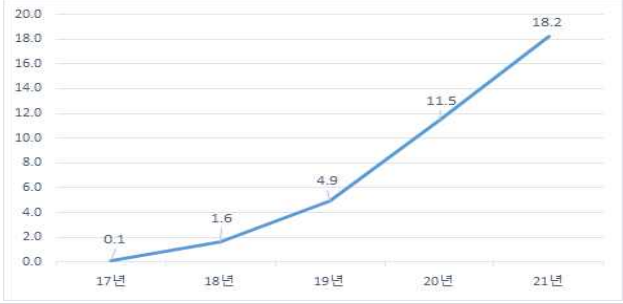
· 신규 주담대 취급액의 2%를 취급 목표로 제시하고 **초과달성 시 최대 0.03%p의 출연료를 감면**

<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잔액 확대 실적 >

유한책임 주담대 공급량 추이



전체 정책모기지 중 유한책임대출 비중



< 유한책임 대출 확대 관련 언론보도>

<이데일리('21.5.17.)>
'집값 만큼만 유한책임 주담대' 16조원 돌파...은행권 확산 추진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영역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민간 시중은행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시중은행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은행이 주택구입 목적 신규취급 담보대출의 2% 이상을 유한책임 대출로 취급하면 주금공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데일리
[단독]'집값 만큼만 유한책임 주담대' 16조원 돌파...은행권 확산 추진
입력2021.05.17. 오후 5:41 수정2021.05.17. 오후 6:51
23 10 가가
2017년 첫 도입, 주금공 정책금융상품 3개 적용 중
차주 책임범위 주택담보 한정...작년말 16조원 넘어
文정부 국정과제...당국, 시중은행 도입 인센티브 제공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33</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유한책임대출 도입연도 평균 취급비중* 등 사전 기초조사 실시
* 디딤돌 유한책임대출 도입연도('17년) 공급비중 2.5%
보금자리론 유한책임대출 도입연도('18년) 공급비중 4.2%
-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 전 해외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전략적 부도*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파악
* 생활자금 목적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받은 뒤 미상환하는 행위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융기관의 유한책임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적정수준 목표설정 관련하여 은행연합회로부터 사전의견수렴 절차 진행
☞ Ⅰ-1-②-1-1-ⓑ-1-유한책임형 정책모기지의 자금용도 확대 검토 요청 ('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Ⅰ-1-②-1-1-ⓑ-2-"집값 만큼만 유한책임 주담대 16조원 돌파... 은행권 확산 추진"(이데일리)</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5.00</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설정
- 유한책임대출 민간 확대를 위해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취급비중 및 은행연합회 목표설정 의견을 고려하여 취급비중 목표(2%)를 설정하고 인센티브(출연료 감면)를 부여</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67</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전년 잔액('20년 16.1조원)보다 확대된 대출잔액을 목표치('21년 24조원)로 설정하는 등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
- 유한책임대출 민간확대를 위한 목표치를 신규대출 취급액의 2%로 설정하는 것은 은행연합회의 의견보다 높은 도전적인 목표</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7.67</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유한책임 대출잔액 확대 ('21년 기준 24조원)</td><td>- '21.11월까지 대출잔액 27.6조원</td><td>완료</td></tr></table></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8.00</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유한책임 대출잔액 확대</td><td>24조원</td><td>27.6조원</td><td>초과달성</td></tr></table></td></tr>
</table>

<table>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4.67</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공급실적 ‘20년 11.6조원 대비 ’21년 12.8조원으로 전년대비 10.3% 상승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공급금액>

<table>
<tr><th>구 분</th><th>‘17년</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h>‘21년</th></tr>
<tr><td>공급액</td><td>0.2조원</td><td>1.8조원</td><td>4.5조원</td><td>11.6조원</td><td>12.8조원</td></tr>
</table>
☞ Ⅰ-1-②-3-ⓐ-1-유한책임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21.11월까지 유한책임대출 잔액이 총 27.6조원으로 누적하여 552억원의 국민 편익이 증대되는 효과

* 27.6조원 × 0.2%(위기상황 발생 시 미수채권발생률) = 552억원

`08~09년 경제위기시 미수채권 발생률은 약 0.2%까지 상승

-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서민의 주담대 상환부담이 가계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차단

-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부채 총량증가를 억제하는 효과
</td>
</tr>
</table>

1-2-①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지표 신뢰성 제고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인플레이션, 中경기둔화, 신규 변이 발생 등 **글로벌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

- 美 국채금리상승, 헝다사태,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점검회의** 및 **시장안정 메시지 발표***(수시)

* 美FOMC 이후 금융시장동향 및 리스크요인 점검회의(6.17), 헝다사태 동향 점검회의(9.22), 증시 변동성 확대 따른 금융시장 점검회의(10.7) 등

- **금융리스크 대응반** 및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사전논의 점검** 및 **시장안정 메시지전파** (주 또는 월별)

- 주가, 환율, 국채금리,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 추이 등 **주요 금융지표** 등을 **매일 모니터링** (일별)

- 아케고스 파산사태, 中화룽공사 파산,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대두**되는 경우 **집중 모니터링** (수시)

②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위기발생 가능성을 매월** 체계적으로 **분석** (월별)

- 위기예측력이 높은 지표(5개 부문, 30개 변수)의 점검을 통해 **조기경보지수**(**EWI** : Early Warning Index) **도출**

- 각 권역별 위험도 점검변수를 이용하여 개별 금융기관*들의 위기가능성을 지수화한 뒤 이를 **전체 금융산업 위험지수**로 **도출**

*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사, 할부금융사, 저축은행(7개)

③ RP시장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코로나 위기시 증권사·여전사 등 비은행권에서 위기가 **증폭****된 점을 감안하여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종합점검** 등 **리스크 발굴·대응 추진** 중

* ①청산·결제 리스크 경감방안 마련, ②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RP거래 인프라 구축, ③RP 기일물 활성화 체계 마련 등
** '20.3월, 주요국 주가 폭락으로 인한 증권사 ELS 마진콜 대응과정에서 외환수요 폭증 등

④ 채권, 대출 등 현물상품의 경우 리보 산출중단시 사용할 금리를 미리 '**대체조항**(Fallback Provision)'에 **반영토록 하고,**

- 업권별 **리보 익스포져, 리보중단 대응계획**(시스템 전환 등)·**이행현황 점검** 등 실시

* '21년 하반기부터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시중 17개 은행 참여, 매월 점검회의 개최

⑤ **원화 이자율 파생거래**(IRS 등, 약 7,000조원 규모)에 널리 쓰이고 있는 호가기반 금리인 **CD 금리를 대체**하기 위해, **실거래 RP 거래 기반 무위험지표금리**를 **개발**

- 금융위·한국은행 주관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19.6월 설립)에서 '**국채·통안증권 RP금리**'를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21.2월)

- **'21.9월** 금융위는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 Risk Free Reference Rate)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및 EU 승인 등을 위하여 **국내 RFR**을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지정**

- **'21.11.25일 한국예탁결제원**을 **RFR산출기관**으로 **지정·산출개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및 이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 **상시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 필요**

○ 잔여 **리보금리 산출중단** 및 **한국 RFR**의 **성공적 시장 안착**을 위한 추가 노력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33</td><td>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국내외 금융시장동향, 외신·주요 IB 해외동향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포함한 국내외 금융시장 현황 및 주요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달성도 및 시사점 발굴(매일)

☞ Ⅰ-2-①-1-1-ⓐ-1-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유관기관 공조) 기재부·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국내외 시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마련

- (전문가회의) 정책방향 및 세부실행과제와 관련하여 학계, 전문가 등 시장 전문가 의견 청취(수시)

☞ Ⅰ-2-①-1-1-ⓑ-1-유관기관 공조, 전문가 간담회 등
</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8.67</td><td>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중요한 거시경제지표 등을 일단위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집 가능한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하고, 적시성 있는 분석 수행

-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 RFR 활성화방안 마련, 리보중단 대응계획 등 국제규범변화에 국내 금융시장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추진계획을 마련·시행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 colspan="3">< 기존 계획 : 모두 달성 ></td></tr>
<tr><td>기관별 리스크 점검</td><td>- 격주~한달 간격으로 거금회의 수시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td><td>완료</td></tr>
<tr><td>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td><td>- 매월 EWS, 외국인자금흐름 점검 실시</td><td>완료</td></tr>
<tr><td>RFR 선정결과·활성화 방안·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방안 발표</td><td>- RFR선정결과·활성화 방안 및 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방안 발표('21.2월, 금융위 보도자료)</td><td>완료</td></tr>
<tr><td>리보 익스포져 리보중단 리스크 자체평가</td><td>-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21.12월 금융위 보도자료)</td><td>완료</td></tr>
<tr><td colspan="3">< 기존 계획 외 추가 실적 ></td></tr>
<tr><td>금융부문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td><td>-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향 검토</td><td>완료</td></tr>
<tr><td>금융시장 점검회의</td><td>- 헝다사태등 돌발변수 발생시 시장점검회의 개최·시장안정메시지 발표</td><td>완료</td></tr>
</table>
☞ Ⅰ-2-①-1-2-1-기관별 리스크 점검

☞ Ⅰ-2-①-1-2-2-RFR,리보

☞ Ⅰ-2-①-1-2-3-금융부분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 EWS는 대외비공개 자료로 실적점검 결과 제출 불가
</td></tr>
</table>

<table>
<tr>
<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
<td>7.67</td>
<td>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정보를 지닌 관계기관과 현안에 대한 협업·정보 공유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전문성을 지닌 관계기관(기재부·한은·금감원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 실적을 지표로 정한여 대표성을 확보

- 위기예측력이 높은 지표(통화량, 외환보유액 관련 지표 등)의 점검을 통해 조기경보지수(EWI: Early Warning Index)를 도출하는 것은 위험을 감지하기 위한 제일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EWS 점검실적을 지표로 정한 것은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측면에서 강한 적정성을 지님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경기순응성·상호연계성에 주안점을 둔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차원의 리스크점검 및 정책대응 필요성이 제고됨. 민·관을 포괄하는 다양한 기관을 (금융위·금감원·예보·한은·증금·금융연·자본연·보험연 등) 모아 정보 공유 및 심층논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감독의 병목(bottleneck) 현상과 무대응 편향(inaction bias)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실적‘은 성과지표로 적절함
</td>
</tr>
<tr>
<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9.67</td>
<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6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기관별 리스크 점검</td><td>거시경제금융회의 20회 등</td><td>완료</td></tr>
<tr><td>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td><td>매달 실시</td><td>완료</td></tr>
<tr><td>RFR 선정결과·활성화 방안·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방안 발표</td><td>- RFR선정결과·활성화 방안 및 리보금리 산출중단 대응방안 발표(‘21.2월, 금융위 보도자료)</td><td>완료</td></tr>
<tr><td>리보 익스포져 리보중단 리스크 자체평가</td><td>-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21.12월 금융위 보도자료)</td><td>완료</td></tr>
</table>

☞ Ⅰ-2-①-2-1-1-기관별 리스크 점검

Ⅰ-2-①-2-1-2-RFR, 리보

※ EWS는 대외비공개 자료로 실적점검 결과 제출 불가
</td>
</tr>
</table>

<table>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27.33</td>
<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기관별 리스크 점검 실적(공통)</td><td>20회</td><td>20회</td><td>달성</td></tr>
<tr><td>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EWS 실시(공통)</td><td>12회</td><td>12회</td><td>달성</td></tr>
<tr><td>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td><td>10회</td><td>11회</td><td>달성</td></tr>
</table>
※ EWS는 대외비공개 자료로 실적점검 결과 제출 불가

☞ Ⅰ-2-①-2-2-1-기관별 리스크 점검 실적

Ⅰ-2-①-2-2-2-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 등 리스크요인 대응 실적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테이퍼링, 헝다 등 리스크요인 발생시 수시 점검·대응회의)
</td>
</tr>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5.33</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일별 금융시장 동향, 주별 금융시장 이슈 분석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리스크 요인을 발굴하여 대응 중

☞ Ⅰ-2-①-3-1-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가령 RP시장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코로나 위기시 증권사·여전사 등 비은행권에서 위기가 증폭**된 점을 감안하여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종합점검 등 리스크 발굴·대응 추진 중('22년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 포함)

* ①청산·결제 리스크 경감방안 마련, ②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RP 거래 인프라 구축, ③RP 기일물 활성화 체계 마련 등

** '20.3월, 주요국 주가 폭락으로 인한 증권사 ELS 마진콜 대응과정에서 외환수요 폭증 등

☞ Ⅰ-2-①-3-2-22년 금융위 업무보고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주요 관계기관 리스크 점검 회의와 EWS, 외국인자금 동향 등 주요지표의 모니터링, 거금회의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안정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 '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파운드·유로·엔화 등 리보 관련 계약은 성공적으로 종료 또는 전환이 사실상 완료(99.6%)되었고, 한국 RFR인 KOFR는 11.25일 정식 산출 및 공시 이후 현재까지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원화 단기자금시장의 상황변화(기준금리 변화, 수급상황 등)를 즉각 반영
</td>
</tr>
</table>

1-2-②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점진적·단계적 정상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21.3월)** ❶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신청기한 연장**(~'21.3.→~'21.9.) 및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마련**, ❷**규제유연화 조치 연장**

- 전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 금융지주회장(2.16.), 정책금융기관장(2.19.), 금융협회장(2.22) 간담회 등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조치연장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유예기한 종료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 구체화

*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와 사전 컨설팅을 거쳐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방법 선택 가능

<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

(ⅰ)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ⅱ)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ⅲ)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ⅳ)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ⅴ)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 이와 함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등의 **기한 연장**을 결정

○ (**'21.9월**) ❶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신청기한 연장**(~'21.9.→~'22.3.) 및 **연착륙 내실화 등 보완방안** 마련, ❷규제유연화 조치 **일부 연장**

- 금융협회장 간담회(9.16일)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

* 중소기업·소상공인(9.9.), 금융지주(9.10.) 간담회, 당정협의(9.15.), 경제중대본(9.16.)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 다만,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프로그램** 마련

< 차주 유형별 지원프로그램 개선안 >

상환가능 차주	상환애로 차주
▸ 연착륙 방안 내실화 (거치기간 부여, 상환기간 연장)	▸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개선 ▸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개선 ▸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
▸ 정책금융 프로그램(약 4조원) 산은 재무안정동행 등 / 신보 밸류업 등 / 기은 연착륙 지원 등	

- 이와 함께 규제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검토 → **10개 중 8개*에 대한 기한 연장** 결정

* LCR 완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2.3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연착륙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필요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연착륙 실시 등 보완방안 추진 현황 등을 파악하고,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 지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9.00*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기한 연장, 연착륙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원실적** 및 **대출잔액** 분석 실시 - **(금융규제 유연화)**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공급 확대 등 **조치 추진현황** 및 **점검·평가** 시행 ☞ Ⅰ-2-②-1-1-ⓐ-1 (보도자료) 21.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 Ⅰ-2-②-1-1-ⓐ-2 (별첨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 ☞ Ⅰ-2-②-1-1-ⓐ-3 (별첨) 금융규제 유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Ⅰ-2-②-1-1-ⓐ-4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부 연장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기관장, 금융협회장 등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 **(금융규제 유연화)**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조치 현황 점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 실시 ☞ Ⅰ-2-②-1-1-ⓑ-1 (보도자료) 중기 소상공인 간담회 ☞ Ⅰ-2-②-1-1-ⓑ-2 (보도자료) 5대 금융지주사 간담회 ☞ 그 외 ⓐ에 첨부한 4개 증빙자료에 관련 내용 포함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5.67*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신청기한의 **종료시점인 '21.3월**에 맞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방안, 규제유연화 연장방안 마련 → **1분기 내에 빠르게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절 - ❶코로나19 피해 中企·소상공인 어려움과 금융기관 잠재부실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며, ❷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조치 마련 등도 병행 → **이행난이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
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7.00*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방안 실시, 규제유연화 연장을 위해서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고 궁극적인 목표 - '20.4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한 이후 금융지원 조치 정상화를 위해 최초로 장기·분할상환 유도를 위한 연착륙방안 마련을 목표로 삼은 것은 적극적인 것으로 보임

<table>
<tr>
<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8.33</td>
<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
<tr><td>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릴레이 간담회 개최</td><td>금융지주회장(2.16), 정책금융기관장(2.19), 금융협회장(2.22.) 간담회 완료

→ 추가로 9월 연장 결정시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9.16), 금융지주(9.10) 간담회 및 당정협의(9.15.), 경제중대본(9.16.), 금융협회장(9.16) 등을 실시</td><td>완료</td></tr>
<tr><td>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연장 및 연착륙방안 발표</td><td>보도자료 배포</td><td>완료</td></tr>
<tr><td>규제 유연화 연장방안 발표</td><td>보도자료 배포</td><td>완료</td></tr>
</table>
☞ Ⅰ-2-②-2-1-1 (보도자료) 21.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 Ⅰ-2-②-2-1-2 (보도자료) 금융협회장 간담회

☞ Ⅰ-2-②-2-1-3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Ⅰ-2-②-2-1-4 (보도자료)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일부 연장
</td>
</tr>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29.33</td>
<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Ⅰ-2-②-2-1에 첨부한 4개 증빙자료 동일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 고</th></tr>
<tr><td>규제유연화 연장방안 마련</td><td>방안 발표</td><td>방안 발표
(보도자료 배포)</td><td>달성</td></tr>
<tr><td>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방안 마련</td><td>방안 발표</td><td>방안 발표
(보도자료 배포)</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3.0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20.4월~' 21.7월까지 전 금융권은 총 222조원 지원하였으며, 대출잔액은 120.7조원 → 상환유예 대출잔액중 연착륙 방안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받은 비율은 10.4%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유동성 위험가구 비중을 1.8~1.9%p 낮추고, 상환불능가구 비중을 0.6%p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

☞ Ⅰ-2-②-3-ⓐ-1 (별첨1)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제도 개선방안

☞ Ⅰ-2-②-3-ⓐ-2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정성)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에 대응을 위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평가

☞ Ⅰ-2-②-3-ⓑ-1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td>
</tr>
</table>

I-2-③	제 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1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

○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여신금융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시행('21.4.1.)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❶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

*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되며, 총자산 기준 99.4%에 이름

❷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❸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

❹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할부금융업자 등)에 대해 적용하던 **레버리지(자산/자본) 비율**(10배)을 카드사(8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21.12.8.)

2 **(저축은행)**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1.10.27일)

-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① 정상자산 중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 삭제
② 요주의자산 중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7%)하는 규정 삭제

-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자의적인 충당금 적립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절차* 강화**

* ①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이사회/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설정, ②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금감원 보고 의무, ③금감원은 적립결과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저축은행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위기상황분석제도 도입**(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1.10.27일)

○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를 **부문검사시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1.10.27일)

* (기존)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가능 → (개정) 부문검사시에도 가능

3 **(상호금융)**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를 위해 거액여신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한 신협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거액여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규개위 진행 중

*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 **(업종별 여신한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완료('21.12.28)

* 부동산업·건설업 여신은 각각 전체 대출(어음포함)의 30% 이내로, 그 합계액도 전체 대출의 50% 이내로 제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67</td><td>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 규모, 자금조달 구조 및 여전채 보유 현황, 여전채 순발행 규모, 여전채 스프레드 변화 추이 등을 분석

- 저축은행 재무상황 분석 실시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년12월)에서 거액여신,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필요성 검토

☞ Ⅰ-2-③-1-1-ⓐ-1 (보도자료) 여전사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

☞ Ⅰ-2-③-1-1-ⓐ-2 ‘21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금감원)

☞ Ⅰ-2-③-1-1-ⓐ-3 (보도자료) ‘20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대책마련·추진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20.9~10월)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상호금융정책협의회(‘20년12월)에서 거액여신,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

☞ Ⅰ-2-③-1-1-ⓑ-1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

☞ Ⅰ-2-③-1-1-ⓑ-2 (공고)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Ⅰ-2-③-1-1-ⓑ-3 (보도자료) ‘20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9.00</td><td>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제정,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레버리지 비율 조정 등 추진계획이 구체적이며 이행난이도 또한 적절하다고 평가됨

-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도입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신협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등 분기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8.00</td><td>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는 거액여신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는 해당 목표 설정은 적절
</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8.67</td><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상호금융조합의 거액여신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입법예고)</td><td>신협법 및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 완료</td><td>완료</td></tr>
</table>
</td></tr>
</table>

여전사에「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도입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으로「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시행 ('21.4.1.)	완료
저축은행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추진(입법예고)	저축은행 완충자본 제도 도입 방안 검토중	일부 완료
할부금융업자 레버리지 비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1.12월)	완료
금감원의 여전사 유동성 평가	카드사 유동성 관리실태 점검('21.8.), 캐피탈사 유동성리스크 관리실태 점검('21.10.) 등	완료

☞ Ⅰ-2-③-2-1-1 (보도자료) 신협법 및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
☞ Ⅰ-2-③-2-1-2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 Ⅰ-2-③-2-1-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고시문

○ 일부완료·미흡 사유 (필요시 작성)

- 저축은행 완충자본 제도 도입은 저축은행 건전성 제도에 관해 종합적인 검토 후 도입예정

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

29.33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Ⅰ-2-③-2-2-1 (보도자료) 신협법 및 동법 시행령 입법예고

성과지표명	'21년 목표치	'21년 실적	비고
상호금융조합의 거액여신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입법 예고	입법예고 완료	달성

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

11.00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등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에 기여

< 제2금융권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

구분	자기자본비율 ('21.6말)	연체율 ('21.6말)	고정이하 여신비율 ('21.6말)	순이익 ('21.1~6월중)
저은	BIS비율 14.06% (7~8% 이상)	2.7%	3.6%	1조 618억원 (전년동기대비 66.9%↑)
카드	조정자기자본비율 21.4% (8% 이상)	1.13%	0.9%	1조 4,944억원 (전년동기대비 33.7%↑)
비카드	조정자기자본비율 16.3% (7% 이상)	1.02%	1.53%	1조 9,965억원 (전년동기대비 50.0%↑)
상호	순자본비율 8.15% (농협 5%·기타 2% 이상)	1.55%	1.88%	1조 8,376억원 (전년동기대비 23.9%↑)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도입, 저축은행 손실흡수능력 확충, 상호금융 조합의 대출부실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제 도입 등을 통해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2금융권 신뢰도 제고에 기여

Ⅰ-2-④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❶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개선 및 **기업신용위험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실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

- **(대기업 : 주채무계열)** 개선된 기준을 적용하여 **32개사를 주채무계열**로 선정(전년比 +4개사), **7개사**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 **(기준개선)** '20.12월 기업의 **시장성차입(CP, 회사채 등) 증가** 등 **자금조달 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개선

종전		'21년
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가 전체 **금융권 신용공여**의 0.075% 이상	⇒	❶**계열 총차입금이 명목GDP의 0.1% 이상**이며, ❷계열의 **은행권 신용공여**가 전체 **은행권 기업 신용공여**의 0.075% 이상

㉡ **(성과)** **차입금이 과다**한 일부 **해운사***를 **주채무계열로 편입**하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 **HMM, 장금상선, SM** : 차입금 기준 충족으로 '21년 주채무계열에 신규선정 되었으며, 재무구조 평가결과 재무구조개선약정도 체결

- **(개별기업 : 신용위험평가)** **소규모 취약기업**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160개사*(전년比 +3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

* 대기업 : 3개사(전년比 △1개사) / 중소기업 : 157개사(전년比 +4개사)

㉠ **(기준개선)** **고위험 기업群**에 대한 채권은행의 **평가역량 집중**을 위해 **신용공여 30~50억원** 기업에 대한 **평가대상 선정기준 개선***

* 신용공여 50억원 미만 기업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금감원 행정지도)

종전		'21년
신용공여 30억~50억 기업중 **금감원이 지정한 업종에 속하는 모든 기업**	⇒	신용공여 30억~50억 기업중 **각 은행이 선정한 부실우려 기업**

㉡ **(성과)** 신용공여 30~50억원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수는 17개→53개**로 크게 증가, **부실징후기업 선정률도 4.2% → 28.5%로 크게 상승**

❷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 **(구조조정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 등 추진

* 1조원 규모 이상의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완료
** 신생·소형 펀드 운용사 참여 유도를 위한 전용리그 신설

<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및 집행액 ('21.12월말, 억원) **>**

구분 (억원)	조성액					집행액
			모펀드 (출자실적)	민간매칭	계	
1차 ('18.8.~)	1.6조원	블라인드	4,000	6,228	10,228	12,868
		프로젝트	1,415	4,798	6,213	
2차 ('20.5.~)	1.5조원	블라인드	3,009	3,961	6,970	10,433
		프로젝트	2,006	6,450	8,456	
3차 ('21.5.~)	1.1조원	블라인드	3,000	4,207	7,207	200
		프로젝트	1,510	2,115	3,625	

- **(사업재편기업 지원)** 캠코를 중심으로 **사업재편기업**의 **자산**(유휴설비 등)을 **인수**하여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범운영*

* 사업재편 승인기업 3개社, 총 422억원 지원 완료('21.11~12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신용위험평가 개선)** 금년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비상조치 정상화 과정**에 맞도록 **신용위험평가 방식**의 **변경 검토**

○ **(사업재편기업 지원)** **사업개편기업**의 증가 추세*를 고려, **인수대상 자산** 및 **지원규모 확대** 등 **현 프로그램**의 **확장적 운영 검토**

* 사업재편기업 추이(社) : ('16)15 ('17)51 ('18)34 ('19)9 ('20)57 ('21)108 [누적 274社]

○ **(성공사례 공유)** 시장 중심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해 **민간참여 유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8.00*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사업재편기업 지원 실시) 실태조사 결과, 사업재편 추진시 기업의 애로사항*은 자금조달 곤란, 신규사업 관련 정보부족 등으로 파악 * ① 전문기술·정보부족(54.9%), ② 자금조달 곤란(49.9%), ③ 판로 미확보 (33.8%) 順 [출처 : 중기 중소기업 중앙회 실태조사] ☞ Ⅰ-2-④-1-1-ⓐ-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 방안(금감원)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사업재편기업 지원 실시) 사업재편기업(57개사) 면담·설문을 통해 관심기업(26개사)의 요청사항을 분석하여 자금지원방안 수립 ☞ Ⅰ-2-④-1-1-ⓑ-사업재편기업 수요조사 결과(캠코) - 주채무계열 및 신용위험평가 제도 개선시 설명회 등을 통해 채권은행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6.67*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부실징후기업 평가제도의 실시 횟수를 구체적으로 제시(연 3회)하여 추진계획의 구체성 확보 - 각 제도의 근거규정(기촉법, 은행연합회 협약 등)에 근거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확보 - (사업재편기업 지원 실시) 사업재편기업 보유 설비를 매입 또는 재임대(S&LB)하는 지원 사업의 시범실시('21년 3~4분기) 계획 수립 ☞ Ⅰ-2-④-1-2-1-[보도자료]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Ⅰ-2-④-1-2-2-[보도자료]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21년 정부예산 675억원 및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모펀드를 조성하고 하위펀드 운용사를 모집하는 등 1조원 추가 확대를 위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 ☞ Ⅰ-2-④-1-2-3-[공고문] 기업구조혁신펀드(Ⅲ)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 공고 ☞ Ⅰ-2-④-1-2-4-[보도자료]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추가 조성

<table>
<tr>
<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
<td>7.67</td>
<td>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제도(주채무계열, 신용위험평가)의 실시여부를 성과지표로 제시하여 대표성 확보

- (사업재편기업 지원 실시) 사업재편기업 설비 매각 지원을 통한 기업 애로 지원 사업 최초 도입 및 차질없는 연내 지원 등 적극적 목표 설정

☞ Ⅰ-2-④-1-3-1-[보도자료]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Ⅰ-2-④-1-3-2-[보도자료]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의 마중물 역할로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의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를 성과지표로 설정

➡ 신생·소형 운용사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전용리그 운영 및 부채투자 전용펀드의 투자대상 확대(사후적→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기업)

☞ Ⅰ-2-④-1-3-3-[공고문] 기업구조혁신펀드(III)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
</td>
</tr>
<tr>
<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6.33</td>
<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주채무계열 선정 및 재무구조평가 실시</td><td>- 주채무계열 32개 선정
- 재무구조평가 결과 7개 계열에 대해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td><td>완료</td></tr>
<tr><td>개별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실시</td><td>- 부실징후기업 160개사(대기업 3개, 중소기업 157개) 선정</td><td>완료</td></tr>
<tr><td>사업재편기업 지원 실시</td><td>▪ 사업재편기업 지원 시범사업 실시
- 3개社, 총 422억원 지원</td><td>완료</td></tr>
<tr><td>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약 1조원) 확대</td><td>▪ 운용규모 확대
- 1차 기업구조혁신펀드('18~'19년) 1.64조원 조성, 2차 기업구조혁신펀드('20년) 1.54조원 조성,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21년) 1.08조원 추가 확대하여 총 4.3조원 조성</td><td>완료</td></tr>
</table>
☞ Ⅰ-2-④-2-1-1-[보도자료] '21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

☞ Ⅰ-2-④-2-1-2-[보도자료] '21년 정기신용위험평가 결과

☞ Ⅰ-2-④-2-1-3-[보도자료] 캠코, 사업재편기업 자산매입 시범사업 실시(캠코)

☞ Ⅰ-2-④-2-1-4-[보도자료]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추가 조성
</td>
</tr>
</table>

<table>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26.00</td>
<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사업재편기업 지원 실시) 사업재편기업 3개사에 대하여 기계설비·부동산 등을 인수하여 총 422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목표 달성

-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추가 확대하고 운용방식 다양화를 위해 신생·소형 운용사 전용리그 운영 및 부채투자 전용펀드의 투자 대상 확대(사후적→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기업)

☞ Ⅰ-2-④-2-2-1-[보도자료] 캠코, 사업재편기업 자산매입 시범사업 실시(캠코)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취약계열 및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평가 실시</td><td>연 3회</td><td>실시</td><td>달성</td></tr>
<tr><td>사업재편기업 지원 실시</td><td>신규 도입</td><td>신규 도입 완료</td><td>달성</td></tr>
<tr><td>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 확대 및 운용방식 다양화</td><td>1조원 추가 조성, 운용방식 다양화</td><td>실시</td><td>달성</td></tr>
</table>
☞ Ⅰ-2-④-2-2-2-[보도자료] 21년 주채무계열 선정결과

☞ Ⅰ-2-④-2-2-3-[보도자료] 21년 정기신용위험평가 결과
</td>
</tr>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1.0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주채무계열) 제도개선을 통해 차입금이 과다한 일부 해운사(장금상선, SM. HMM)를 주채무계열로 편입하고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 (신용위험평가) 신용공여 30~50억원 기업 중 부실징후기업 수는 17개→53개로 증가, 부실징후기업 선정률도 4.2% → 28.5%로 상승함으로써 소규모 취약기업에 대한 평가 강화

- (기업구조혁신펀드) 그간 기업구조혁신펀드(1·2·3차)는 약 4.3조원 규모로 조성되어 66개 기업에 약 2.4조원을 투자하는 등 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

- (사업재편 지원) '21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2년 지원규모를 확대 운영할 계획('21년 3개사, 422억 → '22년 7개사, 1,000억)

※ '21년 경제정책방향 旣 반영 사항

☞ Ⅰ-2-④-3-ⓐ-[보도자료] 2022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합동)
</td>
</tr>
</table>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정성) 사업재편기업의 유휴설비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자금 확보 및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지원

【 사업재편기업 지원 사례 】

◈ (사례1) 기존 공장의 매수처를 찾지 못하던 H사는 사업재편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공장을 매각하여 스마트 공장 신축 자금 확보에 성공

◈ (사례2) 자산의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추가적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E사가 보유한 공장을 사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매각 후 재임대하여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투자자금 확보에 성공

☞ Ⅰ-2-④-3-ⓑ-[보도자료] 캠코, 사업재편기업 자산매입 시범사업 실시(캠코)

- (정성) 구조조정 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 및 재무구조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

【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 성공사례 】

◈ (자동차 부품업체 A사)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전기차 업체에 부품 공급 및 IPO 성공

ㅇ 기존 매출을 △△완성차업체에만 의존하였으나, 동 완성차업체의 중국에 대한 판매부진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유동성 위기에 직면

➔ 전기차업체에 대한 부품공급 가능성을 보고 10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전기차업체의 부품공급 및 IPO에 성공

◈ (고순도 염화수소 기업 C사) 투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반도체 소재 기업으로 성장기반 마련

ㅇ 국내 최초로 반도체 핵심소재인 고순도 염화수소 양산 능력을 확보한 혁신기업이나, 설비투자에 따른 차입금 부담으로 워크아웃 개시

➔ 175억원 투자를 통해 차입금을 상환하여 워크아웃을 졸업하였으며, 국내외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로부터 신규수주에 성공하여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

I-3-①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의 시장 안착 도모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21년 뉴딜펀드**를 결성·운용할 **51개 운용사 선정** 완료(2·6월)

○ **재정 5,100억원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모집**하여 '21년 **목표액 4조원**을 초과한 **5.6조원 결성** 등 **충분한 투자수요** 확인

* 정책형 뉴딜펀드('21년 기준)는 운용사가 旣 확보된 재정(5,100억원), 산은자금(6,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2,000억원) 자금으로 민간자금 2.69조원을 모집해 펀드를 결성하는 구조

- **지역투자펀드 신설**(500억원) 등 **다양한 정책수요를 반영**하였으며,

- **펀드결성 첫 해('21년) 투자액**은 **약 5천억원**(9%)으로 **양호한 수준***

* 통상 펀드는 정해진 투자기간(뉴딜펀드는 5년) 내에 단계적·순차적으로 투자가 진행되며, 대체로 첫 해 투자집행률은 5~10% 수준(성장지원펀드는 첫 해 4% 수준)

○ 뉴딜펀드 조성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뉴딜펀드 출시**(3월, 11월) 및 **2,500억원 펀드결성** 완료

- **1차 출시분**(3.29~) **조기 판매완료**(4.5)로 **국민적 관심 확인**

○ **'22년도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예산 6,000억원 확정**으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지속적·안정적 추진동력** 확보*

* '22년중 재정(6,000억원), 산은자금(6,0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2,000억원)로 4조원 조성 계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33</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시장수요(시중 유동성, 투자수요 등), 유사 정책펀드 및 해외 사례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 실시
☞ Ⅰ-3-①-1-1-ⓐ-1 주요국 정책펀드 사례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관계부처, 연구원, 업계, 관련협회 등 이해관계자·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등을 다수 개최하여 의견을 폭넓게 수렴
☞ Ⅰ-3-①-1-1-ⓑ-1 뉴딜펀드 유관기관·민간전문가 1차회의
☞ Ⅰ-3-①-1-1-ⓑ-2 뉴딜펀드 유관기관·민간전문가 2차회의</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5.67</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운용사 모집부터 펀드 최종결성까지 펀드 운용 단계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수립
- (이행난이도)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일반적인 정책펀드에 비해 추진일정을 다소 공격적·적극적으로 수립*
* 적극적인 계획수립·추진으로 담당공무원 적극행정 장관표창 수상('21.6)</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33</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펀드결성 초기에는 운용사의 민간자금 모집이 가장 중요하므로, 결성액은 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지표
* 투자집행률이나 수익률은 펀드결성 초기에는 성과목표로 부적절 (통상 펀드는 투자기간(4~5년)동안 순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며, 투자집행률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부실투자로 이어질 가능성)
- (목표치의 적극성) '21년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목표 결성액 4조원 유지
* '21년 뉴딜펀드 예산 6,000억원 신청 → 5,100억원 확정(900억원 삭감)</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9.33</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21년도 운용사 선정(정시모집)(2월)</td><td>· 운용사 1차선정 완료(2.26일)</td><td>완료</td></tr><tr><td>국민참여 뉴딜펀드 판매개시(3월)</td><td>· 3.29일 출시 및 조기 판매완료</td><td>완료</td></tr><tr><td>투자설명회 개최(3월)</td><td>· 투자설명회 다수 개최('21년중 2.2일부터 약 20여회 개최)</td><td>완료</td></tr><tr><td>'21년도 운용사 선정 공고(수시모집)(4월)</td><td>· 운용사 2차공고(4.23일)</td><td>완료</td></tr><tr><td>'21년도 운용사 선정(수시모집)(7월)</td><td>· 운용사 2차선정 완료(6.28일)</td><td>완료</td></tr><tr><td>'22년도 운용사 선정 공고 검토(정시모집)(12월)</td><td>· '22년 1차 공고문 검토완료 및 공고('22.1.7일)</td><td>완료</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Ⅰ-3-①-2-1-1 ’21년도 운용사 1차선정 보도자료
☞ Ⅰ-3-①-2-1-2 국민참여 뉴딜펀드 출시 및 조기 판매완료 보도자료
☞ Ⅰ-3-①-2-1-3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보도자료
☞ Ⅰ-3-①-2-1-4 ’21년도 운용사 2차공고 보도자료
☞ Ⅰ-3-①-2-1-5 ’21년도 운용사 2차선정 보도자료
☞ Ⅰ-3-①-2-1-6 ’22년도 운용사 1차공고 보도자료</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6.67</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Ⅰ-3-①-2-2-1 ’21년도 뉴딜펀드 운영계획 보도자료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뉴딜펀드 조성 실적(조원)</td><td>최대 4조원</td><td>5.6조원</td><td>초과달성</td></tr></table>
○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21년 예산삭감(6,000억원 → 5,100억원)으로 ’21년중 4조원 결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운용사의 민간자금 모집노력과 뉴딜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으로 목표를 1.6조원 초과달성*
* 당초 민간자금을 2.69조원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최종 4.5조원 모집</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9.33</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펀드 결성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처 발굴로 약 5천억원, 투자집행률 9% 달성(기타 정책펀드에 비해 첫 해 투자실적률이 양호한 수준)

* ’18년 성장지원펀드 투자율 4%, ’19년 성장지원펀드 투자율 5% 수준

- 적극적인 투자처 발굴을 위해 기재부·과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협회와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22회 개최

* 관계부처 7회(’20.11~’21.3월), 유관협회 13회(7~12월)

☞ Ⅰ-3-①-3-ⓐ-1 뉴딜펀드 투자설명회 보도자료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일반국민이 뉴딜펀드 조성에 직접 참여하여 투자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 뉴딜펀드 출시(3.29) 및 조기 판매완료(4.5, 1,400억원 규모 판매)

<table><tr><th>언론보도(4.5, 파이낸셜타임즈)</th><th>대통령 SNS(3.31)</th></tr><tr><td>문재인도 가입 놓친 '국민참여 뉴딜펀드', 조기 완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6 15:08 수정 2021.04.06 15:08
문재인 대통령 "가입해서 돕고 싶었는데 완판돼 기회 놓쳐"
"아쉽지만 무척 기쁘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가 완판됐다. 금융투자협회와 정책형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지난달 29일부터 판매한 국민참여 뉴딜펀드 판매물량을 지난 5일 모두 소진했다고 6일 밝혔다. 총 판매금액은 약 1460억원이다.</td><td>문재인 @moonriver365 · 3월 31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저도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입 열기가 높아서 조기 완판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td></tr></table>
☞ Ⅰ-3-①-3-ⓑ-1 국민참여 뉴딜펀드 출시 및 조기 판매완료 보도자료
☞ Ⅰ-3-①-3-ⓑ-2 국민참여 뉴딜펀드 관련 대통령 SNS</td></tr>
</table>

1-3-②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 지속발굴 및 민간투자 확산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혁신기업 금융·비금융 지원)** '20.7.30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금융지원방안」을 의결

* '20~22년중(3년간) 1,000+α개 국가대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정책금융 지원

- **10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총 835개 기업**(1회차 32개, 2회차 247개, 3회차 321개, 4회차 235개)을 혁신기업으로 **선정**(22년중 추가 선정 예정)

* 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 선정된 기업의 **자금수요**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맞춤형 대출·보증·투자** 등 **총 433개 기업에 5.1조원 지원****('21.11월말 기준)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은, 성장금융
** (1회차) 28개사 14,564억원, (2회차) 189개사 25,485억원 지원, (3회차) 216개사 11,127억원

- 선정기업 중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해 **「넥스트라운드 특별세션***」** 등 을 통한 **민간투자 확산 지원****

* KDB 넥스트라운드 : 벤처기업을 위한 시장형 투자유치 플랫폼
** KDB NextRound(11개사)·NextRise(70여개사), 성장금융 K-Growth 포럼(1개사) 개최 및 Mega-7 투자유치(2개사 진행중)를 통한 민간자금 유치 지원

< 그간의 지원실적 >

□ **1~4회차 835개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433개사**에 대해 **총 1,623건**, **5조 1,176억원**(대출 36,957, 보증 9,674, 투자 4,545억원) 지원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실적('21.11월말 기준) **>**

(단위 : 개, 건, 억원)

구 분	업체수*	건 수	금융지원			
			대출	보증	투자	합계
1회차	28	224	11,376	3,188	-	14,564
2회차	189	741	18,160	4,268	3,057	25,485
3회차	216	658	7,421	2,218	1,488	11,127
합 계	**433**	**1,623**	**36,957**	**9,674**	**4,545**	**51,176**

* 중복지원을 감안한 업체수

○ **(혁신기업 국가경제기여)** 「혁신기업 국가대표1000」에 선정된 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성장성, 혁신성, 고용창출**이 높게 나타남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성과분석 >

[성과분석 개요]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되어 정책금융을 지원받은 기업(1~2회차)**은 **일반기업***에 비해 성장성, 혁신성, 고용창출효과 등이 높게 나타남

* NICE DB상 '20년·'21년 상반기말 재무제표상 매출액 확인가능 기업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20.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년 상반기와 '21년 상반기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고용증가율 등을 비교

구분	성장성 (매출증가율)	혁신성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고용창출 (고용인원증가율)
선정 기업	+17.9% 증가	4.0%	+4.7% 증가
일반 기업	+12.9% 증가	2.8%	△0.1% 감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지원 등을 보다 확대할 계획

* 선정기업들의 신청목적 중 투자유치(44.6%)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정책금융기관의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등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기업 대상 **특별세션**을 마련하는 등 투자유치 지원

< 정책금융기관의 非금융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예시 >

❶ 넥스트라이즈(산은) : 혁신기업 박람회로서, 연1회 개최
❷ 넥스트라운드(산은) : 벤처·혁신기업 투자설명회(IR)로서, 주2~3회 개최
❸ Mega-7 Club(산은) : 대형VC간 혁신기업 투자 간담회, 연2~3회 개최
❹ 기타 : 경영컨설팅(신보, 기은), 신용보증 IR(신보) 등

○ '22년중 5회차 선정을 통해 **1,000+α개 혁신기업 선정 완료 후에는 旣 선정기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시스템**(Out/In 시스템) **도입**

< Out/In 시스템 운영방향 >

① 각 부처별 선정기업의 기술혁신 노력, 미래 성장가능성, 재무·비재무 성과 등을 매 반기별로 평가

② 지속적인 혁신노력이 미흡하거나 미래 성장성이 약화된 기업은 선정기업에서 제외(Out)하고, 새로 등장한 혁신기업을 선정(In)하는 제도 도입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33</td><td>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추진배경) 현행 금융시스템 하에서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 (성과분석&설문조사) 4차 혁신기업 선정 전 기선정 혁신기업 성장성·혁신성·고용증가율 분석 및 기업대상 설문조사 진행

☞ Ⅰ-3-②-1-1-ⓐ-1-[보도참고]혁신기업 종합금융지원

☞ Ⅰ-3-②-1-1-ⓐ-2-(경제중대본 안건) 혁신기업 지원방안

☞ Ⅰ-3-②-1-1-ⓐ-3-[보도자료]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Ⅰ-3-②-1-1-ⓐ-4-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 계획

☞ Ⅰ-3-②-1-1-ⓐ-5-[보도자료] 혁신1000 4회차 선정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관계부처) 3~4회차 혁신기업 선정을 위한 10개 관계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해수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특허청) 협의

- (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들(산은, 기은, 수은, 신보, 성장금융)과 선정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협의

☞ Ⅰ-3-②-1-1-ⓑ-1-210429_3회차 혁신기업 요청 공문

☞ Ⅰ-3-②-1-1-ⓑ-2-211020_4회차 혁신기업 요청 공문

☞ Ⅰ-3-②-1-1-ⓑ-3-(부처 안내자료)혁신1000 4회차 추진방안
</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67</td><td>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❶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 선정 목표로 '20년 279개, '21.上 321개, '21.下 235개 기업 선정 완료

❷ 선정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대출,보증,투자)·비금융 지원안 계획 수립 및 시행

⇒ 계획의 구체성 및 난이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
</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33</td><td>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20년 279개 기업 선정 후 '21년중 400개의 추가기업 선정 목표를 설정('20년 실적 대비 43% 기준 상향)

⇒ '21년 중 556개 혁신기업 선정으로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9.33</td><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현황]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혁신기업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td><td>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3회차 기업 선정시부터 마련('21.5월)</td><td>완료</td></tr>
<tr><td>3회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td><td>'21.05.06자 3회차 기업(321개사) 선정</td><td>완료</td></tr>
<tr><td>4회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td><td>'21.12.15자 4회차 기업(235개사) 선정</td><td>완료</td></tr>
</table>
</td></tr>
</table>

「제2차 넥스트라운드 특별세션」 개최	'21.6.11자 산은 '넥스트라운드 특별세션' 개최를 통해 민간 투자 유치 기회 제공	완료
Mega7(산은-대형 VC 협의체) 개최	'21.7月, 11月 총 2회차 온라인 IR 개최하여 31개사 소개 및 산은 통해 1,300억원 투자	완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금융지원 실시	'21.11월말 기준 자금수요가 있는 433개사 대상 5.1조원 지원(계속)	완료

☞ Ⅰ-3-②-2-1-1-혁신1000 특별금융 지원 가이드라인
☞ Ⅰ-3-②-2-1-2-[보도자료]3회차 혁신기업 선정
☞ Ⅰ-3-②-2-1-3-[보도자료]4회차 혁신기업 선정
☞ Ⅰ-3-②-2-1-4-넥스트라운드 혁신 1000 특별세션(안)
☞ Ⅰ-3-②-2-1-5-Mega7 승인실적 증빙

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

26.67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성과지표명	'21년 목표치	'21년 실적	비고
국가대표 1000 혁신기업 추가 선정 업체 수	400	556	달성

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

14.67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금융지원)** 1~4회차 835개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433개사에 대해 총 1,623건, 5조 1,176억원(대출 36,957, 보증 9,674, 투자 4,545억원) 지원

☞ Ⅰ-3-②-3-ⓐ-1-'21.11말 혁신기업 금융지원 실적 집계 내역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성과분석 결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되어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성장성(매출증가율), 혁신성(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고용창출효과(고용인원 증가율) 등이 일반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설문조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되어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77.8%가 프로그램에 만족

- **(언론보도)** 신산업 부문의 혁신성 높은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유망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연합뉴스(12.14)> '국가대표 혁신기업'235곳 추가 선정... 정책금융 지원**
>
>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국가대표 혁신기업으로 235개사를 추가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정부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혁신기업으로 선정돼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성장성·혁신성·고용 창출 등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1-3-③	자산·기술력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환경 구축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동산담보) 부실채권**과 함께, 매각이 어려운 동산담보물의 **매입 후 재임대(S&LB)** 체계를 새로 마련('21.6월)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경영정상화**를 함께 지원

-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 운영을 통해 동산담보의 **적시 환가처분**을 지속 보장하고, **S&LB***를 통해 동산담보 **직접매입**을 실시

* Sale&Lease Back : 동산담보물(기계·기구)을 캠코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매입한 후 이를 기업에 재임대하여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21.12월말 기준 4개 기업 동산담보물 **약 40억원** 매입후 재임대 완료

- **동산담보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이 확대되며 **무형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활성화

* 동산담보대출 잔액 : ('20년말) 30,589억원 → ('21.9말) 37,787억원
** IP담보대출 잔액 : ('20년말) 13,784억원 → ('21.9말) 18,684억원

○ **(상거래신용지수)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상거래 신용지수가 양호**한 1,032개 기업을 발굴하여 **2,112억원**의 보증을 지원

- 상거래 신용지수를 활용한 금융상품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全은행으로 확대** 추진

-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상거래 신용지수를 조회·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활용 편의성**을 제고

- 지수의 **적기·상시 산출**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거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

○ **(기술금융) 표준기술평가모형 도입 등**을 통해 기술신용평가 체계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강화** → 기술신용대출 성장세 지속

- '14.1월 기술금융 도입 이래 全은행권 노력으로 **기술력·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양적으로 크게 확대**

 * '18년말 163.8조원 → '19년말 205.5조원 → '20년말 266.9조원 → '21.10월 315.5조원

- **부도변별력**(AR)* 평가 등을 통해 **공통지표 28개**를 선별하여 표준 기술평가모형을 수립하고, **평가기준을 표준화 → 평가의 질 제고**

 * AR : 등급에 따른 우량 및 불량 누적분포를 이용하여 모형의 변별력을 판별

- 기술평가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 되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비재무모형 내에 기술요소의 일부를 반영
 (2단계) 비재무모형 내에 표준기술평가 필수항목의 20% 이상을 반영
 (3단계) 비재무모형 내에 표준기술평가 필수항목의 50% 이상을 반영

 ** **국민은행**은 일부 기술력 변수를 비재무모형에 반영한 **참조모형 형태(1단계)**의 통합여신모형을 개발하여 은행권 중 처음으로 **금감원 승인 완료**('21.12.24일)

□ 미흡 원인분석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의 **동산금융 '안전장치' 역할**을 강화하여, 향후 동산담보대출 **부실발생시 회수리스크 완화** 필요

- 향후 코로나19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동산담보대출 **부실채권** 발생시 **적극 대응**할 필요

→ 현행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은행권 **회수지원 수요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 **(기술금융) 기술신용평가 체계**를 탄소중립·디지털화 등 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사업재편 등 활용방안을 확대**할 필요

-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재편*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지원**하여 사업재편 기업의 **정책금융 지원 효과성**을 제고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1.7.22.일)

* 기업활력법 등에 따라 신산업 진출,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R&D지원, 세제혜택, 컨설팅 연계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7.00*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동산담보**) 동산담보 회수지원 기구 운영에 따라 은행권이 회수 리스크를 낮게 인식하여 동산금융 취급 잔액이 증가 ☞ Ⅰ-3-③-1-1-ⓐ-1-동산담보대출통계(금감원) -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보증**)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사전 동태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실시, 기업 모니터링 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 - (**기술금융**) 도입 이래 全은행권 노력으로 기술력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혁신여신시스템으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가 필요 ☞ Ⅰ-3-③-1-1-ⓐ-2 기술금융 통계분석(신정원)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동산담보) 은행 및 외부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①"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 ②회수지원기구 매입대상 채권 확대(유형자산→재고자산, 매출채권 포함), ③「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 ☞ Ⅰ-3-③-1-1-ⓑ-1-[보도자료]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보증**) 국민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금융 중점추진 과제로 채택 ☞ Ⅰ-3-③-1-1-ⓑ-2-[보도자료] 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2020년 중점 추진과제 - (**기술금융**) 신용정보원을 통해 매년 기술금융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기술금융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평가기관들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여 DB집중 및 활용, 표준 기술평가모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에 반영 * '21년 은행권을 포함한 평가기관과 총 10회 이상의 DB 및 모형관련 회의 추진 ☞ Ⅰ-3-③-1-1-ⓑ-3-'기술금융 의견수렴 활동 증빙(14건, 신정원)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4.33*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동산금융**)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매입대상 확대 등에 있어 '프로그램 설계→이해관계자 협의→전문가 검증→시범사업→실시'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과제별 추진계획을 旣수립 -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보증**) 새로운 대안평가시스템의 활용 확대를 위해 시중은행 협약과 지수 고도화 작업 병행 필요 - (**기술금융**) 안정적인 표준기술평가모형 조기 도입지원을 위해 모형을 개발완료(2분기)하고 평가기관별 시스템 구축 기간을 거쳐 22년 1월 전면도입 하였으며, 은행권 통합여신모형 조기도입을 위해 단계적 구축방안이 담긴 가이드라인(4분기)을 조기에 마련하여 은행권과 공유

<table>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33</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동산금융)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8년말 0.7조원, 19년말 1.6조원, 20년말 3.1조원으로, 연도별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 목표 설정
-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보증) 기존 여신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금융 과제 도입 단계로, 제도 안착을 위해 연간 공급목표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
- (기술금융) 기술신용대출 잔액의 연도별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신뢰성 제고방안을 병행 추진</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6.00</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우대상품출시</td><td>-기업은행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21.12월)
-상거래 신용지수 활용 금융상품 활성화 등</td><td>완료</td></tr><tr><td>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매입대상 확대</td><td>-부실채권 뿐 아니라, 매각이 어려운 동산담보물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S&LB, 약 40억) 하며 대상을 확대하였고, 재고자산 등의 매입에 대해 은행권과 지속 협의 중</td><td>완료</td></tr><tr><td>표준기술평가모형 도입</td><td>-표준기술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 후 평가기관 배포(21.6월)
-평가기관별 표준모형도입 시스템 개발(~21.12월)
-'22년 1월 전면도입</td><td>완료</td></tr><tr><td>동산담보법 개정</td><td>-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일부 이견이 있어 법무부 주관 지속 협의 중</td><td>추진중</td></tr><tr><td>플랫폼구축</td><td>-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 완료('21.12월)</td><td>완료</td></tr><tr><td>통합여신모형 단계적 도입</td><td>-통합여신모형 단계적 추진을 위한 3단계별 가이드라인 마련(21.11월)
-국민은행의 경우 1단계 모형을 개발하여 금감원 승인 완료(21.12월)</td><td>완료</td></tr></table>☞ Ⅰ-3-③-2-1-1-[보도자료] 동산담보물 직접매입 프로그램 본격 가동(캠코)
☞ Ⅰ-3-③-2-1-2-신보·기업은행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맞손 (아시아경제, '21.12.21)
☞ Ⅰ-3-③-2-1-3-표준기술평가모형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요청
☞ Ⅰ-3-③-2-1-4-기술신용정보관리규약 일부개정 및 설계서·전문 개편 관련 안내
☞ Ⅰ-3-③-2-1-5-통합여신모형가이드라인
☞ Ⅰ-3-③-2-1-6-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 정기심사 세부지침</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4.33</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동산담보대출 잔액</td><td>4.0조원</td><td>3.8조원
('21.9월 말 기준)</td><td>달성 예정</td></tr><tr><td>상거래 신용지수 연계보증 공급 실적</td><td>0.05조원</td><td>0.22조원</td><td>달성</td></tr><tr><td>기술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td><td>신규사업 도입</td><td>표준기술평가모형 도입</td><td>달성</td></tr><tr><td>기술신용대출잔액</td><td>328조</td><td>341.6조
('21.11월 말 기준)</td><td>달성</td></tr></table>☞ Ⅰ-3-③-2-2-1-동산담보대출통계(금감원)</td></tr>
</table>

		○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1.12월말 기준 통계자료 집계 중으로, '21.9월말 등 실적을 기재하였으며 실적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성과지표 모두 달성할 것으로 예상
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	*10.00*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table><tr><th>구 분</th><th>'20년 실적</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동산담보물 직접매입(S&LB)</td><td>-</td><td>40억원</td><td>'21년 신규사업</td></tr><tr><td>상거래 신용지수 연계보증 기존 불승인 기업 지원</td><td>159개</td><td>971개</td><td>510%</td></tr></table> -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보증**) 기존 신용평가 방식 적용 시 보증 지원이 어려웠던 971개 기업에게 보증 지원 - (**기술금융**) 기술금융은 금리 및 한도*, 순수 신용대출** 측면에서 일반중기대출 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 * 일반 중기대출 평균 대비 금리 인하(△0.14%p) 및 한도 확대(평균 2.2억원)의 효과 도출('21.8월말 기준). ** 기술금융 대출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14.5%)은 일반 중기대출(9.2%) 대비 높은 수준('21.8월말 기준) ☞ Ⅰ-3-③-3-ⓐ-1-동산담보물 직접매입 전표(캠코) ☞ Ⅰ-3-③-3-ⓐ-2-보도자료(금융위)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동산금융**) 21.9월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이용기업은 9,746개사로, 전년 동기 7,193개사 대비 2,553개(35%) 증가 ☞ Ⅰ-3-③-3-ⓑ-1-동산담보대출통계(금감원) - (**상거래 신용지수 연계보증**) 과거 실적이 없거나 좋지 않은 창업기업, 재도전기업 등의 경우 상거래 신용지수 적용으로 정책자금 활용 가능 **<서울경제(7.23.)> 상거래 신용지수 자체개발, 中企 자금 조달 도와** "기존 신용평가상 점수가 부족한 기업도 상거래 신용지수가 우수하면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12. 8.)> 신보 상거래 신용지수 도입하니 10개월 만에 신규보증 6배 늘었다** "기존 평가 시스템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 보증이 어려웠던 기업도 상거래 신용지수가 우수하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기술금융**)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고, 통계적으로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생존에 유리 ☞ Ⅰ-3-③-3-ⓑ-2-보도자료(신정원) ☞ Ⅰ-3-③-3-ⓑ-3-보도자료(신정원)

1-3-④	코로나19 대응 기업 자금지원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코로나19 특례보증)** ’21년 중 당초 목표 1.5조원에서 0.8조원 초과한 2.3조원의 특례보증 공급을 통해 피해기업 적극 지원

- 상반기 중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례보증 1.5조원 조기 공급 완료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기업 자금수요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21.9월부터 연말까지 0.8조원의 연착륙 특례보증 추가 공급

○ **(버스업체 특례보증)**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 약 700억원 규모의 버스업체 대상 특례보증을 별도 지원

* 추경예산 100억원을 재원으로 1,250억원 총량규모로 특례보증 시행

○ **(소상공인 금융지원)** 보증수수료 인하 등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21년 중 4.1조원의 소상공인 위탁보증(시중은행 활용) 지원

<’21년 코로나 대응 자금지원 현황(’21.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도입시기	공급목표(A)*	공급실적(B)	달성율(B/A)
코로나 대응 자금지원	-	**15,000**	**65,439**	**436.3**
위기극복 특례보증	’21.1월	-	15,454	-
연착륙 특례보증	’21.9월	-	7,922	-
버스업체 특례보증	’21.4월	-	695	-
소상공인 금융지원*	’20.5월	-	41,367	-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원실적은 21년 기준으로 산출 (’20년은 3.3조원 지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0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20.12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 지원 방안 마련 검토
☞ Ⅰ-3-④-1-1-ⓐ-1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 발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20년 중 공급된 정책보증 규모 및 피해 정도, 경제·방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규모, 대상 및 지원 방식 등을 결정
-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신속집행을 위해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금융지원 보증수수료 첫해분 0.6%p 인하
☞ Ⅰ-3-④-1-1-ⓑ-1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 발표</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67</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정책발표 직후 '21.1월초 자금지원을 개시하여 최대한 조기 집행을 완료할 계획을 수립</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6.00</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코로나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직·간접 피해 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으로 특례보증 공급실적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 자금을 집행했는지 확인가능한 대표성있는 지표
- 정부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20년 한해 동안 2.6조원의 코로나 특례보증을 공급한 바 있으나, 금번에는 별도의 보증재원 지원 없이 1.5조원의 특례보증 추가공급이라는 적극적 목표를 설정</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8.00</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코로나19 위기극복 특례보증 출시 (1분기)</td><td>○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례보증 출시
○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td><td>완료</td></tr>
<tr><td>상품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2분기)</td><td>○ 특례보증 1.5조원 공급목표 조기완료
○ 별도 버스업체 특례보증 공급 개시</td><td>완료</td></tr>
<tr><td>상품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3분기)</td><td>○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추가 공급 개시 ('21.9월)</td><td>완료</td></tr>
<tr><td>상품 및 프로그램 운영 및 점검 (4분기)</td><td>○ 연착륙 특례보증 8천억원 공급
○ 버스업체 특례보증 700억원 공급
○ 소상공인 금융지원 41,367억원 공급</td><td>완료</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Ⅰ-3-④-2-1-1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례보증 시행
☞ Ⅰ-3-④-2-1-2 버스업체 특례보증 시행
☞ Ⅰ-3-④-2-1-3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시행
☞ Ⅰ-3-④-2-1-4 소상공인 금융지원 위탁보증 개정

○ 일부완료·미흡 사유 (필요시 작성)
- 해당사항 없음</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9.33</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코로나19 대응 기업 자금지원</td><td>1.5조원</td><td>6.5조원</td><td>달성</td></tr></table>☞ Ⅰ-3-④-2-2-1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 집행 현황('21.12월말)
○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당초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례보증 공급목표 1.5조원을 '21년 상반기 중 조기달성 후 피해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0.9조원 추가 공급
- 그 외, '20년부터 지원 중인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보증료 인하 등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21년 중 4.1조원 공급</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10.67</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신용보증기금 거래기업 부실률 추이 :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속 감소 중
* ('19) 3.30% → ('20) 2.43% → ('21) 1.96%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정성)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보증 공급은 상당부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 김경만 의원>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확대 필요
「…(중략)…기업중앙회 추문갑 정책본부장은 "정책금융기관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을 확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후략)…」
☞ Ⅰ-3-④-3-ⓑ-1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 (김경만 의원실)</td></tr>
</table>

Ⅱ-1-①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❶ **핀테크 혁신펀드**('19.12.23. 조성)를 통해 **2년간 총 2,461억원***의 투자재원을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공급 완료

* ('20년) 1,171억원, ('21년) 1,290억원

- **극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 조성('21.3월 27억원 규모, KACC핀테크혁신펀드) 및 운용개시를 통해 **4개 기업**에 대해 **4억원** 투자 집행 완료

 * Seed/Early - Pre-A 단계 투자만을 유치하였거나 창업 이후 3년 이내 기업

- 핀테크혁신펀드 **모펀드 직접투자플랫폼** 또한 **7건**의 투자건에 대해 공동투자자와 함께 총 **245억원** 규모의 극초기기업 투자 집행 완료

❷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의 **업무협약 기관 지속 확대*** 등 **지원**

* 1개 기관 추가 확대('21.5), 총 6개 핀테크육성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완료

- ' 21년 **53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총 **213억원 보증 공급**

❸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한도 확대**(1억→1.2억), 법률·특허, 금융법령 준수 등과 관련된 컨설팅 상시 제공, 핀테크기업 입주지원 **대상 기업 범위 확대**(서울 및 경기권을 제외한 지방→서울을 제외한 지방)

❹ 핀테크 스타트업의 투자·채용·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온·오프라인*「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최('21.5.26.~)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 온·오프라인 동시 개막 이후 한달 간 **25만명** 이상이 **144만 페이지** 이상 관람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운영

- IR 경진대회에서 **총 82억원**(5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온라인 투자자 미팅 등 사전행사를 통해 **총 1,255억원**(24개 기업)의 **투자를 유치**

❺ 온라인으로 **해외진출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 핀테크 유관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 **총 5개 국가**의 5개 기관과 협력하여, **291여명**이 참석

** Fintech Australia(호주), Tech Hub(카자흐스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MOU 체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5</td><td>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준비 T/F 구성·운영을 통해 해외 사례 등을 조사

☞ Ⅱ-1-①-1-1-ⓐ-1-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최 관련 보도자료('21.2.15)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2021년도 핀테크 정책계획 발표 및 브리핑('21.1.28)을 통해 정책방향 설명 및 현장의견 수렴

☞ Ⅱ-1-①-1-1-ⓑ-1-2021년도 핀테크 정책 계획 보도자료('21.1.28)

☞ Ⅱ-1-①-1-1-ⓑ-2-2021년도 핀테크 정책 계획 보도자료('21.1.28)_별첨('21년도 핀테크 정책 방향)

☞ Ⅱ-1-①-1-1-ⓑ-3-2021년도 핀테크 정책 계획 보도자료('21.1.28)_별첨(금발심 산업혁신분과 결과)
</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4</td><td>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핀테크지원센터, 업권별 협회 등과 협업하여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반영한 계획으로 적절하다 판단

- 펀드 조성, 위탁운용사 선정 등 소요기간을 감안한 초기기업 투자 전용 펀드 투자 계획으로 적절하다 판단
</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5</td><td>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부스 개수는 얼마나 많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는지를 나타내며, 핀테크 위크 개최 당해 연도에 집계되어 목표치의 적극성이 인정됨

- 온라인으로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의 부스 개수는 150개였으므로 온·오프라인 100개의 목표 설정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으로 판단
</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7.5</td><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구분</th><th>추진계획</th><th>세부일정</th><th>비 고</th></tr>
<tr><td rowspan="3">1/4 분기</td><td>2021년도 핀테크 정책설명회 개최</td><td>'21.1월</td><td>완료</td></tr>
<tr><td>핀테크 혁신펀드 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 운용개시</td><td>'21.3월</td><td>완료</td></tr>
<tr><td>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한 법률·특허 등 전문 컨설팅 제공</td><td>'21.3월</td><td>완료</td></tr>
<tr><td rowspan="3">2/4 분기</td><td>「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최</td><td>'21.5월</td><td>완료</td></tr>
<tr><td>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지원 확대</td><td>'21.6월</td><td>완료</td></tr>
<tr><td>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대상·한도 확대</td><td>'21.6월</td><td>완료</td></tr>
</table>
☞ Ⅱ-1-①-2-1-1-2021년도 핀테크 정책 계획 보도자료('21.1.28)
</td></tr>
</table>

		☞ Ⅱ-1-①-2-1-2-벤처투자조합 등록원부('20.11. 조성 후 5.25. 등록 완료) ☞ Ⅱ-1-①-2-1-3-컨설팅 시행 관련 보도자료('21.4.8.) ☞ Ⅱ-1-①-2-1-4-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막 보도자료('21.5.26) ☞ Ⅱ-1-①-2-1-5-핀테크 업무협약서('21.5.3) ☞ Ⅱ-1-①-2-1-6-2021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지원사업 공고문(지원한도 확대)('21.2.10)
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	*27.5*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성과지표명 / '21년 목표치 / '21년 실적 / 비고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1 부스 개수 / 100개 / 147개 / 달성 ☞ Ⅱ-1-①-2-2-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막 관련 보도자료 별첨3(온라인 전시부스 리스트)('21.5.26)
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	*11.25*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온·오프라인 동시 개막 후 한달 간 25만명 이상이 144만 페이지 이상 관람 - IR경진대회에서 5개 핀테크 기업이 총 8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온라인 투자자 미팅 및 사전행사를 통해 24개 핀테크 기업이 총 1,255억원의 투자를 유치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채용관에서 54개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31개 핀테크 기업에 총 4,275명이 지원한 가운데 최대 175여명의 채용이 진행 ☞ Ⅱ-1-①-3-ⓐ-1-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최결과 보도자료('21.6.25)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최를 통해 핀테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핀테크 기업들의 투자·채용 유발 **<파이낸셜뉴스(6.24)> 29개 핀테크사, 코리아 핀테크 위크서 1337억원 투자 유치** IR경진대회에서 8개 핀테크 기업과 6개 투자사가 참여해 5개 핀테크 기업이 총 82억원을 투자 유치 받았다. 42개 핀테크 기업과 40개 투자사가 참여한 73건의 온라인 투자자 미팅을 통해서는 5개 기업이 총 247억원을 투자 받았다. IR경진대회와 투자자 미팅 등 현장행사 외에도 사전에 'Fin-Investment: 100번의 만남'을 진행해 19개 기업이 총 100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핀테크 기업 채용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번 온라인 채용관을 통해 31개 핀테크 기업에 4275명이 지원했고, 최대 175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방문객이 국내외 146개 핀테크 기업, 금융사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온라인 전시관의 경우 오프라인과 유사하게 3D로 구현해 참여기업과 명함교환, 온라인 미팅 진행 등을 가능하게 했다.

Ⅱ-1-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21년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총 **14차례** 개최하여 총 **5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당초 목표(30건) 대비 167% 달성**

- '19.4월 제도시행 이후,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 중 **111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21년말)

□ 지정대리인 지정

○ '21년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총 **2차례** 개최하여 총 **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18.5월 제도시행 이후 **총 36건** 지정)

□ 금융규제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개선

○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신속하게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

- '21년말 기준, 샌드박스 연계 83개 규제중 **16개 정비완료·23개 정비방안 마련 중**

○ 주기적으로 동태적 규제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신규과제 발굴** 진행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사례 >

-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 대출모집인의 1개의 금융회사와 전속위탁계약 의무 예외 허용 특례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9.)으로 온라인 대출모집인의 1사 1전속 예외 허용**
-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 상품 설명 등 절차를 거치고, 재가입 시에는 반복 설명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19.10.)을 통해 동일보험 재가입 시, 반복 설명의무 면제**
- (**대안 신용평가**) 신용조회업 허가대상이 아닌 자가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특화CB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
 → **신용정보법 개정('20.2.)을 통해 신용조회업을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

□ **D-테스트베드 사업 실시**

○ 핀테크·스타트업이 **초기단계 기술·아이디어를 검증**하여 이후 **혁신금융서비스의 발판**이 될 수 있는 **D-테스트베드*** 사업 실시

*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여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 제공

○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실시계획 발표**(1월) 후, **데이터 확보, 주제 선정, 참여팀 모집**(9월), **테스트 진행**(~12월), **결과발표**(12월) 순차적 진행

□ **규제개선 요청 방법 마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개정**('21.7월 시행)하여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금융위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금융관련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련 법령 정비에 착수**

- 금융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 될 때까지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 이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는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금융규제 샌드박스 효과 가시화**

○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 조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고용증가, 투자 유치** 등 효과 발생

* 혁신금융서비스 전담인력 1,237명 고용 창출, 31개 핀테크사 2,732억원 투자 유치

○ **(소비자편익 증진)**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 절감, 금융상품 접근성 향상**, 금융소외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문제 해결** 등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편익 제고 사례 >

-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31만명, 총 5조 5,378억원** 대출 → **약 210억원 이자 절감**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74만명, 총 8,577억원 투자**
-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9만명, 총 460억원** 송금
- (**안면인식기술 이용 실명확인**) **안면인식기술로 간편 실명확인 가능, 9만명 이용**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375</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내실 있는 샌드박스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년 하반기부터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하여 사전컨설팅 등을 수행
☞ Ⅱ-1-②-1-1-ⓐ-1-'20년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계획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샌드박스 간담회,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현장의견 수렴
☞ Ⅱ-1-②-1-1-ⓑ-1-규제샌드박스 기업인간담회_보도참고자료
☞ Ⅱ-1-②-1-1-ⓑ-2-규제샌드박스 기업인·전문가 간담회_보도자료
☞ Ⅱ-1-②-1-1-ⓑ-3-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_보도자료</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7.25</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분기별 2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연 1회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은 구체적이며 적절</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375</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지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 건수를 파악하여 대표적인 성과 측정 가능
- (적극성) 금융시장에 누적되어 있던 규제해소 요청 수요가 제도 초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을 감안할 때, '19년 목표 25건, '20년 목표 40건과 유사한 수준인 30건으로 목표를 정한 것은 적극적인 목표설정에 부합</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8.25</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
<tr><td>'21년 제1차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개최</td><td rowspan="3">상반기 중 5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2.9.,2.10.,4.8.,4.14.,5.20.) 및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td><td rowspan="7">완료</td></tr>
<tr><td>'21년 제2차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개최</td></tr>
<tr><td>'21년 제3차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개최</td></tr>
<tr><td>디지털 샌드박스 도입</td><td>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실시(3월~12월)
* 디지털 샌드박스(가칭)의 명칭을 D-테스트베드로 결정</td></tr>
<tr><td>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td><td>2차례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2.5.,12.13.) 및 3건의 지정대리인 지정</td></tr>
<tr><td>'21년 제4차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개최</td><td rowspan="3">하반기 중 9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6.7.,7.19.,9.3.,9.24.,10.8.,11.4.,12.1.,12.6.,12.21.) 및 4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td></tr>
<tr><td>'21년 제5차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개최</td></tr>
<tr><td>'21년 제6차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개최</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Ⅱ-1-②-2-1-1-디지털 샌드박스 명칭 공모_보도참고
☞ Ⅱ-1-②-2-1-2-디지털 샌드박스 정식 명칭_보도자료
☞ Ⅱ-1-②-2-1-3-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_보도자료
☞ Ⅱ-1-②-2-1-4-디(D)-테스트베드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였습니다_보도자료
☞ Ⅱ-1-②-2-1-5-디(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_보도자료
☞ Ⅱ-1-②-2-1-6-제1차 지정대리인 지정_보도자료
☞ Ⅱ-1-②-2-1-7-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_보도참고자료</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7.25</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td><td>30</td><td>50</td><td>달성</td></tr></table>☞ Ⅱ-1-②-2-2-1-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_보도자료
☞ Ⅱ-1-②-2-2-2-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_보도자료
☞ Ⅱ-1-②-2-2-3-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_보도자료
☞ Ⅱ-1-②-2-2-4-제4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_보도자료
☞ Ⅱ-1-②-2-2-5-제5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_보도자료
☞ Ⅱ-1-②-2-2-6-제6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_보도자료
☞ Ⅱ-1-②-2-2-7-제7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_보도자료</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15</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혁신금융서비스 전담인력 1,237명 고용 창출, 31개 핀테크사 2,732억원 투자 유치
- 샌드박스 연계 83개 규제중 16개 정비완료, 23개 정비방안 마련 중(‘21년 말 기준)
-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약 210억원의 대출이자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편익 발생
☞ Ⅱ-1-②-3-ⓐ-1-금융규제샌드박스 2년 고용증가 투자유치_보도참고
☞ Ⅱ-1-②-3-ⓐ-2-금융규제 샌드박스 2주년 운영성과_보도자료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개정·시행하여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가 인정되는 규제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유튜브 영상 촬영, 지정업체 인터뷰, 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홍보
☞ Ⅱ-1-②-3-ⓑ-1-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보도자료
☞ Ⅱ-1-②-3-ⓑ-2-금융규제 샌드박스 홍보영상 촬영
☞ Ⅱ-1-②-3-ⓑ-3-금융규제 샌드박스 인터뷰</td></tr>
</table>

Ⅱ-1-③	언택트 금융 활성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u>〈플랫폼 금융 활성화 추진〉</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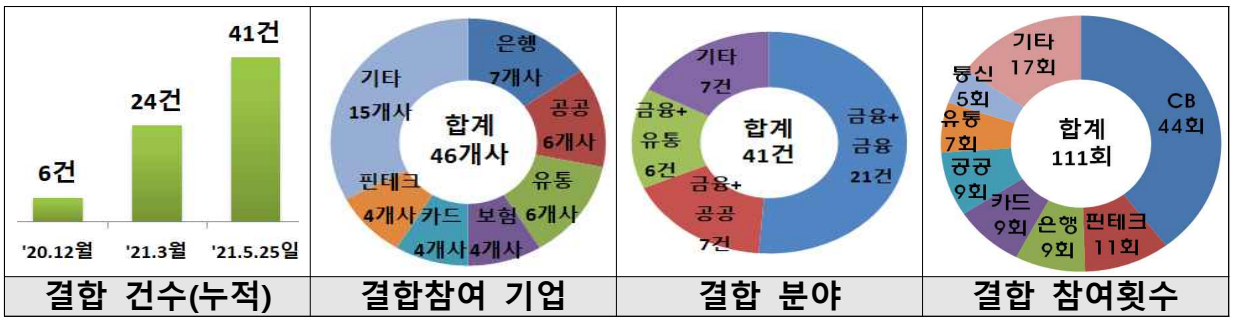
❶ 금융 분야의 가명 정보 결합·활용 촉진

-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신정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 `21.9월 기준 4개 기관(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을 지정

** '21.5.25일 기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

(**결합·활용 사례**): ❶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❷청년 등 금융이력 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❸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효과 분석 등



- 소비자보호전문가❶, 데이터 결합 전문가❷, 디지털 금융 전문가❸ 등으로 구성된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추진 전문가 TF*** 를 구성(' 21.9.)

* 적격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원칙, 선정기준,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정절차 등을 마련

⇒ 금융-비금융, 민간 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개방**이 **활성화되어**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짐**

⇒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

* 현재 약 **14~20일** 정도 기간 소요 → 제도 개선시 **약 10~15일 내외로 단축** 가능

❷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인프라 정비

-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21.9.29, 신용정보감독규정 일부 개정)

 * ⑴ **건전 경쟁질서 유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과도한(3만원↑)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통한 과당경쟁 방지,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 등 의무화 등 행위규칙 강화

 ⑵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담 완화)

- ‘21.12월부터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 ‘22.1.5일부터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 시작**

⇒ 금융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가공·결합하여 **효과적 맞춤형 자산·재무관리 가능**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 마련>

❶ **新기술**이 증가하는 환경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금융거래상 인증・신원확인**을 **새로이 규율**

-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 폐지를 반영하여 금융거래시 다양한 인증서 사용을 허용하되, **인증서에 대한 평가 및 인정기관 검증절차를 의무화**

-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 확인 시스템을 개선, 비대면 거래시 2-Factor 인증을 전제**로 **다양한 디지털 新기술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예시) : 영상통화, 계좌 1원 확인, 아이핀 사업자 등을 통한 본인확인 등

⇒ **해당 혁신방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1.11. 김병욱 의원)에 반영*되어 발의, 현 국회 계류 중**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6조의 2(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인증서 요건 등), 제6조의 3(전자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 방법 등에 관한 특례)

❷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위험성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한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

-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카드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지명의 확인 서비스 규제 특례**를 부여

◆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해야 하며, 비대면 실명확인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오픈뱅킹 고도화 추진〉

❶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20.10.21,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 발표 후,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를 지속 추진**

* [참여기관 현황('21.4.25기준)]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등 **총 100개**

- '21.4.29일부터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 가능

- '21.7.30일부터 **주요 은행, 우체국 앱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목록, 거래내역 등을 확인 가능**

⇒ 은행·핀테크기업으로 시작된 참여기관을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하여 **현재 120개 참여기관의 앱에서 이용 가능** ('21.12월 기준)

[오픈뱅킹 참여기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합 계
은행	상호금융	금투사	카드사	대형	중소형	
19	7	18	8	51	17	120

❷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오픈뱅킹 참여업권 간 데이터 상호개방 의무화 → 개방정보를 확대***하고, **마이데이터(MyData)와 연계**** 추진

* (카드사) 결제예정금액, 결제계좌 (핀테크) 선불계정 잔액, 거래내역 등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참여 → 마이데이터 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을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소비자가 **타행 모바일 앱**에서 **핀테크 선불충전금 잔액 내역 조회** 가능

<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금 정보 >

구 분	서비스 개요	대표 제공정보
선불목록 조회	보유 선불충전금 목록을 한눈에 확인	보유 선불충전금 목록, 명칭, 발행일 등
선불연계정보 조회	선불충전금의 연계정보(계좌) 확인	연계 충전계좌 금융기관명, 충전계좌번호 등
선불잔액 조회	선불충전금 잔액 확인	충전 잔액, 포인트 적립 잔액 등
선불거래내역 조회	선불충전금 거래내역 확인	거래일시,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등

⇒ 他 **서비스·산업***과의 **연계 기반**을 마련하여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기존 금융서비스의 **금융서비스 플랫폼化 지원**(Platform as a service)

* 마이데이터 서비스,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8.5*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방안 마련에 앞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수요를 파악하고자 사전 수요조사 실시('21.9.10일~'21.9.17일) ☞ Ⅱ-1-③-1-1-ⓐ-1-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회의 개최(보도자료)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통한 데이터, 금융 인증·신원확인 등에 대한 논의 실시(6차 `21.2, 7차 `21.4.) - 전문가, 관계부처, 금융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21.7.7.)"를 개최 - 업권별 관계자 회의(`21.7.15.) 등을 거쳐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21.9) -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21.12)

<table>
<tr><td></td><td></td><td>☞Ⅱ-1-③-1-1-ⓑ-1-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보도자료)
☞Ⅱ-1-③-1-1-ⓑ-2-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보도자료)
☞Ⅱ-1-③-1-1-ⓑ-3-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보도자료)
☞Ⅱ-1-③-1-1-ⓑ-4-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회의 개최(보도자료)
☞Ⅱ-1-③-1-1-ⓑ-5-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보도참고)
☞Ⅱ-1-③-1-1-ⓑ-6-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보도자료)</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7.25</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언택트 금융 활성화’라는 단위과제 목표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이해관계자 협의, 국내외 사례연구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분기별 추진계획*이 적절히 마련됨
* (3분기) 「플랫폼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방안」 마련
(3분기)「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 마련
(4분기) 오픈뱅킹 제2금융권 참여, 정보개방 확대 등 추진</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875</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는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제반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 점에서 목표치의 난이도 및 적극성이 높음
(1) 향후 언택트 금융의 핵심요소인 데이터결합과 그 구현체인 플랫폼의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한 점에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높음
(2)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규 출시 등 적극적인 목표치 달성 노력을 투입
(3) 디지털 新신기술 등장에 발맞춰 인증·신원확인 제도를 혁신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향후 언택트 금융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 목표치의 적극성이 인정됨</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8</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플랫폼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방안」 마련</td><td>• 온라인 플랫폼의 보유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플랫폼 금융 활성화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개방 촉진
- 신용정보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td><td>완료</td></tr>
<tr><td>「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방안」 마련</td><td>• 新기술이 증가하는 환경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하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방안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0.11 윤관석, ‘21.11. 김병욱)에 반영되어 발의
•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특례부여로 안면인식기술을 통한 새로운 실지확인 방식 시장 출시</td><td>완료</td></tr>
</table></td></tr>
</table>

오픈뱅킹 제2금융권 참여, 정보개방 확대 등 추진	• 저축은행 오픈뱅킹 개시 •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23개)이 선불충전금 정보 조회 서비스 개시 ⇨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全 업권에서 보유 정보를 상호 개방	완료

☞Ⅱ-1-③-2-1-1-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회의 개최(보도자료)
☞Ⅱ-1-③-2-1-2-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보도자료)
☞Ⅱ-1-③-2-1-3-데이터전문기관 사전 수요 조사서(별지)
☞Ⅱ-1-③-2-1-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보도자료)
☞Ⅱ-1-③-2-1-5-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보도자료)
☞Ⅱ-1-③-2-1 -6-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보도자료)
☞Ⅱ-1-③-2-1-7-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
☞Ⅱ-1-③-2-1-8-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11104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Ⅱ-1-③-2-1-9-혁신금융심사위원회심사결과_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지확인(보도자료)
☞Ⅱ-1-③-2-1-10-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보도자료)
☞Ⅱ-1-③-2-1-11-오픈뱅킹 선불충전금 조회 서비스 개시(보도자료)
☞Ⅱ-1-③-2-1-12-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보도자료)

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

27.5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모든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대부분의 과제가 일정 내에 달성

☞Ⅱ-1-③-2-2-1-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회의 개최(보도자료)
☞Ⅱ-1-③-2-2-2-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보도자료)
☞Ⅱ-1-③-2-2-3-데이터전문기관 사전 수요 조사서(별지)
☞Ⅱ-1-③-2-2-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보도자료)
☞Ⅱ-1-③-2-2-5-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보도자료)
☞Ⅱ-1-③-2-2-6-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보도자료)
☞Ⅱ-1-③-2-2-7-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
☞Ⅱ-1-③-2-2-8-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11104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성과지표명	'21년 목표치	'21년 실적	비고
「플랫폼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마련	• 온라인 플랫폼의 보유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플랫폼 금융 활성화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다분야 이종데이터간 결합·개방 촉진 - 신용정보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	달성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제도 혁신방안」 마련	마련	• 新기술이 증가하는 환경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하는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방안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0.11 윤관석, `21.11. 김병욱)에 반영되어 발의 • 금융규제샌드박스 특례부여로 안면인식기술을 통한 새로운 실지확인 방식 시장 출시	달성

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	*14.75*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분기별 데이터결합 건수 : ('20.4분기) 6건 → ('21.1분기) 18건 → ('21.2분기) 27건 -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곳의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 하여 운영 중 * ('20.8.6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20.12.22일) 국세청, ('21.3.8일) 금융결제원 -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결합에 참여(데이터 제공)하여,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 중 - '21.12.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하여 '22.1.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 * (은행) KB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SC제일 등 10개 은행 (금투) 키움,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 (카드) KB국민,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등 6개사, (저축은행) 웰컴 (상호금융) 농협중앙회, (CB) 나이스평가정보 (핀테크·IT) 뱅크샐러드, 핀크, 쿠콘,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민앤지, SK플래닛, 핀다 등 10개사 ☞Ⅱ-1-③-3-ⓐ-1-데이터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회의 개최(보도자료) ☞Ⅱ-1-③-3-ⓐ-2-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보도자료) ☞Ⅱ-1-③-3-ⓐ-3-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보도자료)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위험성이 낮은 금융거래에 대한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수단 활성화 기여 ■ (신한 Facepay,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원확인표 사본과, 고객의 사진촬영본(셀피)상 얼굴의 특징점을 비교하여 실지확인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상통화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및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카드 발급 가능 - 오픈뱅킹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 직장인 F씨는 매월 급여일마다 4~5개의 은행 앱에 접속하여 월급통장, 생활비통장 등 각종 통장 관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주거래은행 앱 하나로 수수료 없이 "타은행 간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손쉬운 계좌 관리 가능(출금·입금이체 활용) ■ D은행은 당행 · 타행 계좌 구분 없이 "손쉬운 자금 이체", 전 금융사 계좌 중 "원하는 계좌만 선택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추가 등 뱅킹 앱을 개편하고, 타행 계좌의 자금으로 당행 금융상품 가입 시 특별 금리 제공 등 이벤트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출금·입금이체, 잔액, 거래내역조회 활용) ■ "가계부관리" 앱을 운영하는 핀테크 A사는 개별 제휴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 금융사에 한정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었으나, 오픈뱅킹 출범 이후 기존 앱을 개편하여 전 금융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자산관리 등 기능 확장 중(잔액, 거래내역조회 활용) ☞ Ⅱ-1-③-3-ⓑ-1-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지확인(보도자료) ☞ Ⅱ-1-③-3-ⓑ-2-오픈뱅킹 시행 2년이 만든 디지털 금융혁신 성과(보도자료)

II-1-④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❶ (마이데이터* 시행) 특히, 정보주체의 **정보주권 실현, 금융포용성 강화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해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정보주체**가 **내 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시행**('21.12.1~)

*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정보주체**가 **통합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서 **맞춤형 재무·자산관리 제공**

[참고 :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그간의 주요 노력]

❶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 금융보안원 등을 통한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민감성 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절차 신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 및 가입 전 숙려사항 안내절차 마련 등

❷ **(정보제공범위 확대)** 수차례 이해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❸ **(인증절차 간소화) 한 번의 본인인증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정보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통합인증 도입**(舊 **공인인증서** +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된 **사설인증서**)

❹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로서 **경쟁**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과도한 경품지급 제한** 등

❺ **(중계기관 이용확대)** 중소 핀테크 사업자 및 중소 금융회사 등의 **중계기관*** **이용**을 **허용**하여 **직접 API 설비**를 **구축**하는 **부담** 경감

* 정보제공기관의 정보를 API 변환 후 전송하는 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❻ **(대체식별값 확보지원) 주민등록번호 활용**이 **어려운 핀테크**와 **대체식별값(CI*)**이 없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 **정보제공자**를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보제공자**의 **CI 일괄변환 지원**

* 개인식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난수값(주민등록번호로 복원 불가)

❷ **(신산업 허가)** 비금융정보 전문 CB, 개인사업자 CB,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신규 산업에 플레이어 진입 허가 지속**

- 신규 CB 본허가 5개사 및 예비허가 2개사

- 마이데이터 본허가 55개사 및 예비허가 9개사

❸ **(데이터 활용)** 납부정보·이체정보·어음정보 등 금융결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결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

-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대량의 금융결제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개방·결합**하는 **공유 인프라**(Shared Platform)로서 **데이탑**(Datop) **플랫폼 구축 및 참가기관 대상 서비스 오픈**('21.9월)

[참고] 개방 플랫폼 개념도



❹ **(정보보호)**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고, 정보제공에 따르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

-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을 **개편**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가 선택동의시 **사생활침해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위험을 "등급화"**하여 금융이용자에 안내

-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데이터 활용 환경**에서도 정보유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여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21.2월)

* 금융권 자체평가 후 금보원의 서면점검을 거쳐 금감원에서 정기검사시 활용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비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비금융권 정보 등**도 관계부처 및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지속 개방 추진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9.125*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오픈뱅킹 운영사례 및 해외사례,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사례 등을 참조하여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권 동의양식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금융권 표준동의서 개편안 및 동의등급제 운영안내서 마련 ☞ Ⅱ-1-④-1-1-ⓐ-1 업권별 표준동의서 조사결과 ☞ Ⅱ-1-④-1-1-ⓐ-2 오픈뱅킹 연구용역 참고자료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마이데이터 TF 상시 운영** 및 **마이데이터 전문가 간담회 개최** (7.7.) 후 상당부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반영 - 4차위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관계부처 수시 참석** ☞ Ⅱ-1-④-1-1-ⓑ-1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보도자료 ☞ Ⅱ-1-④-1-1-ⓑ-2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 보도자료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8.75*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과제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과제를 균형잡힌 관점**에서 추진계획에 반영 -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전 분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마이데이터**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과감한 목표 설정**
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7.75*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성과지표 대표성)** 새로운 데이터 사업자 등장은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신규 데이터 산업 허가 기관 수**는 **대표적 성과지표**에 해당 - **(목표치 적극성)**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 신용정보업은 **6개 회사**만이 기진입하는 등 **진입규제**가 **엄격히 적용**되던 산업으로 **35개 사업자**의 **신규진입**은 **공격적** 지표* * '20년 신규진입 21개사를 감안시에도 35개사는 1.5배 이상
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	*18.5*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 Ⅱ-1-④-2-1-1 신용정보산업 허가현황 ☞ Ⅱ-1-④-2-1-2 DaTOP 이용실적 ☞ Ⅱ-1-④-2-1-3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안내서 ☞ Ⅱ-1-④-2-1-4 정보활용 동의등급 평가 안내서

<table>
<tr><td></td><td></td><td>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1차 본허가('21.1월)</td><td>마이데이터 28개사 본허가(1.27.)</td><td>완료</td></tr>
<tr><td>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시행('21.2월)</td><td>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시스템 구축 및 시행(2.4.)</td><td>완료</td></tr>
<tr><td>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발표('21.2월)</td><td>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발표(2.23.)</td><td>완료</td></tr>
<tr><td>마이데이터 2차 본허가('21.7월)</td><td>마이데이터 2차 본허가(6.24.)</td><td>완료</td></tr>
<tr><td>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편 및 정보동의등급제 시행('21.6월)</td><td>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편 및 정보동의등급제 시행('21.6월)</td><td>완료</td></tr>
<tr><td>비금융 전문CB 및 개인사업자 CB 허가('21.7월)</td><td>'21.7월 2개사 예비허가 이후 '21.12월 기준 5개사 본허가</td><td>완료</td></tr>
<tr><td>금융결제원 빅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21.12월)</td><td>Datop 플랫폼 구축 및 참가기관 대상 서비스 오픈('21.9월)</td><td>완료</td></tr>
</table>
</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7.25</td><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Ⅱ-1-④-2-2-신용정보산업 허가현황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신규 데이터 산업에 허가 받은 기관수</td><td>35개</td><td>60개</td><td>달성</td></tr>
</table>
○ 추가 설명 사항

-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 관련 설명회, 사전 수요조사, 예비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실시, 금융업권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당초 분기별로 접수예정이었던 허가신청을 매월 접수

- 유연한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상 진입여부가 불확실하던 사업자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예비허가를 부여하는 등 과감한 제도 운영을 통해 성과지표 초과 달성
</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15</td><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API 방식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시행 이후 ’21.12.31일까지 약 17억건의 데이터가 전송(일 평균 약 5,300만건)

- 금융결제데이터 개방 플랫폼인 Datop 포털에 21개 참가기관이 참여하여 참가기관 대상 61개 데이터셋 제공 및 대국민 대상 총 18개 데이터셋 제공

☞ Ⅱ-1-④-3-ⓐ-1-마이데이터 이용 통계

Ⅱ-1-④-3-ⓐ-2-DaTOP 이용실적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의 활성화로 데이터 기반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이 가속화

- 마이데이터 산업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관리하며, 정정·삭제할 수 있게 되어 정보주권 강화

- 상시평가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등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동의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됨

☞ Ⅱ-1-④-3-ⓑ-1-데이탑 플랫폼 주요경과 및 추진실적

Ⅱ-1-④-3-ⓑ-2-마이데이터 전면시행 보도자료
</td></tr>
</table>

II-2-①	금융산업 진입규제 합리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요건을 규정**[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시행('21.6.9.)]

-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최저 자본금**, 취급할 수 있는 **보험 종목, 최대 보험금** 등을 규정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

>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
> ○ (도입취지)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
>
> ○ (자본금) 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 →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시 20억원**
>
> ○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
> ○ (보험기간) **1년** /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 **5천만원** / (회사 수입보험료) **연간 500억원**

○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대한 보험소비자, 시장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취지, 인가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 진행**('21.3.30.)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0개 핀테크기업 등의 진출수요 확인 후 컨설팅 실시***(~'21.8월)

* 주요사업모델 : 펫보험, 날씨보험, 소액실손보험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컨설팅 진행 후 **개별회사의 사업모델 준비기간** 등으로 '21년 중 실제 신규허가를 받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없으나,

- 개별사들의 준비 완료 후 '22년 중 신규허가 신청 및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7.5</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보험업 경쟁도평가(2021.2.8.)를 통해 보험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손해보험시장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 출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 도출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장(한기정 서울대학교 교수), 평가위원 11인
☞ Ⅱ-2-①-1-1-ⓐ 경쟁도평가위원회 보도자료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대한 보험소비자, 시장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 취지, 인가 요건 등에 대한 설명회 진행 (‘21.3.30)
☞ Ⅱ-2-①-1-1-ⓑ 소액단기보험 설명회 보도자료</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5.375</td><td>o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소액단기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 추진계획이 구체적이며 이행난이도 또한 적절하다고 평가됨</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25</td><td>o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 성과지표는 실제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300억원 → 20억원)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완료되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성과지표가 과제를 잘 대표하고 있음</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8.25</td><td>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tr><td>「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21.3월)</td><td>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2.5~3.17)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3.12~4.21.)</td><td>완료</td></tr><tr><td>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완비(법령 정비 완료) (‘21.7월)</td><td>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 완료(‘21.6.9일 시행)</td><td>완료</td></tr></table>* 제도 개선 후에는 실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회사(10개사)를 대상으로 <u>1:1 컨설팅 진행 (‘21.8월)</u> →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FAQ로 작성하여 개별사 제공
☞ Ⅱ-2-①-2-1-1-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예고 보도자료
☞ Ⅱ-2-①-2-1-2-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 보도자료
☞ Ⅱ-2-①-2-1-3-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컨설팅 보도자료</td></tr>
</table>

<table>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7</td><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Ⅱ-2-①-2-2-1-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완료 보도자료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16년 실적</th><th>비고</th></tr>
<tr><td>보험업법 시행령 개정</td><td>시행령 개정</td><td>개정 완료</td><td>달성</td></tr>
</table>
</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13.75</td><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5.25~6.30, 약 5주간)한 결과, 10개 핀테크 기업들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설립추진 의향을 표시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의 증진 정도 등

- (정성)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하여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제약(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캐롯손보) 1개 진입)

- 그러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

-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것이 기대

-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뉴스1(5.25) 펫보험·날씨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시장 내달 열린다 >

"소액단기보험업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미니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 진입이 제약됐지만 소액단기보험업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문턱을 대폭 낮췄다."

< 대한금융신문(7.1) 신한라이프·인카금융,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첫발' >

"신한라이프와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가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추진한다. …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면서 보험업계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d></tr>
</table>

Ⅱ-2-②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추진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2021년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발표('21.8월)**

* 금감원 정성평가(5~6월), 지자체 추천위원 정성평가(6~7월) → 평가위원회 최종결과 확정

- 올해 평가에서는 은행권 의견 수렴 및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평가위원회도 확대 구성***

* 코로나19 금융지원 노력 반영, 은행권역 점포폐쇄 감점 신설 등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항목 개편(5월)

** (기존) 금융위·금감원·금융연, 지자체 추천위원(각 시도별 3인, 총 39인)
(개선) 민간위원장, 행안부·금융위·금감원·금융연, 지자체 추천위원

- 지역재투자 평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시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반영 확대(2개→7개)**

* 기존 부산, 제주도교육청(총 2개) → 전북('21.6월), 강원('21.7월), 제주('21.8월), 대전교육청('21.4월), 전북교육청('21.8월) 추가(총 7개)

○ **(상호금융) 신협과 수협**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태블릿 브랜치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음

* (신협) 태블릿 브랜치 활용방안을 담은 공문발송('21.12.30)

○ **지방은행 경영실태평가 및 리스크평가 개선방안 마련**

- 지방은행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시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여 대형 시중은행(D-SIB)보다 완화된 평가기준*을 '21.3월부터 적용

* (자본적정성) 자본비율 등급기준을 D-SIB 대비 1%p 하향
(수익성) 총자산경비율, 이익경비율 평가시 D-SIB 대비 0.3%p 완화

- ‘22년 이후 **리스크평가 및 유동성 부문**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계획

 * (리스크평가) 기본자본 비율을 D-SIB 대비 1%p 하향(‘21.4월 시행세칙 개정완료)
 * (유동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평가시 D-SIB 대비 10%p 이상 완화 기준 적용,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종료 이후 적용할 계획

○ 저축은행 지역(영업구역) 내 지점설치 규제를 완화*하여 고령층 등 고객과의 접점 확보 지원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 제출(’21.7월)

 * 지점 : (현행) 인가 → (개정안) 사전신고 / (현행) 인가 → (개정안) 사후보고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역재투자 평가지표**는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고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

- 평가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지방교육청과 금고 선정시 지역재투자 평가를 반영하도록 지속 협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8.75*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지역자금 공급 및 중소기업·서민 대출 등 **지역자금 공급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 예대율 등 **평가항목별 통계 분석** 등을 실시 - 신협 이용자 편의를 위해 언택트 수요와 대면 맞춤 서비스 수요 필요성 등 현황 파악 - ’ 20.7월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 ‘지점설치 규제 완화’ 를 주요 개선과제로 선정 ☞ Ⅱ-2-②-1-1-ⓐ-1 (보도자료) 2021년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Ⅱ-2-②-1-1-ⓐ-2 (보도자료)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게 ‘신협 스마트 온’ 서비스 출시 ☞ Ⅱ-2-②-1-1-ⓐ-3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융위원장-지방은행장** 간담회(4.23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재투자, 경영실태평가 **평가지표 개선** → 부위원장 말씀을 통해 개편 방향을 전달(3월,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 구체적인 개편 내용을 지방은행에 직접 회신(5.17일)

<table>
<tr><td></td><td></td><td>- 지자체 추천을 통해 39인(13개 시·도 각 3인)의 정성평가 위원을 선정하고,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을 신규 평가위원으로 추가

→ 지역이해도가 높은 경제·금융전문가 중심의 지자체 추천 위원들이 정성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 제고

- 신협은 전면적인 태블릿 브랜치 시행에 앞서 ‘20년 7월부터 대전, 충남지역 신협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1.7.30~8.12)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Ⅱ-2-②-1-1-ⓑ-1 지방은행 건의사항 회신문
☞ Ⅱ-2-②-1-1-ⓑ-2 (모두발언)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Ⅱ-2-②-1-1-ⓑ-3 지자체 평가위원 구성 요청 공문
☞ Ⅱ-2-②-1-1-ⓑ-4 (보도자료)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게 ‘신협 스마트 온’ 서비스 출시
☞ Ⅱ-2-②-1-1-ⓑ-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안</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8.25</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저축은행, 상호금융, 지방은행 등 지역금융기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규제 개선, 우수사례 전파, 인센티브(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난이도도 적절해 보임

- 신협은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도입해 활용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협, 산림조합은 이러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행난이도가 높음</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375</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역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적절</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6.625</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저축은행 M&A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td><td>저축은행 M&A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중</td><td>일부 완료</td></tr>
<tr><td>‘21년도 지역재투자 평가 실시 및 결과 발표</td><td>평가지표 개선(5월), 평가위 확대·개편(6월), 지자체 평가위원 구성 등(7월), 결과발표(8월)</td><td>완료</td></tr>
<tr><td>수협·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신협의 태블릿 브랜치 운영 우수사례 전파</td><td>신협중앙회는 공문을 통해 ‘태블릿브랜치 업무활용방안”을 안내하였음
※ 수협은 내년 3월 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선 중이고, 산림조합은 도입계획이 없음</td><td>완료</td></tr>
<tr><td>지방은행 경영실태 평가 및 리스크평가 개선방안 마련</td><td>경영실태평가 개선 및 적용(3월), 리스크 평가 개선방안 마련 및 세칙개정(4월) 등</td><td>완료</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Ⅱ-2-②-2-1-1 (보도자료) 2021년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 Ⅱ-2-②-2-1-2 (본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내용 등
☞ Ⅱ-2-②-2-1-3 (붙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내용 등
☞ Ⅱ-2-②-2-1-4 (공문) 태블릿 브랜치 업무활용 방안 안내

o 일부완료·미흡 사유 (필요시 작성)
- 저축은행 M&A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은 추가 검토중</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7.25</td><td>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Ⅱ-2-②-2-2-1 (보도자료) 2021년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발표</td><td>결과 발표</td><td>결과 발표
(보도자료 배포)</td><td>달성</td></tr></table></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15</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시행으로 지방 소개 중소기업 및 서민층의 유동성 애로 완화에 기여
☞ Ⅱ-2-②-3-ⓐ-1 비수도권 은행 대출금액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정성) 지자체 금고 선정과정에서 출연금 과당경쟁 완화 등에 기여하고, 올해부터 평가 항목에 ❶코로나19 지원실적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충격 극복을 지원하고, ❷은행권 점포폐쇄시 감점지표를 신설하여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
- (정성) 상호금융업권의 태블릿 브랜치 활성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Ⅱ-2-②-3-ⓑ-1 지역재투자 관련 기사 1
☞ Ⅱ-2-②-3-ⓑ-2 지역재투자 관련 기사 2
☞ Ⅱ-2-②-3-ⓑ-3 2021년 지역재투자 평가배점표
☞ Ⅱ-2-②-3-ⓑ-4 (공문) 태블릿 브랜치 업무활용 방안 안내</td></tr>
</table>

Ⅱ-3-①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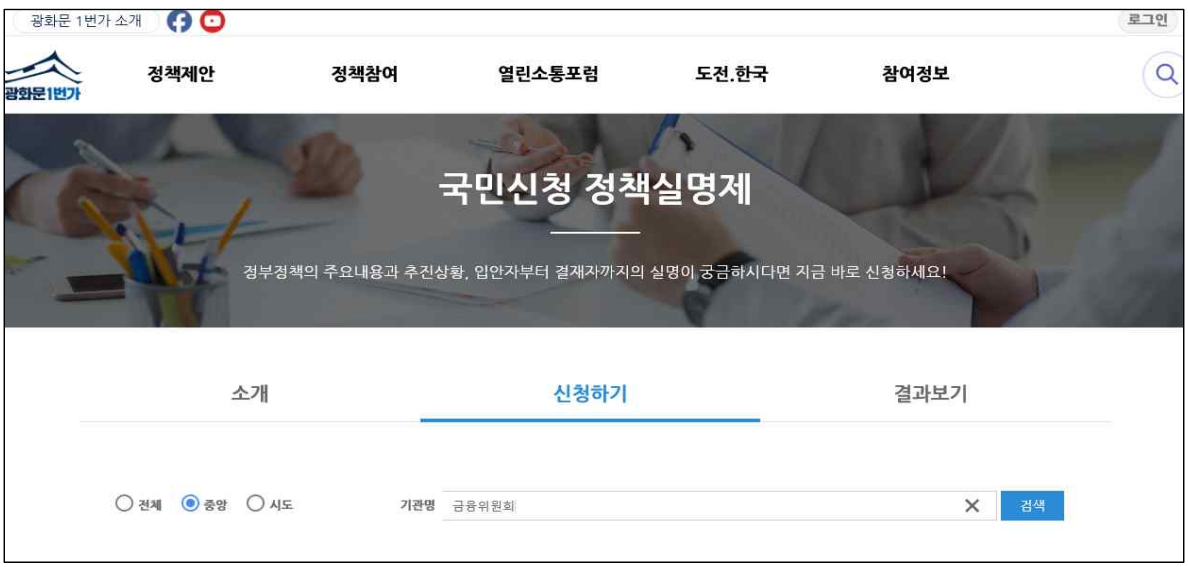
□ 주요성과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정책참여 확대**

- 50개의 주요 금융정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내역서를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



-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금융정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연중 국민신청실명제 접수창구 운영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td><td>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정책실명제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 Ⅱ-3-①-1-1-ⓐ- 정책실명제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화면 캡처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안전부 “2020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준수

☞ Ⅱ-3-①-1-1-ⓑ- “2021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행안부)
</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5</td><td>
o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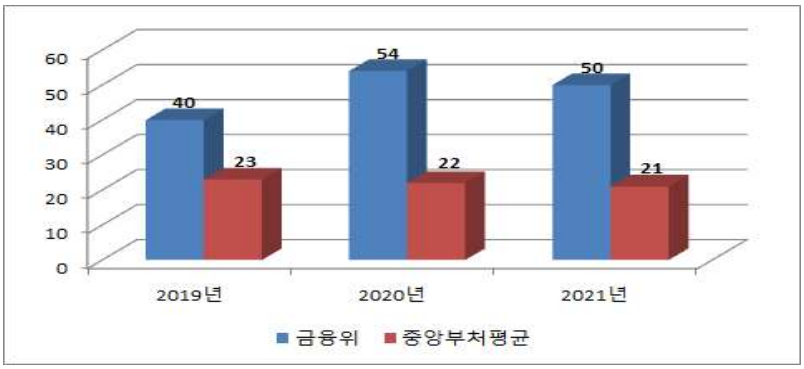
- 1/4분기 내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

- 분기별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현행화(추진현황, 담당자 등)

- 상시적인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창구 운영
</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25</td><td>
o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한 금융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정량적인 사업 수 및 공개 수를 성과목표로 설정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3">실 적</td><td>목표치</td></tr>
<tr><td>연 도</td><td>’ 18년</td><td>’ 19년</td><td>’ 20년</td><td>’ 21년</td></tr>
<tr><td>①선정률 + ②공개율</td><td>80점</td><td>90점</td><td>100점</td><td>100점</td></tr>
</table>
① 선정률 = 대상사업 수 / 처리과 수(25개) * 100
<table>
<tr><td>점 수</td><td>50점</td><td>40점</td><td>30점</td><td>20점</td><td>10점</td></tr>
<tr><td>선정률*</td><td>200% 이상</td><td>150%~199%</td><td>100%~149%</td><td>50%~99%</td><td>50% 미만</td></tr>
</table>
② 공개율 = 홈페이지 공개 사업내역서 수 / 대상사업 수 * 100
<table>
<tr><td>점 수</td><td>50점</td><td>40점</td><td>30점</td><td>20점</td><td>10점</td></tr>
<tr><td>공개율*</td><td>100%</td><td>95%~99%</td><td>90%~94%</td><td>85%~89%</td><td>85% 미만</td></tr>
</table>
- 금융정책 부서당 2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하여 총 50개 이상의 금융정책을 과제로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8</td><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td><td>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td><td>완료</td></tr>
<tr><td>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td><td>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5월)</td><td>완료</td></tr>
<tr><td>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td><td>50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홈페이지 공개(6월)</td><td>완료</td></tr>
<tr><td>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현행화</td><td>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현행화(9월·12월)</td><td>완료</td></tr>
<tr><td>국민신청실명제 접수</td><td>국민신청실명제 수시 접수</td><td>완료</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Ⅱ-3-①-2-1-1-정책실명제 운영계획 공문
☞ Ⅱ-3-①-2-1-2-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공문
☞ Ⅱ-3-①-2-1-3-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화면 캡쳐
☞ Ⅱ-3-①-2-1-4-(3/4분기)사업내역서 현행화 메모보고
☞ Ⅱ-3-①-2-1-5-(4/4분기)사업내역서 현행화 메모보고
☞ Ⅱ-3-①-2-1-6-국민신청실명제 접수 화면 캡쳐</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8.25</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정도+사업내역서 공개 정도</td><td>100</td><td>100</td><td>달성</td></tr></table>☞ Ⅱ-3-①-2-2-1-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회의록(50개 사업 선정)
☞ Ⅱ-3-①-2-2-2-사업내역서 공개 화면(50개 사업내역서 공개)</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7.75</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수가 중앙부처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유지


☞ Ⅱ-3-①-3-ⓐ-정보공개포털 중앙행정기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과제 공개 화면 캡쳐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정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확대* 실시
* 연 3회 => 연중 수시</td></tr>
</table>

Ⅱ-3-②	금융회사 건전경영 확립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저축은행)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타 업권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21.7월)

○ (카드) 여전업 중 신용카드업 진입요건을 금융투자업 등 **타업권을 참고**하여 정비함으로써 **적격 사업자 진입 유도**

-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 **만을 적용**하도록 개선

* 은행업 인가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

**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였던 자 또는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 [참고]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부실금융기관 대주주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

○ (신기술금융)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금소법상** 금융투자상품 **판매규제**(금소법 제4장)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 (금감원 행정지도, '21.12.1.)

*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증권 준용

** 금소법 및 각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할 기준 및 절차 마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비카드 여전업에 대한 진입요건의 경우 **여전사 스트레스테스트 등 건전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22년중 입법예고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75</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금융투자업 허가 및 등록 관련한 진입요건 등 조사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허가·등록 수, 자산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본적정성 등 통계현황을 파악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자본금감소 인가 심사기준이 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1.3.12~4.22)
- ‘20.11.30일 규제입증위원회, ’ 20.12월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을 통해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의견 수렴
☞ Ⅱ-3-②-1-1-ⓑ-1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Ⅱ-3-②-1-1-ⓑ-2 규제입증위원회 보도자료
☞ Ⅱ-3-②-1-1-ⓑ-3 디지털금융협의회 보도자료
☞ Ⅱ-3-②-1-1-ⓑ-4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선방안</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75</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여전업 진입요건 정비를 위한 검토(‘21.3분기) 후 입법예고를 추진(’ 21.4분기)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됨</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6</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여전업 진입요건을 정비하는 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안 마련 및 입법예고 추진은 성과지표로서 과제를 잘 대표함
- 여전업 진입요건 정비는 그간 추진된 적이 없는 사항으로서 과거에 비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판단됨</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4.25</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
<tr><td>저축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발표</td><td>저축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방안 검토중</td><td>일부 완료</td></tr>
<tr><td>PEF의 주식취득승인요건 강화방안 마련 및 발표</td><td>PEF의 주식취득승인요건 강화방안 검토중</td><td>일부 완료</td></tr>
<tr><td>수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td><td>수시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저축은행법 개정안 검토중</td><td>일부 완료</td></tr>
<tr><td>여전업 진입요건 정비를 위한 방안 마련</td><td>여전업 진입요건 정비를 위한 방안 마련</td><td>완료</td></tr>
<tr><td>여전업 진입요건 정비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td><td>신용카드업을 겸영하려는 은행 등의 진입요건을 금융투자업법령을 참고하여 정비 완료 (‘21.8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td><td>완료</td></tr>
</table>
☞ Ⅱ-3-②-2-1-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 일부완료・미흡 사유 (필요시 작성)

- 저축은행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도 및 PEF의 주식취득승인 요건 강화방안 마련은 추가 검토후 추진 예정

</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7.25</td><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Ⅱ-3-②-2-2-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여신전문금융업 진입 요건 정비</td><td>입법예고</td><td>신용카드업을 겸영하려는 은행 등의 진입 요건을 금융투자업법령을 참고하여 정비 완료('21.8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td><td>달성</td></tr>
</table>

</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12.5</td><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21.상반기 기준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기준을 상회

< 제2금융권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

<table>
<tr><th>구분</th><th>자기자본비율
('21.6말)</th><th>연체율
('21.6말)</th><th>고정이하 여신비율
('21.6말)</th><th>순이익
('21.1~6월중)</th></tr>
<tr><td>저은</td><td>BIS비율 14.06%
(7~8% 이상)</td><td>2.7%</td><td>3.6%</td><td>1조 618억원
(전년동기대비 66.9%↑)</td></tr>
<tr><td>카드</td><td>조정자기자본비율 21.4%
(8% 이상)</td><td>1.13%</td><td>0.9%</td><td>1조 4,944억원
(전년동기대비 33.7%↑)</td></tr>
<tr><td>비카드</td><td>조정자기자본비율 16.3%
(7% 이상)</td><td>1.02%</td><td>1.53%</td><td>1조 9,965억원
(전년동기대비 50.0%↑)</td></tr>
<tr><td>상호</td><td>순자본비율 8.15%
(농협 5%·기타 2% 이상)</td><td>1.55%</td><td>1.88%</td><td>1조 8,376억원
(전년동기대비 23.9%↑)</td></tr>
</table>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은행법령 등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은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신용카드업에 진출시 대주주요건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신용카드업 시장에 보다 혁신적인 참여자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조합 출자 권유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를 적용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Ⅱ-3-②-3-ⓑ-1 증권사의 사모신기술조합 투자(출자) 권유시 판매절차 마련

</td></tr>
</table>

II-3-③	新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시행 대비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IFRS17 시행에 대비**해 ①보험회사에 대한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 허용**, ②**보험계리 업무 이해충돌 방지**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발의**('21.7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 **※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ㅇ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 ㅇ 계리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 강화
> ㅇ IFRS17와 일관된 회계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의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하고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용어 구분

-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확대**하여 회계제도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보험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등 효과가 기대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7.75*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IFRS17 도입에 대비시 보험회사의 재무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계량영향평가 등 실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추진단」 회의('21.6月)를 통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 금융위·원,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KDI, 생·손보협회 등 참석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6*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23년 IFRS17 도입을 대비한 법령 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적절하게 설정

<table>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25</td><td>o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보험업법의 개정을 통해 하위 법령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도 법령 개정방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성과지표 설정 적절</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6.5</td><td>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IFRS 관련 법령 개정</td><td>IFRS17 관련「보험업법」개정안 발의
(홍성국의원 대표발의)</td><td></td></tr></table>☞ Ⅱ-3-③-2-1-1-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7.25</td><td>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IFRS 관련 법령 개정</td><td>법률안
제출</td><td>법률안
발의('21.7月)</td><td>달성</td></tr></table>☞ Ⅱ-3-③-2-2-1-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7.25</td><td>ⓐ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해당사항 없음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정성) IFRS17 도입을 대비하는 보험회사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서울경제(7.21) 보험사 자본확충 숨통 트이나... 홍성국, 보험사 코코본드 허용법 발의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보험사도 ‘코코본드’라고 불리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홍의원이 함께 마련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 자본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td></tr>
</table>

Ⅱ-3-④	규제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한 규제 개혁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규제정비 100% 완료

○ **(금융위)** '20~'21년 **2년**에 걸쳐 **총 15차례**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분야 **84개법령 대상 규제사무 2,080건('21년 923건)**을 정비 완료

⇒ **총 277건 규제개선** * 개선율 : 총 규제대비 13.3%, 심층심의 대비 20.4%

⇒ 개정대상 **26개 법령 중 17개는 (일부)개정완료, 9개는 추진 중**

* 개정율 : 총 개선대상 법령 대비 51.3%(277건 중 142건 개선 완료)

※ 규제정비 진행경과

(단위: 건)

구분 (총 15회 개최)	대상 규제	선행 심의	기개선	심층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20년(10회 개최)	1,157	386	5	751	179	35	30
'21년 1차	127	43	-	84	6	-	-
'21년 2차	231	62	-	169	36	-	-
'21년 3차	201	78	-	123	29	-	-
'21년 4차	69	33	-	36	6	-	-
'21년 5차	295	124	-	171	21	-	1
합계	2,080	693	5	1,354	277	35	31

※ ~'21년까지 개선과제 법령 개정추진 결과

구분		대상 법령	비고
추진 완료	9개	주택금융공사법, 신보기금법, 서민금융법, 보험사기방지법, 공인회계사법, 특금법, 신용정보법, 예금자보호법, 비영리법인규칙	개정 완료
일부 완료	8개	자본시장법(Ⅰ), 자본시장법(Ⅱ), 지배구조법, 저축은행법, 전자금융법, 보험업법, 대부업법, 신협법	일부 개정
추진중	9개	자본시장법(Ⅲ), 자본시장법(Ⅳ), 금산법, 지주회사법, 여전법, 보이스피싱법, 자산유동화법, 외부감사법, 은행법	개정 예정

○ **(금융 공공기관)**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은 '20~'21년 2년에 걸쳐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금융분야 **140개 규정 대상 규제사무 487건**을 정비 완료

⇒ **총 123건 규제개선** * 개선율 : 총 규제대비 25.3%

⇒ 개정대상 **72개 규정 중 57개는 완료, 15개는 추진 중**

* 개정율 : 총 개선대상 규제사무 규정 대비 92.6%(123건 중 114건 개선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규제입증위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가 실질적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최종적으로 법령 개정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8.75*	**ⓐ 국무조정실(주관) 요청에 따라 '20~'21년 간 부처별, 소관별 공공기관 정비대상 등록규제 정비 완료계획을 수립** - 금융위 소관 77개 법령(법률 35, 시행령 32, 시행규칙 10개) 대상 규제사무 2,094건에 대해 2년간 2단계에 걸친 정비계획을 마련 -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의 140개 규정, 규제사무 487건에 대해 '21년까지 정비 완료계획을 마련(추가 계획) *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 Ⅱ-3-④-1-1-ⓐ-1 2020년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Ⅱ-3-④-1-1-ⓐ-2 2021년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규제입증위 민간위원은 9명(전체 구성의 60%)으로 **금융분야 전문가** 이외에도 **규제 전문가** 및 **경제단체** 위원이 旣 포함 - 검토 안건 마련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입증위 개최 2주전 법령 심의 검토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사전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fsc.go.kr)를 활용해 **"규제입증 요청 및 소통 창구" 운영**중 ☞ Ⅱ-3-④-1-1-ⓑ-1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규제혁신" 메뉴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7.5*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금융위는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20년도에 1,157건(55%)**을 기 정비하였고, **'21년도에 937건(45%)**를 **추진완료** 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 565건(60%), 하반기에 372건(40%)**를 각각 정비하기로 반기별 계획을 수립 -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은 '21년도에 274건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에 144건(53%), 하반기에 130건(47%)를 각각 정비하기로 반기별 계획을 수립 - 또한, 반기별 세부 추진계획은 각종 대책 및 방안발표와 입법계획 등 법령 소관과의 수요를 반영하여, 입증위원회 개선과제가 입법계획과 연계되도록 추진 ☞ Ⅱ-3-④-1-2-1 2021년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Ⅱ-3-④-1-2-2 2021년 상반기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 Ⅱ-3-④-1-2-3 2021년 하반기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table>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625</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국무조정실 주도로 전 부처가 담당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입증책임제를 도입('19.3)하여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
- (대표성) '19년에는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21년에는 법령 전반에 걸쳐 실시, '21년부터는 소관 공공기관별 입증책임제를 실시
- (적극성) 금융위는 국조실 요구사항인 전체 등록(9개 공공기관 포함)된 금융 규제의 100% 정비완료 목표 설정하였고, 또한, 방대한 양의 규제 사무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규제사무의 성격에 따라 선행심의(존치 필수)와 심층심의(개선방안까지 심사)로 분류하여 본회의는 심층심의 중심으로 진행함
☞ Ⅱ-3-④-1-3 금융규제 유형분류 자료 및 안건(예시)</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9</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상반기)
보험업법 등 14개 법령 정비(법률 6개, 시행령 5개, 시행규칙 3개)</td><td>상반기중 3차례의 규제입증위 법령심의를 개최, 보험업법 등 14개 법령 559건의 규제사무 정비 완료하여 71건의 개선과제 도출</td><td>완료</td></tr><tr><td>(하반기)
은행법 등 15개 법령 정비(법률 6개, 시행령 6개, 시행규칙 3개)</td><td>하반기중 2차례의 규제입증위 법령심의를 개최, 은행법 등 15개 법령 27건의 규제사무 정비 완료하여 364의 개선과제 도출</td><td>완료</td></tr><tr><td>(9개 공공기관)
금융투자업시행세칙 등 140개 규정 정비 (487개 규정)</td><td>9개 각 공공기관은 규제입증위를 거쳐 140개 규정 487건의 규제사무 정비를 완료하여 123건의 개선과제 도출</td><td>완료 (추가 실적)</td></tr></table>- 금융위는 국조실의 요구사항인 "전체 등록된 금융 규제의 100% 정비완료" 목표를 이행하였고,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효과를 위해 개정 작업중
☞ Ⅱ-3-④-2-1-1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실적보고서
☞ Ⅱ-3-④-2-1-2 금융위 법령정비 과제목록
☞ Ⅱ-3-④-2-1-3 공공기관 규정정비 과제목록
○ 일부완료·미흡 사유 (해당없음)</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9</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금융위 규제법령정비 건수</td><td>937건
※실제 : 923건</td><td>923건</td><td>달성
(※정비된 조문수 반영)</td></tr><tr><td>공공기관 규제규정정비 건수</td><td>274건</td><td>335건</td><td>달성
(추가 실적)</td></tr></table>○ 추가 설명 사항
- 금년도 심의대상 법령의 등록규제는 당초 937건이었으나, 외부감사법령 전부 개정('18년)에 따라 규제 정비된 조문수를 반영한 등록규제는 총 923건이며, '21년 규제심의 완료(100%)
- 공공기관 규제규정 검토 중 61건을 추가 발굴하여 규제규정 정비
☞ Ⅱ-3-④-2-2-1 '21년 금융위 규제입증위 회의 개요</td></tr>
</table>

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	*10.75*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성과)** '20년 10차례, '21년 5차례의 규제입증위 법령정비 결과, 개선과제는 277건으로 전체 심의대성 규제 2,080건 대비 **11%의 개선율**을 보이고 있으며, → 개정대상 26개 법령 중, 개정 완료(9개) 및 일부완료(8개), '22년까지 추진 예정중인 법령(9개)이 원활하게 입법작업이 진행 되도록 노력 중 ※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은 '규제입증위' 를 구성 및 개최하여 '21년말까지 12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전체 규제대비 25.3%) ⇒ **규제정비 후 개정완료율**(금융위 : 51.3%, 공공기관 : 92.6%) ☞ Ⅱ-3-④-3-ⓐ-1 금융위원회 규제혁신 실적보고서 ☞ Ⅱ-3-④-3-ⓐ-2 금융위 법령정비 과제목록 ☞ Ⅱ-3-④-3-ⓐ-3 공공기관 규정정비 과제목록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21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 중 대표 사례> **※ 보험업법개정 완료('21.7월)** - (기존)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에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였으나, (개선) 계약자가 사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 → (효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21.8월)** - (기존) 월지급금 지급유형 및 운영방법을 제한적임 (개선) 본인의 연령 및 경제상황에 맞춰 초기증액형, 계단식 증가형 등 **월지급금 지급유형 다양화** → (효과) 주택연금 **상품성 제고 및 신규수요 확대** 등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에 따른 **다양화된 고객 니즈 충족** ☞ Ⅱ-3-④-3-ⓑ [보도자료 및 보도기사]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입자가 연금 수령액을 설계하는 주택연금 출시"

Ⅲ-1-①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서민금융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추진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위축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고금리(20%초과) 대출 이용자를 위한 **대환상품인 안전망대출II 및 햇살론15**(햇살론17 금리 2%p인하) 출시('21.7월)

- 청년층 지원을 위한 햇살론유스 공급 확대('21년중 1,400억원 → 3,330억원) 및 **일시지원금 확대**(300만원 → 500만원)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의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뱅크 신규 출시**('21.7월)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와 할부, 포인트 등 신용카드 혜택 향유를 위한 **햇살론카드 출시**('21.10월)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대상 고용·복지·채무조정 및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연계 강화**를 통한 **정책서민금융 효과성 제고 추진**

②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구조 마련

- 정책서민금융 출연대상 금융권 확대* 등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구조 마련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 및 신규 출연제도 시행**('21.10월 법 시행)

* (기존) 저축·상호금융 → (확대) 저축·상호금융 + 은행·보험·여전

- 예산당국과의 적극적 예산협의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한 추가예산 630억원 확보**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00</td><td>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과거 최고금리 인하 사례를 참고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21.7, 24% → 20%)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위축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수립

- 서민금융 관련 민원, 그간의 건의 등을 참고로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설계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업권별 설명회·간담회를 개최 등을 통해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 Ⅲ-1-①-1-1-ⓑ-1 은행 및 여전업권 신규상품 설명회 개요

☞ Ⅲ-1-①-1-1-ⓑ-2 (보도자료)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
</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7.67</td><td>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 (적절성)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속하게 자체 개선이 가능한 업무와 금융업권의 협조를 얻어 준비가 필요한 신규 상품 출시 계획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수립
</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8.00</td><td>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서민금융 안전망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민금융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적절

- (적극성) 단순히 양적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서민금융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20.00</td><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
<tr><td>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마련 (2/4분기)</td><td>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 ('21.3월)</td><td>완료</td></tr>
<tr><td>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4/4분기)</td><td>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출시
- 안전망대출II, 햇살론15('21.7월)
- 햇살론뱅크('21.7월)
- 햇살론카드('21.10월)</td><td>완료</td></tr>
</table>
☞ Ⅲ-1-①-2-1-1-1 (보도자료)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

☞ Ⅲ-1-①-2-1-1-2 [별첨]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 Ⅲ-1-①-2-1-2 (보도자료) 안전망대출II, 햇살론15 출시 관련 안내

☞ Ⅲ-1-①-2-1-3 (보도자료) 햇살론뱅크 출시

☞ Ⅲ-1-①-2-1-4 (보도자료) 햇살론카드 출시
</td></tr>
</table>

<table>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30.00</td>
<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td><td>방안발표</td><td>방안발표('21.3월)</td><td>달성</td></tr>
</table>
☞ Ⅲ-1-①-2-2-1-1 (보도자료)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 발표

☞ Ⅲ-1-①-2-2-1-2 [별첨]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td>
</tr>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9.0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햇살론17의 금리를 2%p 인하하고, 전년도 보다 8.7% 증가한 1.1조원의 대출을 공급('햇살론15'로 상품명 변경)

-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청년층이 이용하는 햇살론유스 공급규모를 확대하여 전년도 보다 54.6% 증가한 34백억원의 대출을 공급

- 저신용자의 자금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햇살론카드를 출시하여 약 6,300명의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점수 상승과 부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지원을 통해 대상자 55%가 신용점수 평균 54점 상승

☞ Ⅲ-1-①-3-ⓐ-1 (보도자료) 서금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자 55% 신용점수 평균 54점 상승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안전망대출Ⅱ 및 햇살론15(17)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70.3%가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없었다면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대부업·사채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응답

- 최저신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을 지원하는 햇살론카드 출시를 통해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

< 햇살론카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복지아는게 힘, 슬기로운 금융생활, 채무아카데미 등) 게시글, 댓글 등>

- "여러 제한점이 있기는 하지만 카드 혜택(포인트적립, 할인)은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으니 이용제한되는 건으로 딱히 큰 불편한 점은 없을거라고 생각되네요. 혹시라도 신용이 좋지않아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셨던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에 햇살론 카드 보증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저신용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니.. 한도는 낮아도 다행이네요."

- "저는 공과금들 분할했네요. 너무 좋죠 ㅎ, 카드도 심플하고 이뻐요"

☞ Ⅲ-1-①-3-ⓑ-1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보고
</td>
</tr>
</table>

Ⅲ-1-②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 유도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❶ 법정 최고금리를 **24% → 20%로 인하**하여 서민의 이자부담 완화

* ('20.11.16.) 당정협의를 통해 인하방안 논의·확정 → ('20.12.24.)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1.3.30.)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21.7.7.) 시행

- 최고금리 인하로 **20% 초과금리 이용 차주 208만명**(14.2조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 예상**

-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구성하여 집중 점검(6.16일, 7.19일, 8.20일)하고, **제도안착 이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 ①정책점검팀(금융위), ②시장점검팀(금감원), ③애로상담팀(서금원·협회) 등 3개팀 구성

❷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

- 저신용자 대출여력 확보를 위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최대 1%p 인하

*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21.5.3.~6.14.) → 국무회의(8.10.) → 공포·시행(8.17.)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

대부금액	현행	개정
5백만원 이하	대부금액의 4%	대부금액의 3%
5백만원 초과	20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준법·서민금융 공급주력 업체)를 선정*하고, 자금조달규제 합리화**를 통해 원가절감 및 **저신용자대출 확대 유도**

* 저신용자 신용대출 100억원이상 또는 대출잔액 비중 70%이상 21사 선정(8.31)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여신 취급 내규개정(10월),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허용(금융소비자감독규정 개정(7.7.))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는 저신용층(7~10등급) 대출 비중을 유지* 하지 못할 경우 선정 취소하도록 관리

* 저신용자 '비중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을 반기 2회 연속 유지

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확충 및 중금리 대출 확대 유도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햇살론17 금리를 2%p 인하*한 햇살론15 및 고금리대출(20%초과)자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 출시

* 성실상환시 금리 인센티브도 현행 최대 4~5%p에서 6%p까지 확대
** ❶최고금리 인하일('21.7월)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❷1년 이상 이용 중 또는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❸정상상환중인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계획* 발표(5.26일) 및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 신설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3년말 30%까지 확대 등
** 신용점수 하위 30%(기존 5등급이하) 차주에게 70% 이상(현재 약 34% 수준) 공급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9.00*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의 자료분석을 수행 ☞ III-1-②-1-1-ⓐ-1-법정최고금리 인하('20.11.16)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당·정협의에서 방안 발표('20.11.16.) - 금융위,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 전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개최('21.6.16) - 최고금리 인하 전 기관장·국무총리 현장 방문을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7.1, 7.5)하고,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7.6) ☞ III-1-②-1-1-ⓑ-1-법정최고금리 인하('20.11.16) ☞ III-1-②-1-1-ⓑ-2-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개최('21.6.16) ☞ III-1-②-1-1-ⓑ-3-최고금리 인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21.7.6.) ☞ III-1-②-1-1-ⓑ-4-금융위원장 현장방문(7.1, 햇살론뱅크 협약) ☞ III-1-② 1-1-ⓑ-5-국무총리 현장방문(7.5, 안전망대출)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8.67*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과제를 **단계별**(대부업법 하위법령 마련 - 시장상황 점검), **후속조치**(저신용자 공급확대를 위한 중금리대출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계획에 반영

<table>
<tr><td></td><td></td><td>-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 탄력적 대응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위축 최소화를 위한 중금리, 서민금융 확대 등의 보완조치도 병행하여 추진</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8.67</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성과지표 대표성)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함께 이자제한법 시행령도 동시에 개정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어 성과지표로써 대표성을 띰
- (목표치 적극성) 최고금리 인하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동 방안 시행에 따른 신용공급 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신용에의 신용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표 설정</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20.00</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대부업법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개정</td><td>입법예고 및 개정완료</td><td>완료</td></tr><tr><td>대부업권 등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방안 발표</td><td>공급방안 발표</td><td>완료</td></tr><tr><td>최고금리 인하 시행</td><td>시행</td><td>완료</td></tr><tr><td>중개수수료 인하 관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td><td>입법예고 및 개정완료</td><td>완료</td></tr></table>☞ III-1-②-2-1-1 최고금리 인하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20.12.22)
☞ III-1-②-2-1-2 최고금리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21.3.30)
☞ III-1-②-2-1-3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21.4.1)
☞ III-1-②-2-1-4 정책서민금융공급체계개편(21.3.31)
☞ III-1-②-2-1-5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21.4.26)
☞ III-1-②-2-1-6 중개수수료 인하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21.5.3.)
☞ III-1-②-2-1-7 중개수수료 인하 관련 시행령 개정(21.8.17.)</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6.67</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III-1-②-2-2-1 최고금리 인하 시행(21.7.7)
☞ III-1-②-2-2-2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21.4.1)
☞ III-1-②-2-2-3 정책서민금융공급체계개편(21.3.31)
☞ III-1-②-2-2-4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_최종(21.4.26)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최고금리 인하</td><td>4%p</td><td>4%p
(시행령 개정)</td><td>달성</td></tr><tr><td>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지원방안 발표</td><td>방안발표</td><td>방안 발표</td><td>달성</td></tr></table>○ 추가 설명 사항
- 최고금리 인하 관련 사전 시장현황 분석, 보완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시장상황 점검반을 통해 동향 점검 실시</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III-1-②-2-2-5-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1차회의(21.7.8)
☞ III-1-②-2-2-6-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2차회의(21.7.16)
☞ III-1-②-2-2-7-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 3차회의(21.8.19)</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17.33</td><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대부업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금융우수대부업체 지정, 서민금융우수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 허용, 온라인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중개 허용 등으로 저신용공급 확대 추진

- 정책서민금융공급을 위해 ‘햇살론 17’의 금리를 인하하여 ‘햇살론 15’를 출시하고 ‘안전망 대출Ⅱ’ 공급

* 7.7일 최고금리 인하 이후 12월 말까지 햇살론15는 72,683건(5,167억원), 안전망대출Ⅱ는 1,586건(140억원) 지원

☞ III-1-②-3-ⓐ-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관련 감독규정 개정(21.7.7)

☞ III-1-②-3-ⓐ-2 온라인대출플랫폼의 대부중개 회의(21.7.27)

☞ III-1-②-3-ⓐ-3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은행권 규정개정(21.8.11)

☞ III-1-②-3-ⓐ-4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21.8.31)

☞ III-1-②-3-ⓐ-5 햇살론 15 및 안전망대출II 공급 실적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머니투데이('21.6.20.)>

“저축은행 업계, 법정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저축은행업계의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약 58.2만명 고객에 약 2,444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

저축은행 업계, 법정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기존 차주도 20% 이하로

머니투데이방송 이종우 기자

입력 2021-06-20 13:00:01

저축은행 업계가 7월 예정된 최고금리 인하 적용대상 고객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11월 표준여신거래약관 개정 이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 즉 금리인하 대상이 아닌 고객의 대출금리도 20% 이하로 인하한다. 표준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새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대출금리로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제('21.6.24.)>

"기존 카드론도 최고금리 인하.. 264만명이 이자 1,167억 덜 낸다"

이번 조치로 여전사를 이용하는 카드, 캐피털 대출자 264만 명이 1,167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고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카드론도 최고금리 인하...264만명이 이자 1,167억 덜 낸다

여신전문금융사 내달 7일부터

24%→20%로 자발적 금리인하

이해규 기자 2021-06-24 12:00:00 제2금융

☞ III-1-②-3-ⓑ-1 머니투데이 기사

☞ III-1-②-3-ⓑ-2 서울경제 기사

☞ III-1-②-3-ⓑ-3 저축은행_기존 거래차주에게도 인하금리 적용

☞ III-1-②-3-ⓑ-4 여전사_기존 거래고객에게도 인하금리 적용
</td></tr>
</table>

Ⅲ-1-③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 구축	*다소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소비자신용법」**은 현재 국회 제출을 위한 **정부입법 절차 진행중**

>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
>
> **❶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 *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협상과정에서 개인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권 도입**
>
> **❷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
> * **연체채무부담 한정**(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연체가산이자 부과 금지), **추심총량제한**(1주일 7회 초과 연락 금지), **연락제한요청권**(특정 시간대 연락 및 특정 추심수단 활용 금지 요청),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
>
> **❸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 * 수탁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1.2.19.), 금융위원회 의결('21.3.8)을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진행중** ('21년 중 **총 34회** 법제처 방문 · 심사)

- 기존 입법예고 안(대부업법 전부개정안)과 달리 **전면적으로 체계를 개편중***이며, **'22년 초 법제처 심사 완료 및 국회제출 예정**

* 대부업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형태로 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법제처 심사에 오랜 기간 소요중

- 합리적인 법 시행을 위해 **「소비자신용법」 하위법규 마련방안 연구용역**을 실시, 하위규정의 방향 · 세부내용 등을 미리 검토('21.6~12월)

* 금융위, 금감원, 업권, 학계 등을 포괄하여 TF를 구성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논의·검토 진행(총 9차례 회의 진행)

②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채무자의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보완 지속**

1) 코로나19 피해 휴·폐업 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자영업자123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21.3월)

* ❶ 2년간 상환유예 및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❷ 창업·운영자금 ❸ 경영컨설팅 지원
** (기존) 사업장 운영 업력 1년 이상 → (개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는 업력 무관

2) 채무조정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보완**('21.10월)

<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보완 주요 내용 >

구분		기존	개선
지원대상 완화		▸ 단기연체자(신속,사전)2개이상 금융회사채무 보유	▸ 1개 금융회사 단일채무자 신속사전 채무조정 가능
사전채무조정 조정이자율 인하		▸ 이자율 상한 10%, 하한 5%	▸ 이자율 상한 8%, 하한 3.25%
사전채무조정 이자율조정 차등화		▸ 일괄 약정이자률 50% 인하	▸ 상환여력에 따라 약정이자율 차등 감면(30~70%)
사전채무조정 특례대상 확대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 사회취약계층 전체
신속,사전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		▸ 2년간 성실상환시 조정된 이자율의 20% 인하, 4년간 성실상환시 추가 20% 인하	▸ 1년 성실상환시마다 최초 조정 이자율 10%씩 4년간 인하
코로나19 피해자영업자	이자율 추가감면	—	▸ 약정이자율의 추가 10% 감면
	채무조정 신청 완화	▸ 최근 6개월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 원금 중 30%이상인 경우 신청 제한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운영자금대출은 최근 신규대출에서 제외

3) **청년층** 다중채무자의 **원스톱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장학재단**간 **업무협약 체결**('21.11월)

* '18년부터 검토되었으나 한국장학재단의 반대로 추진 지연 → 코로나19 상황에 청년층에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관련기관의 공감하여 추진 가능

4) **신용회복위원회·5개 보증기관**(신보, 주금공, 서금원, 농신보, SGI)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감면기준 개선**('21.12월)

<보증기관 채무조정 감면기준 개선 주요 내용>

구분	기존	개선
미상각채권 감면율개선	▸ 상각채권은 20~70% 미상각채권은 0~30% 감면	▸ 대위변제 후 1년이상 경과채권 감면율을 상각채권수준으로 확대(0~70%)
원금 감면기준 개선	▸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시 원금감면(0~30%)	▸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 원금감면(0~30%)

□ 향후계획 및 보완사항

○ 취약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신용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33</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연령대별 채무조정 신청사유 분포 등 세부 통계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 보완 · 개선 추진
☞ Ⅲ-1-③-1-1-ⓐ 연령대별 채무조정 신청사유 분포 및 신청 추이 등 채무조정자 통계 자료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융소비자 및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생활안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 Ⅲ-1-③-1-1-ⓑ-1 (보도자료) 신복위, 취약계층 금융생활 안정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소비자신용법」 하위법규 마련방안 TF운영('21.6~12월) 및 연구용역 실시
☞ Ⅲ-1-③-1-1-ⓑ-2 소비자신용법 하위법규 마련방안 TF 개요</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4.33</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취약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감면 확대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추진계획으로 평가됨</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00</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관리과제(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 구축) 달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 국회제출’과 ‘신복위 채무조정 감면율’을 목표치로 설정</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8.67</td><td>○「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소비자신용법 제정(안) 국회 제출</td><td>소비자신용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1.2.19.), 금융위원회 의결('21.3.8) 및 법제처 심사중('21.3월~현재)</td><td>진행중</td></tr><tr><td>신복위 채무조정 감면율 39%</td><td>신복위 채무조정 감면율 43.6%</td><td>완료</td></tr></table>○ 일부완료 · 미흡 사유 (필요시 작성)
-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대부업법 전부개정안을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으로 변경하고,「소비자신용법」 하위법규 마련방안 TF 등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 내용을 세밀하게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진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지연</td></tr>
</table>

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	*28.67*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신복위 채무조정 감면율은 취약 연체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등 수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으로 '21년 43.6%로 목표치인 39%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 17년(27.9%) 대비 56.3% 증가함 ☞ Ⅲ-1-③-2-2-1 신복위 채무감면율 추이 통계 - 소비자신용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22.1분기 중 국회 제출 예정 ㅇ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앞서 언급하였듯, 법제처 심사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서 기존 계획보다 법안의 국회 제출이 지연중. 다만,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규율체계를 새롭게 제정하는 만큼 법의 전반적인 체계, 자구, 문언 등을 더욱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
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	*13.00*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복지컨설팅을 지속함으로써 채무조정 이용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등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 도모 ☞ Ⅲ-1-③-3-ⓐ-1(보도자료) 신복위 컨설팅 병행하면 신용점수 2배 상승 - 또한, 신용회복중인 채무자의 신속한 금융생활 복귀를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확대 ('20년 1.4만명→' 21년 3.1만명, 122%↑) ☞ Ⅲ-1-③-3-ⓐ-2(보도자료) 채무조정 6개월이상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가능해져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학자금대출의 원스톱 채무조정,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개선 등 실제 취약채무자들이 채무조정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개선함으로서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Ⅲ-1-③-3-ⓑ-1 보도자료_부처 기관간 협업으로 다중채무를 가진 청년의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재기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Ⅲ-1-③-3-ⓑ-2 보도자료_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Ⅲ-1-④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약탈적 고금리대출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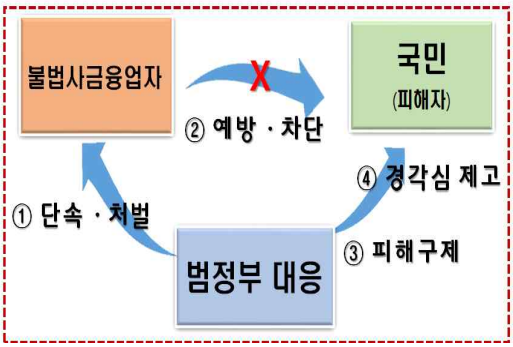
- **최고금리 인하**(7.7일)에 대응하여 7.1일부터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4개월)을 운영, 범부처 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단속 실시

예방·차단	① 정책금융 및 금융회사 사칭 불법광고 단속 강화 ② 인터넷 불법사금융 정보 등 신속차단 ③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변보호를 통한 신고유인 제고
단속·처벌	① 단속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총력대응 ② 민·관협업, 미스터리쇼핑 등 적극 활용 ③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처벌 강화 및 불법이득 박탈
피해구제	① 전담 상담창구 운영 및 유관기관 핫라인 구축 ② 채무자대리인 이용 편의성 제고 ③ 피해자 맞춤형 대출지원 및 종합적 정책 연계
경각심제고	①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② 불법사칭광고 주의·피해상담 및 지원신청 방법 안내

· 경찰, 지자체 특사경(서울·경기)은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고금리 대출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업자를 강력히 집중단속*

*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집중 투입하여 단속('21.7~10월) 결과
: 472건 1,031**명** 검거, 14**명** 구속 / 집중단속 이전 월평균 검거 건수(+53%)·인원(+87%) 증가

[대응구조]



[범정부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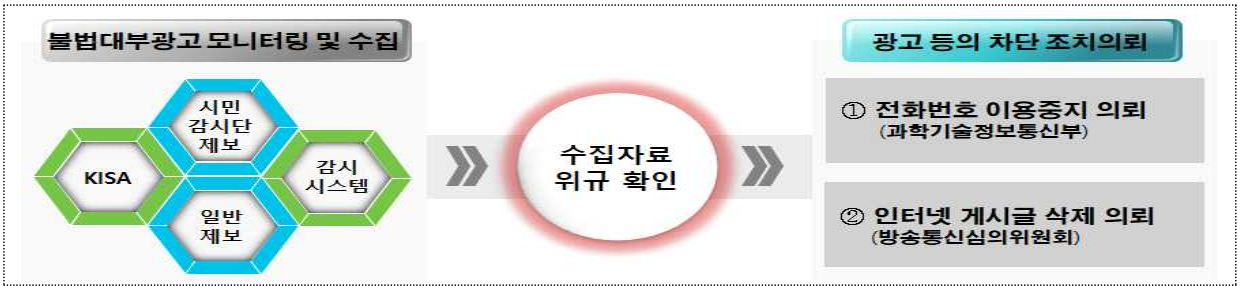
< 주요 단속사례 >

■ **(경기도 특사경-경찰청 합동수사)**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21.9.1.)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범죄' 집중 수사...등록 대부업자 등 23명 적발
- 인터넷 대출플랫폼 사이트에 광고 후 불법 고금리 편취한 사금융업자 등 8명 검거 (불법 대부액 62억 9,200만원, 연 이자율 최고 3천338%, 피해자 399명)
- 미스터리 쇼핑으로 대부행위자 15명 현장 검거. 불법 광고전단지 3만9,000매 압수 및 전화번호 차단

■ **(부산 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불법대부업 조직을 결성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243명에게 연 4,000%, 2.5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득한 대부업자 및 직원 등 25명 검거·송치(구속2, 불구속 23)('21.9월)

· 최근 증가하는 온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선제 적발하고, 불법 금융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금감원-방심위간 시스템 연계 추진

* 금감원은 '21년동안 불법사금융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19,861건), 온라인 차단 의뢰(16,091건) → '20년(각 11,188건, 10,641건) 대비 각각 43.7%, 33.9% 증가



- 고금리·불법추심 피해구제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변호사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피해자의 권리보호·구제 강화

* ('20.上) 74건 → ('20.下) 819건 → ('21.上) 2,456건 → ('21.下) 2,320건

·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주민센터·여름휴양지에 포스터·리플렛 비치, 유튜브 영상·웹툰 제작·업로드 등 **국민 경각심 제고**

* 부산시 전통시장 가두행사(8.4), 해수욕장 현수막 게시, 서울 1~2호선 및 부산 지하철 액자 광고, 시·군·구청 및 경찰서·파출소 내 포스터·리플렛 20만부 배치, '21.10~11월 전국 100개 이마트 영업점내 스크린내 영상 송출

< 불법사금융 근절 및 최고금리 인하 관련 홍보 사례 >

지하철 액자광고	이마트 영업점 스크린	불법사금융 포스터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8.33*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해 금감원, 금융연구원 등의 자료분석을 통해 불사금 유입효과 추정 ☞ III-1-④-1-1-ⓐ-1-법정최고금리 인하('20.11.16)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당·정협의에서 방안 발표('20.11.16.) - 금융위, 금감원, 경찰, 방심위, 경기도, 서울시와 반부패협의체 TF를 구성하여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운영('21.7.1~10.31) ☞ III-1-④-1-1-ⓑ-1-법정최고금리 인하('20.11.16.) ☞ III-1-④-1-1-ⓑ-2-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운영('21.7.1.)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6.00*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과제를 **단계별(❶예방·차단 → ❷단속·처벌 → ❸피해구제 → ❹경각심제고)**로 구분하여 全단계에 걸친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제도개선** 추진 -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과 함께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코로나19 장기화·주식시장 상황** 등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추진을 **지속·강화** ☞ III-1-④-1-2-1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21.4.1) ☞ III-1-④-1-2-2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운영('21.7.1.) ☞ III-1-④-1-2-3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21.3.29)
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4.33*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성과지표 대표성)** 불법사금융 이용차주와 대부업자의 불법추심·고금리에 노출된 차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온라인 광고 적발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엄정 단속하고 불법영업유인을 근절하기 위한 대표적 지표로 설정 - **(목표치 적극성)** 전년대비 각각 50% 및 30% 증가된 실적을 목표치로 적극 설정
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	*20.00*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 III-1-④-2-1-1 정무위 상정 및 법안소위 논의 회의록 ☞ III-1-④-2-1-2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21.3.29) ☞ III-1-④-2-1-3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 운영('21.7.1.) ☞ III-1-④-2-1-4 대부업자 제재내역(36개사)

<table>
<tr><td></td><td></td><td>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 대부업법 정부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 점검</td><td>▪ 국회 정무위 상정 및 법안소위 상정▪논의
▪ 방안 발표 및 점검</td><td>완료</td></tr>
<tr><td>▪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td><td>▪ 방안 발표</td><td>완료</td></tr>
<tr><td>▪ 최고금리 인하 관련 경찰·특사경 및 범부처 합동 단속 실시</td><td>▪ 4개월간 특별단속기간 운영</td><td>완료</td></tr>
<tr><td>▪ 금융감독원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td><td>▪ 대부업자 제재조치(36개사)</td><td>완료</td></tr>
</table>
</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30.00</td><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III-1-④-2-2-1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법구공)

☞ III-1-④-2-2-2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 적발실적(금감원)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td><td>1,800</td><td>4,776</td><td>달성</td></tr>
<tr><td>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적발실적</td><td>15,000</td><td>16,091</td><td>달성</td></tr>
</table>
o 추가 설명 사항

- 채무자대리인 홍보 강화로 채무자대리인 지원건수가 급증하고 불법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알림에 따라 성과지표 초과 달성

☞ III-1-④-2-2-1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21.4.19)

☞ III-1-④-2-2-2 불법사금융 이제 그만_불법대부광고에 속지 마세요(금감원)(21.6.21)
</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6.00</td><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서울시 및 경기도의 불법사금융 단속·점검 강화

☞ III-1-④-3-1 서울시, 추석 앞두고 시장 상인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수사(21.8.24)

☞ III-1-④-3-2 경기도 대부업 검거(21.9.21)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복잡·다양하게 진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웹사이트·SNS 등 전방위적인 예방·차단체계를 가동하여 피해발생 조기 억제

<이데일리 21.12.10>

'고금리, 불법추심' 채무자, 정부에 대리인 요청... 1년새 4배

<한겨례 21.12.15>

금리 5,457%.. 청소년 상대 고금리 불법대출 적발

☞ III-1-④-3-3 고금리, 불법추심 채무자 대리인 요청 기사

☞ III-1-④-3-4 청소년 상대 고금리 불법대출 적발 기사
</td></tr>
</table>

Ⅲ-2-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금소법 시행에 맞춰 **하위규정 제정**(시행령·감독규정, '21.3.25일 시행)

- 금융권 단체·연구기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제정 TF' 상시 운영**('20.5월~'21.2월)

○ **금소법**이 현장에서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금소법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는 등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계도기간 : '21.3.25일~9.24일)

* 금소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 시에는 비조치

-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하여 **매월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한 **해석기준 제공***('21.3월~9월)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21.9.7일) 등 금소법 적용사례 전파

- **주요 규제 사항에 대한 QA*** 및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

* 소비자법 주요 질의 답변(2.18, 3,17, 4.27일), 10문10답(3.25일), 중요사항(3.29일)

** 광고규제 가이드라인(6.8일),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7.1일),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7.14일), 권역별 표준 내부통제기준(8.31) 제정

-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금감원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21.3월~'22.1월)

* 약 380여건 금융기관의 질의에 대해 신속한 회신 제공

- **중소 핀테크 업체**들의 금소법 이해도 제고와 위법소지해소 지원을 위하여 **설명회 개최**(11월 2회, 12월 1회) **및 컨설팅*** **제공**

* 컨설팅을 희망하는 15개 중소 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금소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및 보호**에 기여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00</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금융당국, 연구원,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20년)
☞ Ⅲ-2-①-1-1-ⓑ-1-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실무회의
☞ Ⅲ-2-①-1-1-ⓑ-2-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 간담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업권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모집인, 연구원,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20년)
☞ Ⅲ-2-①-1-1-ⓑ-3-소비자단체, 모집인, 연구원 간담회
☞ Ⅲ-2-①-1-1-ⓑ-4-업권, 외부전문가 간담회
-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21년)
☞ Ⅲ-2-①-1-1-ⓑ-5-금소법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8.67</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20년에 추진했었던 하위규정 제정 작업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법 시행일에 맞춘 하위규정 제정 계획은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판단</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8.33</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6대 기본 원칙을 도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본 틀이 되는 법
- 법 시행에 맞춰 성과지표인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더 나아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소법 시행상황반 등을 운영하여 법 조기 안착을 지원</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20.00</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금소법 하위규정 제정(1분기)</td><td>제정안 공포 및 시행('21.3.25일)</td><td>완료</td></tr></table>☞ Ⅲ-2-①-2-1-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 의결
☞ Ⅲ-2-①-2-2-금소법 시행 보도자료</td></tr>
</table>

<table>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30.00</td>
<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금소법 시행령 제정</td><td>시행령·감독규정 제정</td><td>제정 완료</td><td>달성</td></tr>
</table>
☞ Ⅲ-2-①-2-1-금소법 시행령 제정안 금융위 의결

☞ Ⅲ-2-①-2-2-금소법 시행 보도자료
</td>
</tr>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7.0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으로 금소법의 구체적 적용 범위 등이 명확해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사후구제 제도 정비 등 소비자 권익이 신장

<머니투데이 주소현 교수 기고, 금융소비자보호는 누구의 책임인가(9.25일)>

금소법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준을 높인 진일보한 법률로서 평가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향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과거보다 복잡해진 금융시장환경에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다.
</td>
</tr>
</table>

III-2-②	자동차·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❶ 「자동차보험 종합방안」에 따른 **후속 제도개선 추진**

- **보험료 절감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①**부부특약 가입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 ②**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개선방안('22년 시행)을 발표하였으며, 표준약관 개정 등 **후속조치 완료**

* 40세 여성 기준 무사고경력 적용시 보험료 변동(예: 중형 승용차)

구분	무사고 미적용	무사고 1년 적용	무사고 2년 적용	무사고 3년 적용
가입경력 적용(3년)	102만원	87만원	80만원	**76만원**

- 아울러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실책임주의를 도입,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23년 시행) 등 방안에 대해 후속조치 진행중(표준약관 개정 사항)

❷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21.7월)

※ 보험업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21.6월)

- **15개 보험회사**(손보사 10개, 생보사 5개)가 7월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 **4세대 실손**은 기존 상품과 **보장범위·한도**는 **유사**하지만 **자기부담률**과 **통원공제금액**은 **확대**하여 **과다의료이용 방지장치 마련**
 ➔ **보험료 수준 대폭 인하**

< 남자 40세 보험료 비교 >

상품종류	현행 보험료 ('21.6월 기준)	4세대 보험료	보험료 차이
1세대['09.9월이전]	40,749	11,982	- 28,767(70.6%↓)
2세대['09.10월~'17.3월]	24,738		- 12,756(50.6%↓)
3세대['17.4월~'21.6월]	13,326		- 1,345(10.1%↓)

< 4세대 실손 구조개편 요약 >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기존(3세대)</th><th></th><th>4세대 실손</th></tr>
<tr><td colspan="2">상품구조</td><td>급여·비급여 통합
+ 비급여 3개 특약</td><td>⇒</td><td>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 분리</td></tr>
<tr><td rowspan="2">보험료
차등제</td><td>급여</td><td rowspan="2">미적용</td><td></td><td>미적용</td></tr>
<tr><td>비급여</td><td></td><td>적용 (할인·할증 방식)</td></tr>
<tr><td rowspan="2">자기
부담률</td><td>급여</td><td>10% / 20%</td><td></td><td>20%</td></tr>
<tr><td>비급여</td><td>20% / 특약30%</td><td></td><td>30%</td></tr>
<tr><td rowspan="2">통원
공제</td><td>급여</td><td>최소 1~2만원</td><td></td><td>최소 1만원(병·의원급) / 최소 2만원(상급·종합병원)</td></tr>
<tr><td>비급여</td><td>(처방 0.8만원)</td><td></td><td>최소 3만원</td></tr>
<tr><td rowspan="2">보장
한도</td><td>입원</td><td>상해·질병당
연간 5천만원</td><td></td><td>구 분 / 급여 / 비급여
상해 입·통원 /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질병 입·통원 /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합산 연간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td></tr>
<tr><td>통원</td><td>상해·질병당
회당 30만원
(연 180회)</td><td></td><td></td></tr>
<tr><td colspan="2">재가입주기</td><td>15년</td><td></td><td>5년</td></tr>
</table>

-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최소화***하여 **누구나 4세대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

* 기존 상품 가입자는 보장종목 확대시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없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 가능 + 전환 후 6월 내 보험금 수령 없는 경우는 계약전환 철회 가능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8.67*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2020.10.27.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공청회(2021.4.22. 보험연구원)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의 충분한 의견 수렴 * 소비자계, 보험업계, 학계, 의료계 전문가의 참석 하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진행(온라인 생중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2020.12.24.)하여 의견수렴 * 복지부, 건보공단, 연구원(보사연, 보험연), 소비자대표, 학계(의료계) 전문가 등 참석 하에 의견수렴

<table>
<tr><td></td><td></td><td>- 실손의료보험 구조개편 관련 보험업감독규정(2021.1.19.~3.2.) 및 표준약관(2021.5.27.~6.16.) 변경예고,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예고(2021.11.5.~12.15.)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 실시

☞ Ⅲ-2-②-1-1-ⓑ-1-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집
☞ Ⅲ-2-②-1-1-ⓑ-2-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보도자료
☞ Ⅲ-2-②-1-1-ⓑ-3-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표준약관 개정예고 보도자료
☞ Ⅲ-2-②-1-1-ⓑ-4-자동차보험 공청회 보도자료
☞ Ⅲ-2-②-1-1-ⓑ-5-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보도자료</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8.00</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그간 다양하게 제기된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연내 개선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 설정
-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2020년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 청취·반영하여 제도개선 후 상품 출시까지 이루어낸 것으로 연내 개선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설정됨</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67</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 보도자료,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지표 설정 적절
-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단순히 제도개선(법령 개정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품출시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로 성과지표를 설정</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20.00</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tr><td>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진행</td><td>공정회 진행(4.22)</td><td>완료</td></tr><tr><td>표준약관, 표준사업방법서 개정 완료</td><td>표준약관 개정(12.31)</td><td>완료</td></tr><tr><td>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td><td>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10.1)</td><td>완료</td></tr><tr><td>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7.1)</td><td>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7.1)</td><td>완료</td></tr></table>
☞ Ⅲ-2-②-2-1-1-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보도자료
☞ Ⅲ-2-②-2-1-2-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보도자료</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9.33</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 고</th></tr><tr><td>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발표</td><td>제도개선방안 발표</td><td>보도자료(10.1)</td><td>달성</td></tr><tr><td>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td><td>상품 출시</td><td>상품 출시(7.1~)</td><td>달성</td></tr></table>
☞ Ⅲ-2-②-2-2-1-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보도자료
☞ Ⅲ-2-②-2-2-2-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보도자료</td></tr>
</table>

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	6.00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21.7~10월 중 4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실적 (손보 10개사 기준) 구분 / ’21.7월 / ’21.8월 / ’21.9월 / ’21.10월 판매건수 / 69,463 / 86,770 / 88,647 / 89,422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정성) 자동차보험 재도개선 방안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면서도 군복무자 등에 대한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여 보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 - (정성) 과잉의료 방지장치(보험료 차등제 등) 도입과 구조개편을 통해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새로운 상품 도입 *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지급받음 과잉의료로 인해 손해율은 지속 악화되어 ’21년 130% 초과 →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건강한 사적 사회안전망 기능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 기대 **<비즈니스와치(9.25, 10.2) 4세대 실손보험만이 가진 장점>** “장점 1. 저렴한 보험료” “장점 2. 불임, 선천성 뇌질환, 피부질환 보장 확대” “장점 3. 계약 전환 후 철회기간 ‘6개월’” “장점 4. 보장 기간 늘고 면책기간 줄고” **<조세일보(9.30) 금융당국, 車보험 제도개선...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 차단>** “이번 개편으로 부녀자, 군인 등에 필요한 보장이 확대돼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II-3-①	중금리대출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디지털혁신 진전과 함께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기술·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발표**('21.4월)

- **(사잇돌대출 요건) 신용점수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도록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 신설** ('22.1.3일부터 적용 중)

- **(민간 중금리 요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중금리 대출 요건을 개편** ('21.10월)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2.1.1일 시행)

< 민간중금리대출 인정요건 개편 내용(감독규정 개정) >

○ (기존) 사전공시,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만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하여 공개

* ❶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 ❷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❸업권별 아래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	6.5%	8.5%	11.0%	14.0%	16.0%
금리상한	10.0%	12.0%	14.5%	17.5%	19.5%

○ (개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여,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

* ❶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❷아래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금리상한	6.5%	8.5%	11.0%	14.0%	16.0%

- (**은행 인센티브**) **중금리대출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은행 검사 업무 안내서 개정('21.11월)

- (**2금융권 인센티브**) **2금융권 중금리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 촉진**

 *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여전·저축·상호금융업권의 20%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는 불이익을 폐지하는 등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10월)

- (**저축은행 CSS 고도화**) **중·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시스템(CSS)의 고도화 추진**('21.12월 모형개발 완료)

-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대출금리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

 *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참고하여,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21.8월)

 ** 대부중개수수료 변동 내역('21.8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대부금액	현행	개정
5백만원 이하	대부금액의 **4%**	대부금액의 **3%**
5백만원 초과	20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

- (**대환대출 인프라**)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회의 개최('21.2월~)하여, 이해관계자 간 협의 진행중

○ **인터넷 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안 발표**('21.5월)

-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23년말 30% 상회 목표

-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CSS 고도화 완료**('21.12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33</td><td>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업권별 중금리대출 통계 취합·관리하고 있으며, 중금리대출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중금리대출시장 현황 및 개선과제」 연구용역 용역 실시('20년)

☞ Ⅲ-3-①-1-1-ⓐ-1 중금리대출 통계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중금리대출 제도개선 TF를 통해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서울보증보험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하여 전문가 의견도 청취

- 이후, 5대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 여전업계 CEO 간담회 등에서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언급하는 등 적극 소통

☞ Ⅲ-3-①-1-1-ⓑ-1 금융발전심의회 서면회의 개요

☞ Ⅲ-3-①-1-1-ⓑ-2 여전업계 CEO 간담회 모두말씀
</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33</td><td>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디지털 혁신,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 기술·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 빨표 뿐만 아니라, 감독규정·모범규준 개정 등 방안 시행을 위한 일정도 계획에 포함하였으므로 구체성 및 난이도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8.00</td><td>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사잇돌 및 민간중금리 대출 요건은 중금리를 규정하는 기본 요건이자 금번 중금리대출 제도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과제에 대해 높은 대표성을 지님

- (적극성) 22년부터 개편된 중금리 요건을 차질없이 적용하기 위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표 설정
</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9.00</td><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TF Kick-off</td><td>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TF 출범</td><td>완료</td></tr>
<tr><td>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발표</td><td>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발표(4월)</td><td>완료</td></tr>
<tr><td>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td><td>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완료(8월)</td><td>완료</td></tr>
<tr><td>사잇돌대출 적격요건 개편</td><td>하위 30% 차주에 70%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사잇돌대출 적격요건 개편 완료
→'22.1.3일부터 적용중</td><td>완료</td></tr>
<tr><td>민간중금리 대출 요건 개편(업권별 감독규정 개정)</td><td>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완료(10월)</td><td>완료</td></tr>
<tr><td>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금융결제원)</td><td>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위한 TF 운영</td><td>일부 완료</td></tr>
</table>
</td></tr>
</table>

		☞ Ⅲ-3-①-2-1-1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보도자료 ☞ Ⅲ-3-①-2-1-2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 보도자료 ☞ Ⅲ-3-①-2-1-3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 ※ 사잇돌대출 공급액의 경우 국정과제 29번(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의 성과지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으며, 21년 목표치(21년 2조원 공급) 달성 완료 ☞ Ⅲ-3-①-2-1-4 사잇돌 대출 공급액 **ㅇ 일부완료·미흡 사유 (필요시 작성)**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금융업권,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TF를 구축하여 회의를 다수 개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나, 이해관계자(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간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 연내 집행에 애로 발생 ☞ Ⅲ-3-①-2-1-5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기사
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	*28.33*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성과지표 중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개편 및 민간중금리 대출 인정요건 개편은 **달성 완료**되어 **22년부터 적용중** - 다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의 경우 연초에 TF를 구성하여 회의를 다수 개최하고 타 간담회 등에서도 업권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의견 수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Ⅲ-3-①-2-2-1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 ☞ Ⅲ-3-①-2-2-2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기사

성과지표명	'21년 목표치	'21년 실적	비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 개편	개편	개편	달성
민간중금리 대출 인정요건 개편	개편	개편	달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구축	논의	일부 달성

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	*16.67*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① 사잇돌대출 공급액 21년 목표치 **2조원 달성** 완료 * 국정과제 29번(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의 성과지표 중 하나 - ② 중금리대출(민간중금리+사잇돌대출) **공급액 지속 증가** * ('16)1.3조 → ('17)3.7조 → ('18)6.0조 → ('19)8.3조 → ('20)13.5조 → ('21.3분기)16.3조 ☞ Ⅲ-3-①-3-ⓐ-1-사잇돌대출 공급액 ☞ Ⅲ-3-①-3-ⓐ-2-중금리대출 공급액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중금리대출 요건 변경, 규제 인센티브 제공 등 금융회사가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증가하여 중·저신용을 가진 금융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중·저신용자 신용정보가 축적되고 신용평가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국민 편익 증진에의 기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 **<서울경제(1.21)> 카카오 VS 네이버 '중금리 대출' 진검승부** 카뱅, 1분기 중·저신용자 상품 출시, 공급 규모도 연 1조서 대폭 늘릴 듯, 네이버는 소상공인 중금리대출 공세 월매출 50만원 이상으로 문턱 낮춰, 네이버와 카카오가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자존심을 건 현투를 벌인다. 카카오 뱅크는 조만간 새로운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토대로 차별화된 중금리 대출을 선보이고 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헤럴드(10.25)> 토스뱅크, 중금리대출 금융권 신기록 썼다". 평균금리 7%, 전체대출의 28%, 자체신용평가모델 효과 발휘, 영업 1주일만에 여신액 3,790억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지난 5일 출범한 이후, 무려 3분의 1이상을 대출로 실행하였다.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높은 중금리 대출 비율로 평균금리도 7%로 은행권 한도인 10% 이하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다. (중략) 앞으로도 대출절벽에 놓인 소비자들의 자금 수요를 일부 보완하고, 신파일러나 청년층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중략) **<아시아경제(10.30)> 수신금리 올리고 중금리 대출 늘리고. 성장 가속하는 저축 銀** 저축은행업계가 수신금리 인상과 중금리 대출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략) 여신부문에서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저축은행으로서는 비교적 한도가 넉넉한 중금리 대출이 여신 성장에 유리하다. 저축은행 업계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올 상반기 11조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1.25배 늘어난 규모로, 연16% 이하 중금리 대출은 신규취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덩달아 늘었다.

III-3-②	청년 주거비 부담 절감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활성화**('21.7월)

- 무주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공급한도 폐지**(기존 4.1조원 한도), **1인당 보증한도 증액**(7천→1억원), **보증료 인하**(0.05→0.02%) **실시**

-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의 청년 전월세 보증 취급 확대**(케이뱅크 추가)

⇨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 공급실적은 **'20년 2.9조원(5.9만건)에서 '21년 5.8조원(9.9만건)으로 큰 폭 확대**

② 청년 등의 내집마련 부담 경감을 위한 **초장기모기지 도입**('21.7월)

- 청년·신혼가구 대상 만기가 **최장 40년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

* (예시) 3억원 대출(대출이자 2.5%) 시 월 상환금액 :
(30년 만기) 119만원 → (40년 만기) 99만원으로 16.1% 감소함

⇨ **'21년 중 초장기모기지는 2조원 공급**되었으며, **전체 정책모기지 공급액의 18.2%를 차지**하는 등 출시 첫해 시장 안착에 성공

③ 청년층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분할상환 전세대출 민간부분 확대**('21.4월)

- 신규 발급 기준 총 3,235건, 6,293억원 지원(~'21.11월)

④ **금융기관 분할상환 전세대출 취급 활성화 유도**('21.4월)

- 은행이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분할상환 전세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 마련**

⇨ **2년간 원금의 5% 이상 분할상환 시** 해당 전세대출 잔액을 분할상환대출로 인정하여 **은행에 주신보 출연금 인센티브 부여**

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공급대책**(2.4일, 국토부)'과 **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 등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9.00*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최장 대출만기 취급에 대한 국내 및 해외사례(영국, 스웨덴, 일본, 미국)를 분석하여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출시시점의 이용대상 등을 사전조사 ☞ Ⅲ-3-②-1-1-ⓐ-1-초장기 정책모기지 국내 및 해외(영국, 스웨덴, 일본, 미국)사례 - 전세가격 상승* 등 청년층 주거불안 심화요인을 고려하여 청년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요건 개선안을 마련 * 전국 평균 전세가 현황 (출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16년) 165백만원 ('18년) 186백만원 ('20년) 206백만원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청년층 지원프로그램 제도개선 시 주택금융 수요 설문조사(연례, 주금공)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유관기관 합동 T/F 구성을 통해'주택공급대책'과 초장기 정책모기지의 연계를 검토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7.67*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주금공을 통해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민간 모기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 추진 - 청년층의 전세자금 금융상품 제도개선 수요 파악을 통해 상품 공급규모 및 이용가능금액 확대, 비용부담 절감 등 구체적 제도개선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추진계획의 구체성 확보

<table>
<tr>
<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
<td>8.00</td>
<td>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40년 만기 초장기모기지는 국내에 시도된 적이 없는 사례로 정책 모기지에 시범도입하는 방안과 이를 주택공급대책과 연계하는 방안은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

-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보증)은 청년층 주거비 절감을 지원하는 금융권상품으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 절감 과제와 직접 관련되며 '21년 목표 3.2조원은 전년 공급실적 대비 10% 증가된 수치로 적극적 수준으로 설정됨

- 분할상환 전세대출 민간도입 및 취급 인센티브 도입은 분할상환 활성화에 따른 청년층 채무부담 경감과 직접 관련
</td>
</tr>
<tr>
<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9.67</td>
<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활성화</td><td>공급규모 제한 폐지, 1인당 보증한도 확대 및 보증료율 인하 등 제도개선 실시('21.5월)</td><td>완료</td></tr>
<tr><td>초장기 모기지 시범도입</td><td>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초장기 모기지 도입 ('21.7월)</td><td>완료</td></tr>
<tr><td>분할상환 전세대출 민간 도입확대</td><td>분할상환 전세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실적인정 등 민간 취급지원방안 마련('21.4월)</td><td>완료</td></tr>
<tr><td>분할상환 전세대출 취급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td><td>분할상환 전세대출 취급 우수은행의 주신보 출연금 감면근거 마련('21.4월)</td><td>완료</td></tr>
<tr><td>주택공급대책과 초장기모기지 연계</td><td>금융위, 국토부, 주금공, LH, SH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연계방안 논의('21.4월)</td><td>완료</td></tr>
</table>
☞ Ⅲ-3-②-2-1-1 청년 맞춤형 전월세보증 제도개선 보도자료

Ⅲ-3-②-2-1-2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Ⅲ-3-②-2-1-3 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위 보도자료)
</td>
</tr>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29.67</td>
<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확대(조원)</td><td>3.2</td><td>5.8</td><td>달성</td></tr>
<tr><td>초장기 모기지 시범도입</td><td>상품출시</td><td>상품출시</td><td>달성</td></tr>
<tr><td>분할상환 전세대출 민간 도입확대</td><td>지원체계 개선</td><td>제도 도입</td><td>달성</td></tr>
<tr><td>분할상환 전세대출 취급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td><td>인센티브 도입여부</td><td>도입</td><td>달성</td></tr>
<tr><td>주택공급대책과 초장기모기지 연계</td><td>연계논의 여부</td><td>연계방안 논의</td><td>달성</td></tr>
</table>
</td>
</tr>
</table>

<table>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3.0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초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실 ‘21.11월 기준 2.1조원

<초장기 정책모기지 월별 공급금액>

<table>
<tr><th>구 분</th><th>‘21.7월</th><th>‘21.8월</th><th>‘21.9월</th><th>‘21.10월</th><th>‘21.11월</th><th>‘21.12월</th></tr>
<tr><td>공급액</td><td>0.1조원</td><td>0.4조원</td><td>0.4조원</td><td>0.5조원</td><td>0.4조원</td><td>0.3조원</td></tr>
</table>
☞ Ⅲ-3-②-3-ⓐ-1-초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실적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초장기모기지를 통해 내집마련이 필요하나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 등 주거안정을 지원

- 청년층이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까지 저비용(저금리, 최저보증료)으로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하여 양질의 주거환경을 지원

☞ Ⅲ-3-②-3-ⓑ-1 청년ㅋ 맞춤형 전월세대출 관련 언론보도 자료
</td>
</tr>
</table>

Ⅲ-3-③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정부·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사회적 금융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

- '21.12월말 현재지 **2,821개社**에 **6,399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목표 공급규모(5,162억원) 대비 **124% 달성**

> * (**대출**) 1,954억원을 공급하여, 목표(1,700억원) 대비 115% 달성
> (**보증**) 3,4428억원 보증하여, 목표(2,500억원) 대비 138% 달성
>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1,003억원 투자하여 목표(962억원) 대비 104% 달성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상품** 도입('21.7월)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등급 분석을 통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1~3억 →3~5억원) 및 출자금 한도(3배 → 5배)를 확대

- 상호금융의 사회적금융기관 역할 강화 추진

> * 사회적경제 이해도가 높은 사회적금융 거점 신협 확대(71개 → 100개), 사회적금융 전용상품 출시 (농·수협, 산림조합)

② 사회적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토대 마련

- 사회적 가치의 실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특성에 맞게 개발한 **「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활용기관을 확산**

> * 대면·비대면 설명회(18회) 등 홍보를 통하여 평가플랫폼을 이용 중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이 '20년 말 14개 → '21년말 50개로 확대

- **서금원의 사회적금융 민간사업 수행기관의 수도권 편중 완화***

> * 비수도권 사업수행기관 신청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설명회 등 홍보 강화**
> (비수도권 중개기관 비중 : ('18) 0%, ('19) 10%, ('20) 18%, ('21) 27%)

③ 사회적금융 관계부처,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하여 상호 연계·협력 강화(21년 3회 개최)

* ①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관계부처 담당과장, 담당기관 부기관장 등으로 구성
② 기관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실적 점검, 인프라 구축 협의(총 12회 개최)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9.00*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❶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에서는 성장기에 들어선 사회적경제의 발전정도에 비해 금융공급이 부족*한 **'사회적금융의 과소공급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평가**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대출·보증·투자 확대**를 위한 각종 개선책 발표 * 사회적기업 자금조달('15, 고용부) : 정부보조금(51.4%), 특수관계인 차입(43.6%)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18.2월) 발표 이후, 기관별 자금공급 현황 점검(분기별) ❷ 「2019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실태조사」에서도 '자금 조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Ⅲ-2-③-1-1-ⓐ-1 2019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실태조사(19.12) ☞ Ⅲ-2-③-1-1-ⓐ-2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보도자료(18.2)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20년 제3차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기재부, 중기부) 및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으로부터 공급규모 협의 ☞ Ⅲ-2-③-1-1-ⓑ-1 2020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보도자료)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4.33*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별 사회적금융 공급실적 및 사회적금융 인프라 추진 현황을 점검·협의 - 분기별로 사회적기업 자금배정, 중개기관 추가선정, 사회적금융 성장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개선 등 추진 ☞ Ⅲ-2-③-1-2-1 2021년 제1차-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보도자료) ☞ Ⅲ-2-③-1-2-2 우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특례보증 도입
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5.67*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규모**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직관적이고 대표적인 정량 지표에 해당함 - **(적극성)**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목표**를 20년 대비 **크게 확대[**4,275억원('20년)→5,162억원, 약 20% 증)] ☞ Ⅲ-2-③-1-3-1 2021년 공급계획에 대한 언론보도 모음

<table>
<tr>
<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20.00</td>
<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
<tr><td>사회적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21년도 자금배정(서금원)</td><td>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개시(1월)
서금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21년도 자금배정</td><td>완료</td></tr>
<tr><td>'21년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및 실적점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추가 선정</td><td>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4.21.)
서금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민간수행기관 추가 선정 완료</td><td>완료</td></tr>
<tr><td>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확대 지침마련
20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및 실적점검</td><td>신보 우수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제도 실시(7.1.)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9.1.)</td><td>완료</td></tr>
<tr><td>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 개선(서금원)
'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및 실적점검</td><td>지자체 등 사회적금융 취급기관 실태조사실시를 통한 사회적금융 정보 확충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12.17.)</td><td>완료</td></tr>
</table>
☞ Ⅲ-2-③-2-1-1 21년 제1차~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보도자료)

☞ Ⅲ-2-③-2-1-2 우수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특례보증확대
</td>
</tr>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30.00</td>
<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td><td>5,162억원</td><td>6,399억원
(12월말 기준)</td><td>달성</td></tr>
</table>
☞ Ⅲ-2-③-2-2-1 21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보도자료)

☞ Ⅲ-2-③-2-2-2 12월말 실적 취합 자료
</td>
</tr>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3.00</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정보 DB」 구축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사회적금융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은행권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공급이 확대

· '21년 9월말 은행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잔액은 1조 2,612억원으로 20년말(1조 1,213억원)에 비해 12.5% 증가

<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단위 : 건, 억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0년말</th><th colspan="2">2021년 9월말</th><th colspan="2">증감</th></tr>
<tr><th>건수</th><th>잔액</th><th>건수</th><th>잔액</th><th>증감액</th><th>증감률</th></tr>
<tr><td>사회적기업</td><td>5,767</td><td>8,810</td><td>5,713</td><td>10,016</td><td>1,206</td><td>(13.7)</td></tr>
<tr><td>협동조합</td><td>1,460</td><td>2,138</td><td>1,347</td><td>2,250</td><td>112</td><td>(5.2)</td></tr>
<tr><td>마을기업</td><td>307</td><td>209</td><td>326</td><td>295</td><td>86</td><td>(41.1)</td></tr>
<tr><td>자활기업*</td><td>140</td><td>57</td><td>118</td><td>51</td><td>▲6</td><td>(▲10.5)</td></tr>
<tr><td>소계</td><td>7,674</td><td>11,213</td><td>7,504</td><td>12,612</td><td>1,399</td><td>(12.5)</td></tr>
</table>
☞ Ⅲ-2-③-3-ⓐ-1 20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보도자료)

☞ Ⅲ-2-③-3-ⓐ-2 20년 언론보도 모음
</td>
</tr>
</table>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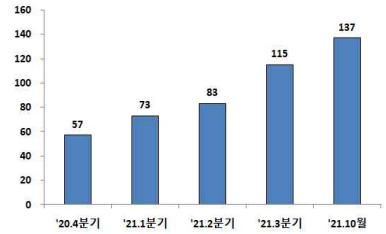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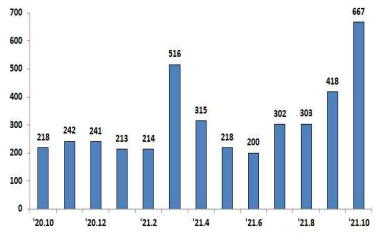
- 사회적금융 **상품정보 제공** 등 사회적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제고** 및 **수요자 편의** 도모

❶ 공공부문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실행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 대폭 제고**

❷ **사회적금융 수요자**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금융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적금융 한눈에' 이용 횟수 증가*

* 금융회사·중개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총 137개 금융상품 및 지원제도 정보제공으로 '20.10~21.10월 '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 이용 건수는 총 4,067건

< 사회적금융 한눈에 정보구축 및 검색 현황 (단위: 건) **>**

정보 구축 현황 (개, 누적)	월별 이용건수 (건)
	

❸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활용하는 민간단체 등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 확대 (20년 14개 기관 → 21년말 50개 기관),

☞ Ⅲ-2-③-3-ⓑ-1 21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보도자료)

☞ Ⅲ-2-③-3-ⓑ-2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활용기관 현황

Ⅳ-1-①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논의 10여년 만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非지주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20.12.29)

* 금융그룹에 대한 **내부거래·위험집중·전이위험** 등의 **그룹위험을 관리**함으로써 **계열사 간의 위험전이를 방지**하는 목적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주요 내용

○ **(내부통제·위험관리)**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위험관리를 위한 절차·방법 등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등 마련

○ **(자본적정성 평가)** 중복자본, 내부거래, 위험집중·전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 100% 이상 유지

$$\text{자본적정성 비율} = \frac{\text{통합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text{통합필요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 위험가산자본)}} \geq 100\%$$

○ **(내부거래·위험집중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

○ **(보고·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①소유·지배구조, ②내부통제·위험관리, ③자본적정성, ④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보고·공시

○ **(위험관리실태평가)**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 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

○ **(위험관리 개선 조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관리가 미흡한 경우, 감독당국은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하고 이행을 확보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21.6.30)에 앞서 **하위규정**을 **제정**하여 금융그룹감독체계 정비 마무리

-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실무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 논의 →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 완료**(시행령 6.22일, 감독규정 6.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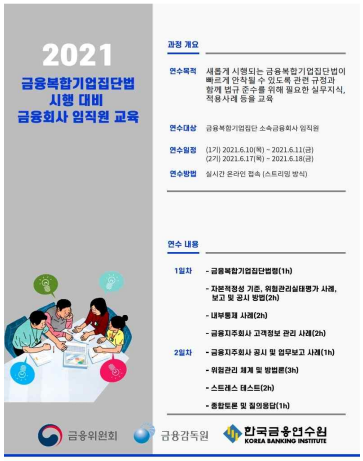
* 금융위, 금감원, 협회, 금융그룹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어, 총 10회 개최('21.1~3월)

○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대상 **교육과정 개설 및 실시**('21.6월, 12월)

* '21.6.10~11일, 6.17~18일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134명, '21.12.16~17일 138명 참석

< 연합인포('21.06.10) > 금융당국, 금융복합기업집단 대상 교육과정 개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도입에 앞서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과 위험관리실태평가, 업무보고서 작성·공시방법 등은 금융당국 담당자가 직접 상세히 강의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질의응답시간도 마련돼 있다.



○ 6개* 금융그룹을 **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21.7.13일)

* 교보,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DB

< 머니투데이('21.07.13) > 금융당국, 삼성·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당국이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관리·감독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위험관리실태 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 경영개선계획을 당국에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매년 7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기준(5조원)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의 안전성을 위해 자산기준의 80%(4조원) 이상을 유지하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 국제적 기준에 맞게 **국제감독규범**(Joint Forum) 체계의 **도입*** 및 **법제화**를 통하여 **한국의 금융감독제도가 한층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

* 다수 금융선진국(예: EU, 미국, 호주, 일본)은 금융그룹감독제도를 旣 시행중

○ 각종 유형의 금융사(지주·非지주그룹, 단독금융회사 등)에 대한 규제 중 금융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있는 등 **시장의 규제 비대칭(asymmetry)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가 지속적으로 금융그룹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여건 조성에 주력

* 그간 대우증권('00년), 대한생명('02년), 동양증권('13년) 등 동반부실사례를 수차례 경험하였으며, 공적자금 투입, 재산상 손실 등 결국 국민 부담으로 작용

주요 언론 동향

아시아경제, '20.12.11

삼성생명, 금융계열사 건전성 관리 나선다(종합)

수정 2020.12.11 14:58
입력 2020.12.11 14:58

금융그룹감독법 통과에 역할 전환
CEO 직속 '소비자보호실' 격상
삼성화재·카드도 조직개편 정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기존명칭 금융그룹감독법)에 맞춰 삼성금융계열사를 대표해 전체 위기·건전성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금융계열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계열사 간 협업 과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매일경제, '21.1.27.

준법경영 실천 선언한 한화생명

비대면 화상회의로 '윤리준법 서약식' 실시

이승훈 기자 입력 : 2021.01.27 15:22:18

한화생명은 27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윤리준법 서약식'을 실시하고 올해 정도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윤리준법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을 다짐했다. 임원진도 윤리준법 선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활동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직원들과 FP(설계사)들도 온라인을 통해 서약에 동참하며 올바른 업무수행과 자발적인 실천의지를 밝혔다. 한화생명은 올해 현장 중심으로 세운 '자율 준수 지침'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단위 체크리스트'와 '부서별 준법지수' 도입으로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윤리경영문화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한화생명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언택트 윤리준법 캠페인'을 매월 1회 실시한다. 카드뉴스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전달하고 댓글 참여를 유도해 윤리준법의식을 더욱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시행을 앞두고 지배구조 관련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ESG 경영도 강화해나간다.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금융그룹감독제도가 미래에셋의 자본건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제도에 대한 외부 평가

< 해럴드경제('20.7.17) > 무디스 "금융그룹통합감독, 미래에셋 등에 도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입법이 투자부적격 추락 위기인 미래에셋대우의 자본건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16일 미래에셋대우의 신용등급을 'Baa2'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은 '하향검토 대상(under review)'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며 이같이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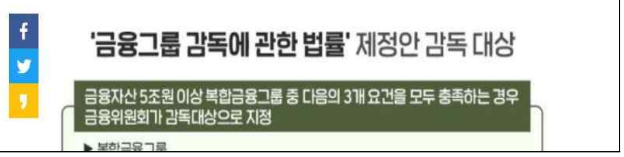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뉴스 오피니언 재테크 부동산 라이프 연예 스포츠 지역뉴스 헤맡NEW

금융

무디스 "금융그룹통합감독, 미래에셋 등에 도움"

대주주 지원여력 낮아
위험성장 통제할 필요
기사입력 2020-07-17 10:54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9.5*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통계분석) 금융그룹 감독제도 운용**을 위한 국내 금융그룹의 수, 자산규모 등의 **통계분석***을 통해 금융그룹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2가지 업종 이상을 영위하는 국내 금융그룹(금융지주 제외)은 '20년말 기준 33개이며, 이중 자산규모 5조원이상 금융그룹(16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8% 수준(자산기준)을 차지 ☞ 4-1-①-1-1-ⓐ-1. '20년말 금융그룹 현황 - **(사례분석)** ①**국제금융감독협의체(Joint Forum)**가 '99년 제정한 「금융그룹감독원칙」(국제규범) 및 동 원칙을 바탕으로 **EU·미국·호주·일본** 등 금융선진국이 旣도입한 「금융그룹감독제도」 **해외사례 연구 지속** · 금융그룹 감독 관련 해외법령집 발간('20.12월) ②**국내 금융그룹 감독관련 법령**(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사지배구조법,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사전 분석·연구 실시** · 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령집 발간('21.8월) ☞ 4-1-①-1-1-ⓐ-2. 금융그룹 감독 관련 해외 법령집 ☞ 4-1-①-1-1-ⓐ-3. 금융그룹 감독 관련 법령집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제도 마련과정에서 **금융그룹 실무자부터 학계·업계 전문가** 의견까지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 폭넓게 의견수렴·반영 * 금융위, 금감원, 업권협회, 금융그룹 실무진 등 구성하여 운영 ·TF회의 10 차례 개최(1.20, 1.28, 2.4, 2.15, 2.18, 2.22, 2.25, 3.18, 3.22, 3.26) ☞ 4-1-①-1-1-ⓑ-1. 하위법령개정을 위한 실무TF 개요 등(10회) - 법시행에 필요한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관리방안**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4-1-①-1-1-ⓑ-2.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관리방안 간담회 개요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3.9~4.19) 및 **감독규정 사전예고**를 실시(4.1~4.21) 하여 **각계 의견 수렴** ☞ 4-1-①-1-1-ⓑ-3.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 4-1-①-1-1-ⓑ-4.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 보도자료 - 시행령, 감독규정 안내, 법규준수를 위한 금융그룹 준비사항·일정 안내 및 금융그룹 의견청취를 위한 **금융그룹 임원 간담회 개최**(6.17) * 금융위, 금감원, 6개그룹 대표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참석 ☞ 4-1-①-1-1-ⓑ-5. 금융그룹 임원 간담회 개최 개요 -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제도설명**」에 참석하여 제도 설명 및 질의응답 대응(11.29~12.13, 6회 실시) ☞ 4-1-①-1-1-ⓑ-6. 찾아가는 제도설명 사전 실무자회의 개최 ☞ 4-1-①-1-1-ⓑ-7. 찾아가는 제도설명 개최(6회)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8.75*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추진계획의 구체성)** 금융복합기업집단법 **하위규정 제정**을 위한 **실무TF**(1분기), **하위규정 제정 입법예고**(1~2분기), 금융그룹 임직원 대상 **제도교육**(상·하반기, 2회), **시행령·감독규정 제정**(2분기), **금융그룹 지정**(3분기) **임직원 교육**(4분기) 등은 대외 공표 등을 통해 분기별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임 -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실무TF, 하위규정개정 입법예고, 금융그룹 임직원 교육, 시행령·감독규정 제정, 금융그룹 지정 등 **각 단계별·분기별**로 **구분**함으로써 **이행난이도**가 **적절히 배분**된 것으로 판단 ·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원활하게 정착하게 위해 단계적 접근을 추진해 옴
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8.5*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성과지표1)** 금융복합기업집단법 하위규정 제정TF **(목표치)**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실무TF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 실시(1분기, 10회) * **(성과지표2)** 금융그룹 임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목표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감독법규 이해 및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6월, 12월) * **(성과지표3)** 감독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목표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21.6.30)에 따라 감독대상 기업집단 지정(7.13일)

<table>
<tr><td></td><td></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금융그룹 건전성 제고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 이후, 법시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그룹 임직원들의 역량강화교육,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은 대표적인 성과지표임

- (목표치의 적극성) 금융그룹 감독제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하위규정 제정 단계부터 피감독 금융그룹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인데 하위규정 제정TF를 통해 금융그룹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금융그룹의 실무진들에게 법령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을 측정하도록 한 것은 목표치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것임</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9.25</td><td>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금융복합기업집단법 하위규정 제정 TF(1분기)</td><td>○ 실무TF회의 개최(10차례 : 1.20, 1.28, 2.4, 2.15, 2.18, 2.22, 2.25, 3.18, 3.22, 3.26)
- 금감원, 각업권협회, 금융그룹 실무진 등으로 구성</td><td>완료</td></tr>
<tr><td>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1～2분기)</td><td>○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 입법예고(3.9～4.19) 및 감독규정 사전예고(4.1~4.21) 실시</td><td>완료</td></tr>
<tr><td>금융그룹 실무자 교육프로그램 진행(2분기)</td><td>○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대비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 금융그룹 임직원 대상으로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하여 온라인교육 실시 (6.10～11 및 6.17～18)</td><td>완료</td></tr>
<tr><td>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2분기)</td><td>○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 제정완료 (시행령 6.22, 감독규정 6.24)</td><td>완료</td></tr>
<tr><td>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대상 금융그룹 지정(3분기)</td><td>○ 6개* 금융그룹 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최초 지정(7.13)
*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td><td>완료</td></tr>
<tr><td>금융그룹 실무자 교육프로그램 진행(4분기)</td><td>○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대비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 금융그룹 임직원 대상으로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하여 온라인교육 실시 (12.16～17)</td><td>완료</td></tr>
</table>
☞ 4-1-①-2-1-1 하위법령개정을 위한 실무TF 개요(1~10회)
☞ 4-1-①-2-1-2 금융복합기업집단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보도자료
☞ 4-1-①-2-1-3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 보도자료
☞ 4-1-①-2-1-4 금융그룹 소속회사 임직원 대상 상반기교육 보도자료
☞ 4-1-①-2-1-5 금융복합기업집단법 하위규정 제정완료 보도자료
☞ 4-1-①-2-1-6 법상 금융그룹 최초지정 보도자료
☞ 4-1-①-2-1-7 금융그룹 소속회사 임직원 대상 하반기교육 보도자료</td></tr>
</table>

<table>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29</td>
<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 금융복합기업집단법 하위규정 제정 실무 TF 운영(횟수)</td><td>10회</td><td>○ 실무TF회의 개최(10차례 : 1.20, 1.28, 2.4, 2.15, 2.18, 2.22, 2.25, 3.18, 3.22, 3.26)
- 금감원, 각업권협회, 금융그룹 실무진 등으로 구성</td><td>달성</td></tr>
<tr><td>· 금융그룹 임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td><td>2회</td><td>○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대비 금융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 금융그룹 임직원 대상으로 한국금융연수원이 주관하여 온라인교육 실시(6월, 12월)</td><td>달성</td></tr>
<tr><td>· 감독대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td><td>지정</td><td>○ 6개* 금융그룹 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 최초 지정 (7.13)
*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td><td>달성</td></tr>
</table>
☞ 4-1-①-2-2-1. 하위법령개정을 위한 실무TF 개요(1~10회)

☞ 4-1-①-2-2-2. 금융그룹 소속회사 임직원 대상 상반기교육 보도자료

☞ 4-1-①-2-2-3. 법상 금융그룹 최초지정 보도자료

☞ 4-1-①-2-2-4. 금융그룹 소속회사 임직원 대상 하반기교육 보도자료
</td>
</tr>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6.5</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 관련

-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도입 관련 법령 준수에 혼란이 없도록 안내(보도자료, 보도참고, QA 배포)

☞ 4-1-①-3-ⓐ-1.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4-1-①-3-ⓐ-2.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 보도자료

☞ 4-1-①-3-ⓐ-3.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취지 및 규제설명

☞ 4-1-①-3-ⓐ-4. 금융복합기업집단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 4-1-①-3-ⓐ-5.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 보도자료

☞ 4-1-①-3-ⓐ-6. 금융그룹 소속회사 임직원 대상 상반기교육 보도자료

☞ 4-1-①-3-ⓐ-7.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 보도자료(6.24)

☞ 4-1-①-3-ⓐ-8. 법상 금융그룹 최초지정 보도자료

☞ 4-1-①-3-ⓐ-9. 금융그룹 소속회사 임직원 대상 하반기교육 보도자료
</td>
</tr>
</table>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언론 보도**를 통해 동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항 증대, 정책의 홍보** 및 **제도의 효과** 등을 전파 ☞ 4-1-①-3-ⓐ-10.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언론보도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국정과제 단위과제(24-4. 공정위 주관)** 이행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제 구현**에 기여 * **국정과제 24**(재벌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 **4**. '금산분리 원칙 준수' 中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 및 시행 ☞ 4-1-①-3-ⓑ-1. 국정과제 추진실적 - 국회·언론 등에서는 금융그룹감독제도가 업권별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규제가 추가되어 이중규제 주장에 대해 **이중규제**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갈등 해소** * (이중규제가 아닌 이유) 업권별 금융감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관리하지만, 금융그룹감독은 계열사 간의 전이위험, 자본의 중복이용 등 개별업권으로 미처 감독되지 못하는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 **< KTV 국민방송('21.04.02)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 금융회사에 대한 이중규제다?** Q :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기업도 감독대상이 되는건가요? A : 카카오의 경우에는 비주력업종이 5조원 미만이기 때문에 감독대상이 아니고, 네이버의 경우 여수신 금투업 등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대상이 아님 Q : 개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이 존재하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아니냐 이런 외부 시각이 존재하는데 어떤지? A : 집단법은 개별 금융업법이 감독하지 못하는 그룹위험(계열사간의 전이위험, 자본의 중복이용 등)에 대해 감독함. 제도의 취지나 규제의 내용이 다른만큼, 이중규제로 보기 힘듦 Q : 기업의 내부거래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아닌지? A : 집단법은 금융회사간의 일상적 내부거래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아님. 금융회사가 스스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고,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시장에 공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취지임. ☞ 4-1-①-3-ⓑ-2. 언론대응 갈등해소(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제도)

Ⅳ-1-②	차세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다소 우수*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심거래정보(STR)의 보고체계 효율화**

- **(보고 안전성 향상)** 보고기관과 FIU 사이에 **보안전용망**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STR을 보고하는 기관**이 6백개에서 36백개로 **6배 확대**

- **(접수 성능 향상)** 보고받은 **STR의 접수**를 다중처리방식으로 개선하여 **1일 처리 건수가 5배 이상 대폭 향상**(일평균 1천건→5천건 이상)

○ 신기술 도입 및 성능개선을 통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

- **(심사분석 효과성 향상) 머신러닝 기술**을 전산분석에 접목*함으로써 **혐의도 높은 STR을 우선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

 * 방대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학습하여 자금세탁 혐의도가 높은 STR을 탐지

- **(심사분석 자료 확대)**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종류를 확대**(신용정보, 기업정보)하고, 행정자료 **보유 시스템과 직접 연계를 통해 자료입수일을 대폭 단축**(10일 이상→1일 이내)

- **(업무 효율성 향상)** 정보요구서 회신자료 추출 등 단순·반복적인 **수작업의 자동화, 의심거래 분석용 전문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

○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체계 강화**

- **(전문 관리기관 입주)**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하여 **장애관리 및 보안관제를 전문인력이 직접 운영**

 * 국가·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행정기관

- **(접근통제 등 보안대책 강화)** 정보시스템 접근시 인증서 로그인 등 **접근통제**와 함께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안대책이 더욱 강화**됨

○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속한 안정화 및 지속적인 기능개선**

- **(신속한 안정화)** 차세대 정보시스템 가동 후 **2개월의 안정화 기간 동안** 완료보고서 작성 오류 등 **114건의 결함을 신속히 조치**

- **(지속적 기능개선) 심사분석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보요구서 사전검토 기능' 신규 개발을 포함하여 **63건의 기능개선을 추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9.5*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용역사업을 통해 대내외 업무환경, 정보기술 동향, 유사·선진 사례 등 환경분석과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을 실시 - 분석 결과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여 핵심이슈 및 개선과제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전략과제 및 목표모델을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 ☞ Ⅳ-1-②-1-1-ⓐ-1 사전조사 증빙자료 ☞ Ⅳ-1-②-1-1-ⓐ-2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요약 보고서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사업 추진 단계마다 의사결정자와 외부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수행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 - 보고회사, FIU 심사분석실, 법집행기관 단위의 TF팀을 구성하여 개선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반영 ☞ Ⅳ-1-②-1-1-ⓑ-1 현장 의견수렴 증빙자료 ※ 해당 과제는 '18년도 계획수립 이후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18년 당시 계획수립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6.75*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1분기에 초기 오류 조치 및 개선 처리 이후 2~4분기 동안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사항을 발굴·개선하는 계획으로 사업 추진 단계별 적절한 이행난이도로 수립되었으나 구체성이 다소 미흡
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7.5*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심사분석업무는 금융회사가 보고한 의심거래정보 중 혐의도가 높은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여 자금세탁을 통한 불법수익의 처벌 및 환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 - FIU정보시스템의 성능개선을 통해 심사분석업무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자금세탁방지의 효과성은 강화

<table>
<tr><td></td><td></td><td>*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직전인 '19년을 기준으로 전·후 심사분석업무의 생산성을 비교

ㅇ 성과목표치의 적극성

- '16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의 심사분석업무 생산성 평균(5.1%) 대비 2배에 가까운 10%를 목표치로 설정</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9.25</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시스템 가동에 따른 초기 오류 조치 및 개선 처리</td><td>ㅇ 차세대시스템 안정화 조치(1~2월)
- 초기 오류 및 결함 조치
- 사용자 개선의견 반영
- 중간조치결과 보고</td><td>완료</td></tr>
<tr><td>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마무리</td><td>ㅇ차세대 사업 감리(2월)
ㅇ차세대 사업 인수인계(1~3월)
ㅇ운영성과 분석/보도자료 배포(3.8)
ㅇ검사검수 및 잔금 지급(3.19~3.31)</td><td>완료</td></tr>
<tr><td>차세대 FIU정보시스템 운영</td><td>ㅇ분석시스템 기능개선 계획 보고(3.24)
ㅇ정보시스템 기능개선(63건)</td><td>완료</td></tr>
</table>
☞ Ⅳ-1-②-2-1-1 [보도참고]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가동
☞ Ⅳ-1-②-2-1-2 차세대시스템 처리현황 중간보고
☞ Ⅳ-1-②-2-1-3 [공문]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종료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Ⅳ-1-②-2-1-4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인수인계확인서
☞ Ⅳ-1-②-2-1-5 [보도자료]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운영성과
☞ Ⅳ-1-②-2-1-6 차세대FIU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검수보고
☞ Ⅳ-1-②-2-1-7 분석시스템 기능개선 계획 보고
☞ Ⅳ-1-②-2-1-8 2021년도 FIU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목록
☞ Ⅳ-1-②-2-1-9 법령개정안건 검토</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9.25</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심사분석 업무생산성</td><td>10%</td><td>45.97%</td><td>달성</td></tr>
</table>
- 성과지표 측정방법
{(당해년도 분석건수-'19년도 분석건수)/'19년도 분석건수} × 100
* '19년도 분석건수 : 24,552건, 당해년도 분석건수 : 35,848건
- '22년도 유지관리사업의 기능개선과제로 정보시스템 발전방안 및 기능개선을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Ⅳ-1-②-2-2-1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증빙자료</td></tr>
</table>

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	*16.5*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보안전용망을 통한 STR 보고비율 약 3배 확대 - 의심거래정보 처리시간 단축 - FIU정보시스템 처리성능 향상 ☞ Ⅳ-1-②-3-ⓐ-1 자금세탁방지 카드뉴스 **ⓑ 정성적 성과** - 경찰청 정보 요구 및 회신 방식 개선으로 업무효율성 향상 - FIU정보시스템 전문 관리기관 입주 등 정보보안체계 강화 ☞ Ⅳ-1-②-3-ⓑ-1 정성적 성과 증빙자료

Ⅳ-1-③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정부안, '20.6월 국회제출) **국회통과 노력 지속**

- 의원 **개정안**(민병덕, 양경숙, 이용우의원) **정무위 법안 예비검토**(4.7) 시 정부안 주요내용도 함께 설명하는 등 **국회설명 지속**

○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를 구축·운영**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건전경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행태변화 유도 노력** 지속

- 이에 따라 업계는 자율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제도개선 추진 중***

* 은행연합회 등 6개 협회,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 발표('21.9월) 등

- 그 결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 평가*('21.10.)에서, '19년도 대비 **상위 등급 취득사 증가**

* 금융사에 대해 **일반 상장회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결과(요약)

■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의 ESG 경영정착 노력, 주주권리 보호, 내부통제기구 독립성 제고, 전반적 공시관행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배구조 관행이 고르게 개선**

- 이사회의 ESG 리스크 검토 회사 증가, 여성이사 선임 증가 등 이사회 운영 관행 개선 및 내부통제기구 독립성 제고 노력(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관련) 증대

`19년도	
등급	해당 금융회사
S	-
A+	3
A	6
B+	20
B	10
C	7
D	2

`21년도	
등급	해당 금융회사
S	**-**
A+	**5**
A	**11**
B+	**16**
B	**9**
C	**5**
D	**1**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회 심의 지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중요**하나, **국회논의가 지연**

- 이사회 운영투명성 제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내실화 등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통과 노력***

* 이용우 의원안 등 국회 제출안 검토 및 병합 심사 지속 추진

○ **법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법개정 외의 수단을 통한 **관행개선 노력도 지속**할 필요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8.5*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금융회사의 고액 보수를 받는 임원 현황, 소수주주권 활용 사례 등 지배구조법 개정안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조사 ☞ Ⅳ-1-③-1-1-ⓐ-1-2017년중 금융회사 임원 보수현황 ☞ Ⅳ-1-③-1-1-ⓐ-2-금융회사 소수주주권 행사현황 - 국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실태점검, 해외의 지배구조 관련 규정 등 국내외 사례를 통해 지배구조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 Ⅳ-1-③-1-1-ⓐ-3-지주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 ☞ Ⅳ-1-③-1-1-ⓐ-4-지배구조법 관련 해외사례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업계 의견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연구원, 협회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 참석 ☞ Ⅳ-1-③-1-1-ⓑ-1-자본연 주최 「금융회사 내부통제」 세미나('21.4.28.) ☞ Ⅳ-1-③-1-1-ⓑ-2-은행연 주최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특별정책세미나」('21.6.18.)

<table>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5.5</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법령 입법과정에 수반되는 세부 과제들을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나열한 바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됨
- (난이도) 야당 반대 등이 극심하여 난이도가 높다고 볼 여지</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6</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CEO 선임투명성 강화, 고액연봉자 보수공시 강화 등은 최종적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달성 가능
- (적극성) 업계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내용 등을 담은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상정한 만큼, 목표설정이 적극적이며, 국정과제 이행 의지도 강하게 천명</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7.75</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tr><td>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내용 의원실, 정무위 행정실 설명 등 지속</td><td>민병덕의원안 검토(2월)
양경숙의원안 검토(2월)
이용우의원안 검토(2월)
김한정의원안 검토(5월)</td><td>완료</td></tr><tr><td>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td><td>법개정 지연으로 순차적 지연</td><td>미흡</td></tr><tr><td>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위 논의</td><td>법개정 지연으로 순차적 지연</td><td>미흡</td></tr></table>☞ Ⅳ-1-③-2-1-1-지배구조법 개정안(민병덕의원)
☞ Ⅳ-1-③-2-1-2-지배구조법 개정안(양경숙의원)
☞ Ⅳ-1-③-2-1-3-지배구조법 개정안(이용우의원)
☞ Ⅳ-1-③-2-1-4-지배구조법 개정안(김한정의원)
○ 일부완료·미흡 사유 (필요시 작성)
- 국회논의 지연 등으로 법 개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5.5</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tr><td>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td><td>지배구조법 개정</td><td>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무위 상정</td><td>일부 달성 (80%)</td></tr></table>☞ Ⅳ-1-③-2-2-1-지배구조법 개정안(정부안)
○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국회논의 지연 등으로 법 개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 점을 감안할 필요</td></tr>
</table>

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	*11.25*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지배구조 평가('21.10.)에서, '19년도 대비 상위 등급 취득사 증가 '19년도 등급 / 해당 금융회사 S / - A^+ / 3 A / 6 B^+ / 20 B / 10 C / 7 D / 2 '21년도 등급 / 해당 금융회사 **S** / **-** **A^+** / **5** **A** / **11** **B^+** / **16** **B** / **9** **C** / **5** **D** / **1** ☞ Ⅳ-1-③-3-ⓐ-1- 2020년 KCGS ES 평가 및 등급 공표(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0.14) ☞ Ⅳ-1-③-3-ⓐ-2- 2021년 KCGS ES 평가 및 등급 공표(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0.26) ⓑ 국민 불편 해소, 국민 편익증진 정도 등 - (정성) 이사회의 ESG 경영 정착 노력, 주주권리의 보호, 내부통제기구 독립성 제고, 전반적 공시 관행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배구조 관행이 고르게 개선되었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제고 ☞ Ⅳ-1-③-3-ⓐ-2- 2021년 KCGS ES 평가 및 등급 공표(한국기업지배구조원, '21.10.26)와 동일

IV-2-①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	*매우 우수*

(1) 평가결과

□ 논의 경과

○ '20.3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 이후,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 발생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 **시장조성자** 관련 공매도 거래의 적정성, **불법공매도 적발 체계**의 **신뢰성** 등에 대한 시장 및 국회 등의 문제 제기

□ 주요 성과

(1) 공매도 부분 재개('21.5.3일)

○ **(주요내용)** 국내 증시상황, 주요국의 공매도 재개상황 등을 고려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에 대하여 **공매도 부분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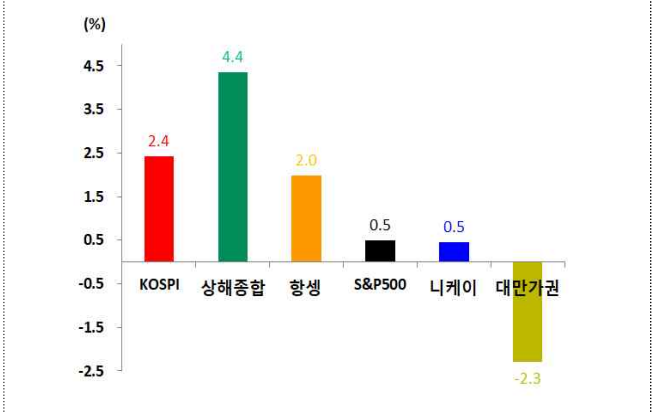
* 21.2.3일 금융위원회 의결

- **(평가)**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세계증시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등 **공매도 재개가 원활하게 안착**

< 공매도 재개 관련 모의테스트 >



< 공매도 재개 한달간 주요국 주가상승률 >



(2) 공매도 제도개선

○ **(주요내용)** 공매도 금지 기간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등 관련 **제도개선**을 원활히 이행

❶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벌** 도입 등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시행** ('21.4.6일)

* (과징금) 주문금액 내 (형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❷ **(불법공매도 적발강화)** 거래소 내 **전담조직 신설, 실시간 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등**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 종목별 차입공매도 호가수량, 투자주체 등 실시간 조회, 잔고초과 호가 분석, 부적격 업틱룰 예외호가 적출 등

❸ **(개인공매도 기회확충) 개인대주물량 2.4조원 확보, 개인**투자자 **사전투자교육** 및 **모의거래 도입 등 개인대주 제도 개선**

❹ (시장조성자) **미니코스피200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조성자 업틱룰 적용** 등 **시장조성자 관련 제도 개선**

<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관련 기사>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최고 주문금액만큼 과징금

공매도 금지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4월 6일 이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장조성...

뉴스핌 2021.04.15.

은성수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완료...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

머니투데이 2021.04.15. 네이버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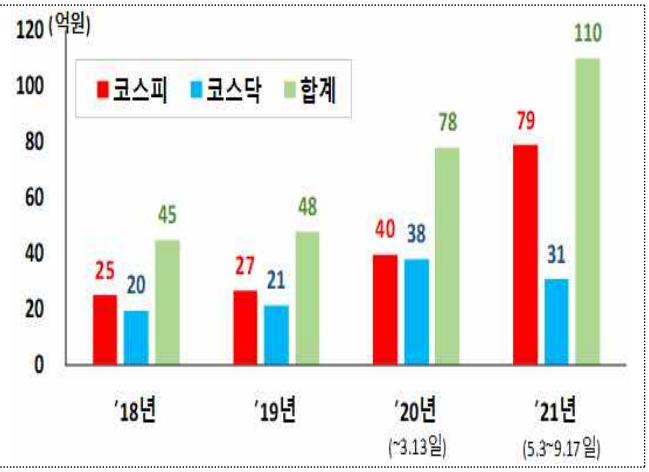
내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은성수 "불법 적발시스템 구축 완료"

앞두고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한국거래소 내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

은성수 "공매도 재개 차질없이 준비...불공정행위는 '독버섯'"

이어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며 "개인이...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 개인 일평균 공매도대금 추이 >



□ 개선·보완 사항

○ 공매도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나머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공매도 재개방법·시기** 등을 검토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9</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 · 한국증권금융 ·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해외사례 등 사전 검토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20.8.13일 한국거래소 주재 「공매도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
- ‘20.12.2일 한국증금금융 주재 「개인대주 활성화」 공청회
☞ Ⅳ-2-①-1-1-ⓑ-1-공매도 제도 토론회 개최(거래소)
☞ Ⅳ-2-①-1-1-ⓑ-2-개인대주 활성화 관련 공청회(증금)</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10</td><td>○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자본시장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위하여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이행난이도에 맞춰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
- 불법공매도 적발강화, 개인공매도 개선 등을 위한 조직 신설, 규정 개정 등 추진계획을 이행난이도에 따라 구체적이고 적절히 수립</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10</td><td>○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성과지표는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한 개정안 마련 및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령 등 개정·시행하겠다는 것으로 적절한 성과지표로서 대표성 및 목표 적극성이 인정</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20</td><td>○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
<tr><td>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마련('21.1Q)</td><td>○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정상 마련</td><td>완료</td></tr>
<tr><td>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21.1Q)</td><td>○ ‘21.1.1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td><td>완료</td></tr>
<tr><td>감독규정 입법예고('21.1Q)</td><td>○ ‘21.2.25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입법예고
○ ‘21.3.11일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td><td>완료</td></tr>
<tr><td>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차관회의 상정('21.1Q)</td><td>○ ‘21.3.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td><td>완료</td></tr>
<tr><td>감독규정 금융위·증선위 의결('21.1Q)</td><td>○ ‘21.3.24일 증선위 의결, 3.31일 금융위 의결</td><td>완료</td></tr>
<tr><td>불법공매도 점검 전담조직 신설('21.1Q)</td><td>○ ‘21.2월 한국거래소내 전담조직 신설
* '21.4월 중 추가 확대 완료</td><td>완료</td></tr>
<tr><td>불법공매도 시장감시 강화('21.1Q)</td><td>○ ‘21.3.16일 점검주기 단축, 신규 적발기법 개시</td><td>완료</td></tr>
<tr><td>개인 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 관련 증권사 협의('21.1Q)</td><td>○ 공매도 후속조치 현장점검회의 정상 점검</td><td>완료</td></tr>
<tr><td>개인대주 취급유인을 위한 신용공여 한도규제 개선(감독규정 개정)('21.1Q)</td><td>○ ‘21.3.24일 증선위 의결, 3.31일 금융위 의결</td><td>완료</td></tr>
<tr><td>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관련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21.1Q)</td><td>○ ‘21.2.24일 증선위 의결, 3.3일 금융위 의결</td><td>완료</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증권사 및 유관기관 시스템 구축 점검('21.1Q)</td><td>○ 공매도 후속조치 현장점검회의 정상 점검</td><td>완료</td></tr>
<tr><td>증권사 및 유관기관 시스템 구축 점검('21.2Q)</td><td>○ 공매도 후속조치 현장점검회의 정상 점검</td><td>완료</td></tr>
<tr><td>자본시장법령 및 감독규정 시행('21.2Q)</td><td>○ '21.4.6일 자본시장법령 및 감독규정 정상 시행</td><td>완료</td></tr>
<tr><td>공매도 부분 재개('21.2Q)</td><td>○ '21.5.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정상 시행</td><td>완료</td></tr>
<tr><td>개인 공매도 사전교육·모의거래 실시('21.2Q)</td><td>○ '21.4.20일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정상 개시</td><td>완료</td></tr>
<tr><td>개인 대상 주식대여물량 추가 확보(지속)</td><td>○ 대주물량 확보를 위한 대여기관 협의 지속 추진 중</td><td>완료</td></tr>
<tr><td>불법공매도 시장감시 강화(지속)</td><td>○ 불법공매도 혐의거래 심층점검 등 시장감시 지속 추진 중</td><td>완료</td></tr>
</table>
☞ Ⅳ-2-①-2-1-1-(3.30 보도자료) 공매도 관련 자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Ⅳ-2-①-2-1-2-(4.15 보도자료) 공매도 재개 준비현황 현장점검

☞ Ⅳ-2-①-2-1-3-(4.20 보도자료) 5.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 시행

☞ Ⅳ-2-①-2-1-4-(4.26)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 본격 가동

☞ Ⅳ-2-①-2-1-5-(4.27 보도참고) 공매도 재개 관련 현장 모의테스트 실시

☞ Ⅳ-2-①-2-1-6-(4.29 보도자료) 5.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 개시

☞ Ⅳ-2-①-2-1-7-(6.4 보도자료) 공매도 재개후 한달간 주식시장 동향 점검</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30</td><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Ⅳ-2-①-2-2-(3.30 보도자료) 공매도 관련 자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td><td>개정완료 및 시행</td><td>4.6일 시행</td><td>달성</td></tr>
</table>
</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16.5</td><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공매도 재개 한달간 주가지수는 코스피 +2.4% 상승, 코스닥 △0.2% 하락 등 공매도 부분재개가 원활하게 안착

* 同기간 일평균 공매도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금지 직전('20년)과 유사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2.7%로 40% 감소)

- 일평균 공매도(억원) : ('18) 5,248 ('19) 4,207 ('20.3월) 6,542 ('21.5~6.2) 6,882

공매도 거래비중(%) : ('18) 4.7 ('19) 4.6 ('20.1~3월) 4.7 ('21.5~6월) 2.7

☞ Ⅳ-2-①-3-ⓐ-(6.4 보도자료) 공매도 재개후 한달간 주식시장 동향 점검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정성) 공매도 관련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중이며, 개인대주제도 개편을 통하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도 제고됨

☞ Ⅳ-2-①-3-ⓑ-(9.24 보도자료) 공매도 부분재개 이후 개인투자자 공매도 동향 및 접근성 제고방안
</td></tr>
</table>

Ⅳ-2-②	공시 투명성 및 투자자 이용편의성 제고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마련·발표**('21.1월) 및 관련 **시행령**('21.12월)**·규정 개정 완료**

❶ 투자자들이 공시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보고서 편제**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개편**(기업공시서식 개정)*하고, **전자공시시스템**(DART) 편의성을 제고**

* 투자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공시서식 분류체계를 조정,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하는 등 일반 투자자의 공시정보 가독성을 제고

** 전자공시시스템 개편을 통해 초기화면을 공시정보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항목별 순서를 이용자가 변경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페이지로 제공, 공시 검색기능도 다양화

❷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

- **시행령 개정**('21.12월)을 통해 **분기보고서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서식 개정으로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등 추진

* 분기보고서는 사업보고서 항목 중 필수항목(재무사항, 사업내용 등)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토록 개선

❸ ESG 책임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ESG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관련 교육지원** 등을 통해 **ESG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방안 마련 및 추진****

* ESG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1월), 상장사 대상 ESG정보공개 관련 상시 교육지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현황 점검(12월) 추진 → **자율공시 확산(전년 대비 84% 증가)**

**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방안 마련(1월)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범위 확대('21.12월, 거래소 규정 개정 완료)**

- **스튜어드십 코드**(' 16.12월 제정)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개정 검토**

*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 분석 보고서 작성('21.10월, 기업지배구조원) 및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정 방안을 검토

❹ **공시 사각지대 축소** 및 **공시 위반 제재 정상화**로 **투자자보호 강화**

- **기술특례 상장법인, 역외지주사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상습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되고 **제재 형평**도 개선**

* 재무구조가 취약한 특례상장기업에 대해 공시의무 강화,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의 개별 재무정보와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21.1월, 공시서식 개정)

**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제도 정비 및 공시 규제 위반 관련 제재 형평 개선('21.10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기업공시제도 개선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후속 절차 및 ESG공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지속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8.5*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외 경영환경도 급변**하면서 **기업·투자자간 소통채널**로서 **기업공시의 중요성**이 부각 -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을 위해 **기업공시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 - 공시 제도 개선 **T/F 구성·운영**을 통해 공시 통계 조사 및 관련 사례분석 후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공시제도 개선 관계기관 및 전문가 T/F 구성/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 실시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21.1월) -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게 하되,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 -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였음('19.5월,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등) ☞ Ⅳ-2-②-1-1-①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보도자료 ☞ Ⅳ-2-②-1-1-②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table>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7.75</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기업과 투자자 측면에서 현행 공시 제도의 문제점 등을 발굴하고, 현장 과제 중심으로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함
- 통상적인 정부입법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하되, 관계기관 TF구성·운영 등을 통해 세부 과제를 충분히 논의·검토하였음</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7.75</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관리과제의 달성 여부와 개선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발표’와 ‘과제’를 목표치로 설정
- (적극성)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은 기업 공시부담은 경감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세부과제 등을 통해 자본시장 안정화에 기여
· 특히, 전세계적인 ESG흐름에 대응하여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고, ESG공시 확산을 유도한 결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거래소 공시 비중이 대폭 확대(전년대비 84% 증가)</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7.75</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구 분</th><th>추진계획</th><th>세부 일정</th><th>추진실적</th></tr>
<tr><td rowspan="2">1/4 분기</td><td>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발표, 특례 상장법인 공시 강화</td><td>1월</td><td>완료</td></tr>
<tr><td>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등(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td><td>1월</td><td>완료</td></tr>
<tr><td rowspan="2">2/4 분기</td><td>사업보고서 체계 개편(공시서식 개정)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선</td><td>.6월</td><td>완료</td></tr>
<tr><td>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td><td>6월</td><td>완료 (서식개정)</td></tr>
<tr><td rowspan="2">3/4 분기</td><td>분기보고서 작성 간소화</td><td>9월</td><td rowspan="2">9월 입법예고/ 12월 시행령 개정완료</td></tr>
<tr><td>최초 외감법인 사업보고서 유예 등 제도 정비</td><td>9월</td></tr>
<tr><td rowspan="2">4/4 분기</td><td>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제도 정비 등</td><td>12월</td><td>법개정안 입법예고 완료(법제처 심사대기중)</td></tr>
<tr><td>스튜어드십 코드 성과평가 및 개정검토</td><td>12월</td><td>성과평가 및 개정검토</td></tr>
</table>
☞ Ⅳ-2-②-1-1-①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보도자료
☞ Ⅳ-2-②-1-1-②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 Ⅳ-2-②-2-1-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내용
☞ Ⅳ-2-②-2-1-② : ESG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 Ⅳ-2-②-2-1-③ : 전자공시시스템 개선 보도자료
☞ Ⅳ-2-②-2-1-④ :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서식개정
☞ Ⅳ-2-②-2-1-⑤ :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 Ⅳ-2-②-2-1-⑥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 Ⅳ-2-②-2-1-⑦ :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평가 등 관련 자료</td></tr>
</table>

<table>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27.5</td>
<td>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관련 방안 마련·발표 후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완료

☞ Ⅳ-2-②-1-1-①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보도자료

☞ Ⅳ-2-②-1-1-② :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 Ⅳ-2-②-2-1-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내용

☞ Ⅳ-2-②-2-1-② : ESG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 Ⅳ-2-②-2-1-③ : 전자공시시스템 개선 보도자료

☞ Ⅳ-2-②-2-1-④ :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 서식개정

☞ Ⅳ-2-②-2-1-⑤ :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 Ⅳ-2-②-2-1-⑥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 Ⅳ-2-②-2-1-⑦ :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평가 등 관련 자료

☞ Ⅳ-2-②-2-2-① :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시행

☞ Ⅳ-2-②-2-2-② :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시행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공시서식 개정 및
전자공시시스템 개편,
규정 및 시행령 개정</td><td>개정 완료 등</td><td>개정 완료,
시스템 개선 완료</td><td>달성</td></tr>
<tr><td>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td><td>대책 발표</td><td>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 발표</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4.75</td>
<td>
ㅇ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증가율 대폭 상승(+84%)*

* 자율공시기업 수 : '20년 38사 → '21년 70사('21.11.15 기준)

·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발간, 상장사 대상 거래소의 ESG공시 교육 지원 지속 추진 등에 기인

· ESG공시확산 전략 관계기관 토론회 개최('21.12월, 금융위원장 주재)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표준화 논의 적극 대응

☞ Ⅳ-2-②-2-1-② : ESG정보공개 가이던스 제정

☞ Ⅳ-2-②-3-1-① : ESG공시 확산전략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붙임 1. '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현황 점검결과 참조)

ㅇ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정성) 공시 이용 편의성 개선 및 접근성 확대

· 전자공시(DART) 시스템 개선을 통해 공시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초보이용자도 쉽게 공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21.5월, 금감원)

· 한편, 일반국민 등 투자자들이 기업들 ESG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ESG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21.12월, 거래소)
</td>
</tr>
</table>

		네이버처럼 한눈에 공시결과 나온다‥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전면 개편 ('20.7.3, 조선비즈) -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가 네이버·구글과 같은 주요 검색 사이트 처럼 한눈에 결과를 보여주는 '통합검색' 시스템을 도입 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 ESG공시·통계 한곳서 본다('21.12.19, MK뉴스) - 상장기업의 ESG 공시 정보를 비롯해 평가 정보, 타 기관 제공 정보 등 여러 곳에 분산된 정보를 ESG 포털에서 모두 확인할 수도 있다. ☞ Ⅳ-2-②-2-1-③ : 전자공시시스템 개선 보도자료 ☞ Ⅳ-2-②-3-1-② : ESG정보 플랫폼 오픈 보도자료

Ⅳ-2-③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적발·감시체계 및 제재 강화	*미흡*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 추진**('20.10월~'21.6월)

<주요 추진 실적>

□ 불공정거래 대응시스템 강화

○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구축** ('21.3월)

*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사건의 진행단계, 처리결과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공유

○ **「부정거래 적발시스템」가동**('21.4월)

* 104개사 적출,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적발(4월중)

○ **불법공매도 제재 및 감시·적발시스템 강화** ('21.4월)

□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적극 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 ('20.10월~'21.6월) 및 **테마주 집중점검**** ('21.上 기준)

* 금감원 1,400여건, 거래소 700여건 신고 접수
→ 11건 조사(금감원), 44건 시장감시(거래소)에 활용

** 189개 종목 신규 추가(12개 분야, 총 511개 종목 모니터링)

○ **불공정거래 예방 및 사전차단 강화** ('21.上 기준)

*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에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 신속 처리

○ **시장질서교란 행위자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 (9명, 9.5억원)

□ 취약부문 집중점검 ('21.上 기준)

○ **무자본 M&A 및 전환사채**

* 공시상 주요특징을 보이는 25개사 점검, 부정거래 징후 발견된 12개사 기획조사 등 실시중

*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감리(21개사 완료, 9개사 감리진행중) 등

*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 등('21.9월 시행령 입법예고)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 일제점검(600여개사)·암행점검(40여개사) 실시 ('21.上 기준)

*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 **한계법인 집중감시** * 50개사 집중감시, 불공정거래 의심 24개사 심리중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재사례 분기별 공개**(3차례, '21.1월, 4월, 7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하여 **투자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

* 자사의 주가하락을 막기 위한 임직원들의 시세조종, 주식투자 카페에서의 시세조종 등

○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한 포상금 지급 활성화**('21.4월 발표)

* ❶포상금 산정기준 상향('21.10월, 규정개정 완료), ❷주식 리딩방 관련 포상금 확대 지급 시행('21.4월~), ❸금융위·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통합 DB 운영('21.5월~)

- 포상금 산정기준 상향(등급별 1.7~2.5배)으로 동일 신고건에 대하여 **약 83.6%정도 포상금이 증액**되는 효과 예상(개정규정 적용시)

○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정 완료**('21.10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CB 발행시 주식전환과 관련한 **각종 조건이 부여***되면서 **문제점****발생 → CB 발행 **조건의 행사** 및 **관련 공시의무 강화**

* ❶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 Call option), ❷ **전환가액조정**(리픽싱, Refixing)

** ❶ **기존 주주 주식가치 희석화, ❷최대주주 지분확대에 악용, ❸불공정거래에 활용** 등

○ 현행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논의* 적극 지원**(3차례, 정무위 법안소위)

* **관계부처**(금융위·법무부·검찰)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개정안 발의**('20.9월, 윤관석의원)

※ 수차례 소위 논의로 **대다수 쟁점이 해소**되었으나, **과징금 부과절차** 관련 소수 의원 반대

<과징금 도입시 예상효과>

○ 과징금 제도 도입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 부과 가능**

- 현행 형사처벌의 경우 ①**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②**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

① 증선위가 검찰통보한 사건이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평균 393일, 형사재판 평균 처리기간 12.9개월 등 **2년 이상 소요**

② 형사처벌은 강력하고 최후적인 제재수단으로서,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여 **기소율이 낮으며***, 기소시에도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

* 15년~19년까지 증선위가 검찰통보한 총 1,296명中 기소 238명(18.4%), 약식기소 113명(8.5%) 불기소 371명(28.6%), 수사중 574명(44.6%)

** 불공정거래 실형선고 40.2%, 집행유예 선고 59.8%(대법원, 2018)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table>
<tr><th>평가지표</th><th>평가결과</th><th>평정근거 및 제언</th></tr>
<tr><td>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td><td>8.5</td><td>ⓐ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대책을 추진하면서 증권시장 유동성 동향(투자자예탁금 및 주식 활동 계좌수), 신용거래융자 잔고 추이,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동향(시장경보추이, 불공정거래 의심상장사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21.4월, 7월 보도자료)
* 보도자료 및 붙임(‘21.4월 및 7월)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증권시장 취약부분 점검 및 제도개선(‘20.12월, ’ 21.4월, 7월 대면회의 개최)</td></tr>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6</td><td>o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증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됨에 따라 기관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보완 추진
- 최근 불공정거래 형사처벌(벌금)의 실효성이 저하됨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과징금 등 행정제재의 도입 필요성이 있고, 제재적 조치에 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5.75</td><td>o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현행 형벌부과만 가능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위한 과징금 도입 필요
- 증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됨에 따라 기관간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6</td><td>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tr><td>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td><td>- ‘21년중 2차례 집중대응단 회의(4월, 7월) 개최하여 대응실적을 점검
- 집중대응단 활동을 마무리(~‘21.6월)하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발표</td><td>완료</td></tr><tr><td>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td><td>- 법무부·검찰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과징금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20.10월)
- ‘21년 3차례 소위를 통하여 다수의 쟁점을 해소</td><td>진행중</td></tr></table>* 보도자료(‘21.4월, 7월)</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 일부완료·미흡 사유 (필요시 작성)

- ‘21년 3차례 소위를 통하여 다수의 쟁점을 해소하였으나, 과징금 부과절차 관련 소수의원이 이견을 제시하는 상황

* 형벌과 과징금 부과절차를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절차를 규정한 개정안과 달리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td></tr>
<tr><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td>23</td><td>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대응단 운영</td><td>근절대책의 이행 및 분기별 실적 점검</td><td>근절대책 이행(추진 완료), 분기별 실적 점검(4월, 7월 회의 개최)</td><td>달성</td></tr>
<tr><td>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근거 마련</td><td>과징금 부과 근거 개정안 국회 통과</td><td>‘21년 3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대다수 쟁점을 해소</td><td>미달성</td></tr>
</table>

○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과징금의 경우 ‘21년 중 3차례 국회 법안소위를 통해 대다수의 쟁점을 해소하였으나, 소수의원이 과징금 부과절차에 대한 이견 제시로 논의가 지속되는 중

* 형벌과 과징금 부과절차를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절차를 규정한 개정안과 달리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td></tr>
<tr><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td>13</td><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보도자료(‘21.4월, 7월)

□ 불공정거래 대응시스템 강화

○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구축** (’21.3월)

○ **「부정거래 적발시스템」가동**(’21.4월)

* 104개사 적출,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적발(4월중)

□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적극 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20.10월~’21.6월) 및 **테마주 집중점검****

* 금감원 1,400여건, 거래소 700여건 신고 접수
→ 11건 조사(금감원), 44건 시장감시(거래소)에 활용

** 189개 종목 신규 추가(12개 분야, 총 511개 종목 모니터링)

○ **불공정거래 예방 및 사전차단 강화**

*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에 시장경보 2,195건, 예방조치 2,425건 등 신속 처리

○ **시장질서교란 행위자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대응**(9명, 9.5억원)

</td></tr>
</table>

		□ 취약부문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 ○ **무자본 M&A 및 전환사채** * 공시상 주요특징을 보이는 25개사 점검, 부정거래 징후 발견된 12개사 기획조사 등 착수 * 회계부정 등이 의심되는 31개사 감리(21개사 완료, 9개사 감리진행중) 등 * 5%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사모 전환사채 공시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 일제점검(600여개사)·암행점검(40여개사) 실시 *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한계법인 집중감시** * 50개사 집중감시, 불공정거래 의심 24개사 심리중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근절대책 이행을 통해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제고하고 증권시장의 건전성 제고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 부과 기대

IV-3-①	일반청약자의 주식시장 참여기회 확대	*우수*

(1) 평가 결과

□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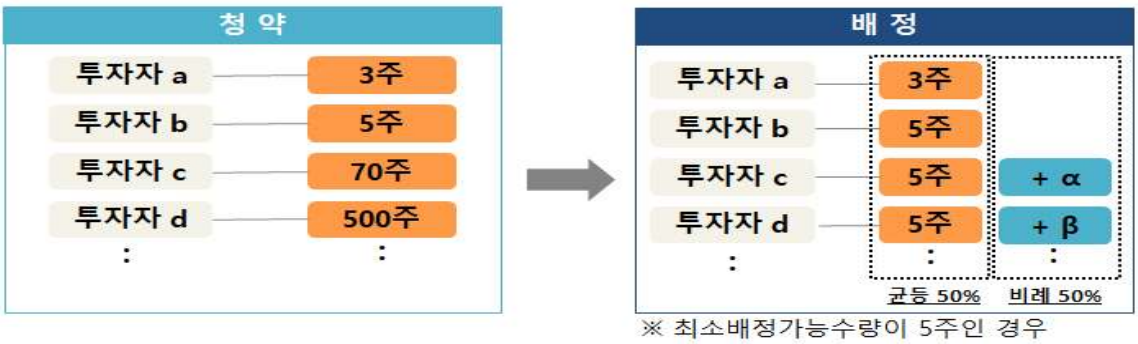
○ **(일반 청약자 배정방식의 형평성 제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

현행	개선
비례방식 **(청약증거금)**	• **비례방식 1/2 이하** • **균등방식 1/2 이상**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 부여

- **균등방식** 적용 제외 물량은 현행과 같이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 적용·배정

< 균등방식 예시 : 일괄 청약방식 >



※ 최소배정가능수량이 5주인 경우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확대)**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 자체**를 크게 **확대**

-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 배정 (동 물량이 5% 미만인 경우 미달물량 전부 대상)

-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10→5%**로 **축소**하여 **'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감축물량(5%)**을 **일반청약자**에 배정

*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의 일몰기간이 `23년까지인 점을 고려

코스피

	현 행		개 선	
	한도	배정	한도	배정
우리사주 조합	20%	11%	20%	11%
일반 투자자	20%	20%	25% (5%p ↑)	30% (5%p ↑)
하이일드 펀드	10%	10%	5% (5%p ↓)	5%
기관 투자자	50%	59%	50%	54% (4%p ↑)

코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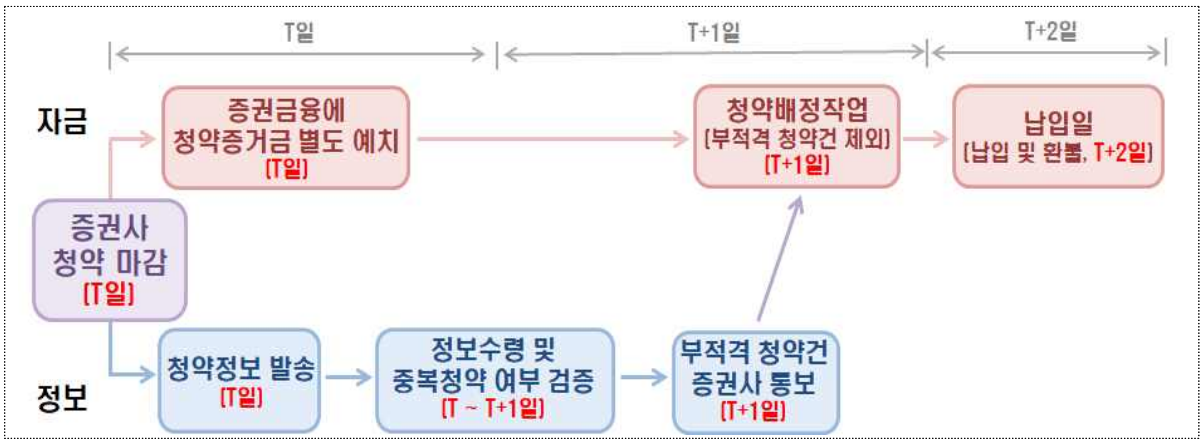
	현 행		개 선	
	한도	배정	한도	배정
우리사주 조합	20%	5%	20%	5%
일반 투자자	20%	20%	25% (5%p ↑)	30% (5%p ↑)
하이일드 펀드	10%	10%	5% (5%p ↓)	5%
코스닥 벤처펀드	30%	30%	30%	30%
기관 투자자	20%	35%	20%	30% (10%p ↑)

○ **(일반청약자 중복청약 금지)** IPO 공모주에 대한 **일반청약자의 중복청약·배정 제한**

-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 불가**

- 이를 위한 **별도의 전산체계 구축**(증권금융) 및 **개인정보 활용근거** 등을 시행령에 반영

< 중복청약금지 시스템 활용시 청약절차 흐름도>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9.75*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IPO 공모시 청약경쟁률 현황('20.8월 현재 1,559:1 수준) 및 일반투자자 배정 확대 관련 해외사례 조사 ☞ Ⅳ-3-①-1-1-ⓐ-1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 Ⅳ-3-①-1-1-ⓐ-2 일반투자자 배정 관련 해외사례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금융투자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에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실시 ☞ Ⅳ-3-①-1-1-ⓑ-1 입법예고 공고문 ☞ Ⅳ-3-①-1-1-ⓑ-2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동 계획은 절차적으로 **매우 충실한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고 판단됨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8.25*	**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발표 후 1개월 내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 차년도 상반기 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계획(성과지표) 발표 ☞ Ⅳ-3-①-1-2「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추진계획은 **월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관련 **시행령·협회규정 개정**과 함께, **전산시스템 구축**을 병행해야 했던 만큼, **이행난이도는 매우 높은 수준**
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8.5*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성과지표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일반청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 지표 ⇨ 관계부처 협의 등 정무적·실무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하는 만큼, 매우 적극적인 목표로 판단됨

<table>
<tr>
<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9.75</td>
<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td><td>시행령 개정안 입법에고(3.11일)</td><td>완료</td></tr>
<tr><td>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시행(6월~)</td><td>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6.15일, 국무회의) → 개정 시행(6.20일~)</td><td>완료</td></tr>
<tr><td>중복청약 금지 관련 제도 모니터링(3분기)</td><td>관련 제도 이행동향 지속 모니터링 중</td><td>완료</td></tr>
<tr><td>중복청약 금지 관련 제도 모니터링(4분기)</td><td>관련 제도 이행동향 지속 모니터링 중</td><td>완료</td></tr>
</table>
☞ IV-3-①-2-1 “IPO 공모주 청약시 중복배정이 제한됩니다”
</td>
</tr>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30</td>
<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u>성과지표 목표를 100% 달성</u>함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td><td>동 시행령 개정</td><td>동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중</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4.75</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수량 확대에 따라, 최소 5% 이상의 공모주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배정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일반 청약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및 국민의 재산형성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익 증진 정도 등

- (정성) IPO 공모주 확보를 위해 ‘새벽밤새기’ 등을 해 왔던 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

☞ IV-3-①-2-3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경쟁률 내려가면 1주 확보는 수월” (MK뉴스 기사)
</td>
</tr>
</table>

IV-3-②	증권사의 중소·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❶ **(방안 마련)** ’21.2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증권사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수립

<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 **(종투사 역할 재정립)**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대출을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로 인정,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를 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제외

□ **(증권사 기업금융 다양화)**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에 대해 NCR 규제 부담 완화

□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활성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확대, 코넥스 상장 지원 기능 강화 유도

□ **(IPO 선진화)** 코스피 상장요건 개편, 상장대상 기업 발굴·육성-수요예측-주가관리 과정에서 주관사의 적극적 역할 유도

❷ **(규정 개정)** 혁신기업 발굴·자금공급을 제한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업무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21.12월)

-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초기 중견기업 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

* 벤처대출: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 ’21.6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총 8개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13.8조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9.5*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19년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방향에 맞추어 초기·중소기업에 혁신금융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투사들을 활용한 모험자본 공급방안 추진 ☞ Ⅳ-3-②-1-1-ⓐ-1-190320_보도자료_혁신금융 추진방향 ☞ Ⅳ-3-②-1-1-ⓐ-2-190320_[별첨2] 금융위원장 발표문 ☞ Ⅳ-3-②-1-1-ⓐ-3-190320_[별첨1] 기대효과 인포그래픽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현장 의견수렴** - 「증권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5개 증권사 대표이사들과 함께 증권업계가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에 기여하는 방안 논의 - 「자본시장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에 있어 정부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 수렴 ☞ Ⅳ-3-②-1-1-ⓑ-1-200827 (보도자료) 증권업계 간담회 개최F ☞ Ⅳ-3-②-1-1-ⓑ-2-200827 (보도참고) 증권업계 간담회_3 ☞ Ⅳ-3-②-1-1-ⓑ-3-210930 (보도자료) 증권시장 유관기관 간담회_FF ☞ Ⅳ-3-②-1-1-ⓑ-4-210930 말씀자료_F_시총업데이트
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6*	**○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중소·혁신기업에의 모험자본 공급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 (1분기)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2분기)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 업무에 추가 초기 중견기업 대출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 · (3분기)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조정 검토 - **(이행난이도)**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및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발표, 규정 개정, 법 개정 등 다양한 과제를 연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분
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6*	**○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규모) 금융감독원 통계치의 **신뢰성과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대표성**이 있으며 **적절한 성과지표**로 판단됨 - **(목표치의 적극성)** ·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규모)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큰폭으로 감퇴시키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직전 3년 평균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적극적인 수준**으로 판단

<table>
<tr>
<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
<td>18.5</td>
<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고</th></tr>
<tr><td>기업금융 활성화방안 마련</td><td>「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21.2월)</td><td>완료</td></tr>
<tr><td>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td><td>금융투자업규정 개정('21.12월)</td><td>완료</td></tr>
<tr><td>초기 중견기업 대출 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td><td>금융투자업규정 개정('21.12월)</td><td>완료</td></tr>
<tr><td>종투사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조정</td><td>논의 중</td><td>일부 완료</td></tr>
</table>
☞ Ⅳ-3-②-2-1-1-(보도자료)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fnfn

☞ Ⅳ-3-②-2-1-2-(별첨)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fn

☞ Ⅳ-3-②-2-1-3-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제2021-54호)(20211209)

o 일부완료・미흡 사유 (필요시 작성)

- 국회의 입법일정이 지체됨에 따라 종투사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조정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와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td>
</tr>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29.25</td>
<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모험자본 공급)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규모를 성과 목표로 설정하여 ’21.6월 6개월 만에 목표(1.35조원) 대비 30억 원 초과한 잠정 1.38조원 규모의 모험자본 공급 조기 달성

☞ Ⅳ-3-②-2-2-1-2021년 상반기 종투사 현황 분석(금감원)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종합금융투자회사의 모험자본 공급규모</td><td>1.35조원</td><td>1.38조원</td><td>달성</td></tr>
</table>
</td>
</tr>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13</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초기자본을 조달하고자 하는 초기・중소・혁신기업이 종투사를 통하여 신용공여를 받아 혁신 지속이 가능해짐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완판 행진 … 다른 증권사는」

(21.7.23. 에너지경제)

발행어음은 … 원금보장이 되면서도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고정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대출 및 채권, 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어 자금조달 수단으로도 활용되며 모험자본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td>
</tr>
</table>

		- 종투사의 모험자본 시장에의 투자는 다른 민간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여 민간으로부터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 **「IBK기업은행, 벤처中企 '모험자본' 조성 도와 … 혁신금융 실천에 앞장** (21.9.28. 매일경제)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은 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 기업은행의 선제적 투자는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해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54억원의 후속 투자를 받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 Ⅳ-3-②-3-ⓑ-1-'발행어음' 시장 경쟁 본격화…모험자본 공급 활기 도나 ☞ Ⅳ-3-②-3-ⓑ-2-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 완판 행진 … 다른 증권사는 ☞ Ⅳ-3-②-3-ⓑ-3-[중기 info] IBK기업은행, 벤처中企 '모험자본' 조성 도와…혁신금융 실천에 앞장

Ⅳ-3-③	크라우드펀딩의 혁신기업 성장지원 역할 강화	*부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논의 지원

- 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
- 6월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실 법안 설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1.6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논의 지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신속 논의 지원

(2)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계획수립의 절차적 충실성 (10점)	*8.75*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분석 등을 통한 사전조사 실시** - (통계분석) 크라우드펀딩 조달실적(예탁원) 등을 통해 **통계분석 및 시사점 도출** ☞ Ⅳ-3-③-1-1-ⓐ- ‘21년말 크라우드펀딩 조달실적(예탁원)

<table>
<tr><td>1-2. 분기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td><td>4</td><td>ㅇ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난이도의 적절성

- (구체성) 분기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 (1분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2분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3분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논의 지원

- (이행난이도) 입법예고, 정책발표, 후속조치 등 다양한 과제를 연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분</td></tr>
<tr><td>1-3.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td><td>4</td><td>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치의 적극성

- (대표성)
· (크라우드펀딩 조달실적) 예탁결제원 통계치의 신뢰성과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대표성이 있으며 적절한 성과지표로 판단됨

- (목표치의 적극성)
· (크라우드펀딩 조달실적)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스타트업 실적 부진 및 관련 투자 침체 등을 감안할 때 직전연도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적극적인 수준으로 판단</td></tr>
<tr><td>2-1. 추진계획의 집행 이행도 (20점)</td><td>17.75</td><td>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의 준수여부

<table>
<tr><th>추 진 계 획</th><th>추 진 실 적</th><th>비 고</th></tr>
<tr><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논의 지원</td><td>ㅇ 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
ㅇ 6월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실 법안 설명</td><td>완료</td></tr>
<tr><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td><td>ㅇ 6월 시행</td><td>완료</td></tr>
</table>

☞ Ⅳ-3-③-2-2-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td></tr>
</table>

<table>
<tr>
<td>2-2.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30점)</td>
<td>24.25</td>
<td>
o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

☞ Ⅳ-3-③-1-1-ⓐ- ‘21년말 크라우드펀딩 조달실적(예탁원)

<table>
<tr><th>성과지표명</th><th>‘21년 목표치</th><th>‘21년 실적</th><th>비고</th></tr>
<tr><td>크라우드펀딩 조달실적(단위: 억 원)</td><td>280</td><td>165</td><td>미달성</td></tr>
</table>

o 추가 설명 사항 (필요시 작성)

-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등을 감안하여 ’ 21년 목표치를 직전연도 수준으로 최초 설정하였으나, ‘21년 중 코로나 19 영향 심화에 따라 연말 목표치 대비 미달성
</td>
</tr>
<tr>
<td>3. 포괄적인 정책효과성 (20점)</td>
<td>7.75</td>
<td>
ⓐ 성과지표 외 계량화된 성과

- (정량) 2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신규 진입(‘21.2월 펀더풀, ’ 21.7월 엑스퀘어)하여 크라우드펀딩의 다양성 제고

☞ Ⅳ-3-③-3-1- ‘21년 신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현황 (예탁원)

ⓑ 국민불편 해소, 국민편인 증진 정도 등

- (정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창업·벤처기업의 유의미한 자금 조달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프로젝트 투자 방식의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 (사례)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드라마)’는 이익참가부사채 크라우드 펀딩으로 최고시청률에 따라 수익률 결정 → 5억원 증권발행 성공(’21.6.)→최고시청률 달성, 5개월만에 8% 수익 지급

☞ Ⅳ-3-③-3-2-결혼작사 이혼작곡 시즌2 실적(펀더풀)
</td>
</tr>
</table>

[붙임] 2021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사무를 담당

□ 핵심기능

혁신금융	▪ 혁신·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주력산업 경쟁력제고 ▪ 모험자본 공급저변 확대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 ▪ 핀테크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혁신금융서비스 육성 ▪ 인터넷 전문은행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산업 진입 촉진
포용적 금융	▪ 금융소비자보호와 불합리한 금융회사 관행 개선 ▪ 정책서민금융 운용 · 중금리 대출 활성화 ▪ 자영업자·고령층·청년층을 위한 지원
금융안정	▪ 금융안정 상시점검·대응체계 운영 ▪ 체계적·안정적 가계부채 관리 ▪ 상시적·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신뢰금융	▪ 불법사금융·금융사기 근절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조직도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1. 금융산업의 선진화 2.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3. 건전한 신용질서·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 4. 금융소비자 보호
비전	1. 신뢰받는 금융 2. 생산적 금융 3. 포용적 금융



	I.	II.	III.	IV.
전략목표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서민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금융질서를 확립한다.**
성과목표	**성과목표 1**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한다.	**성과목표 1**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	**성과목표 1** 서민금융 안전망을 개선한다.	**성과목표 1** 금융분야 공정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목표 2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한다.	**성과목표 2** 은행 등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	**성과목표 2**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성과목표 2**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성과목표 3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한다.	**성과목표 3**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성과목표 3**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성과목표 3**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Ⅰ.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한다.

성과지표	연도말 가계부채 잔액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가계신용
- 조사기관 : 한국은행
- 조사대상 : 금융회사 등
- 조사방법 : 한국은행에서 금융회사 등의 가계신용 통계 취합
- 측정산식 : 가계대출 + 판매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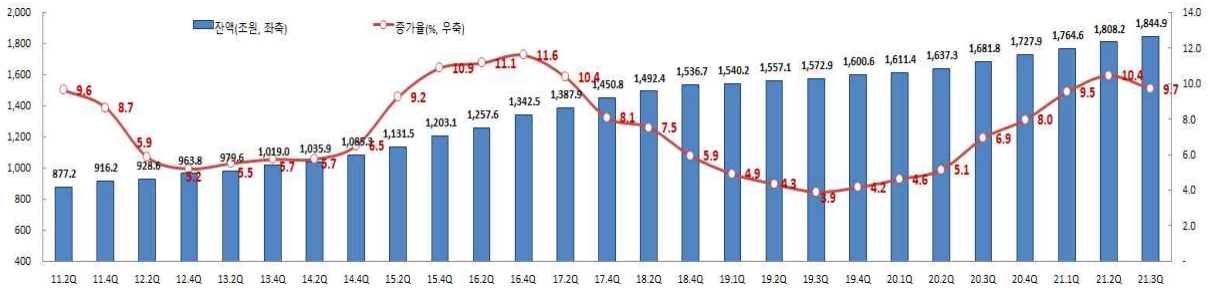
□ '21년 측정결과

○ '21년 3분기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844.9조원으로 전년말 1,727.9조원 대비 6.8% 증가했으며, 동 추세 유지시 **'21년말 목표치**인 **6%대**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가계부채 잔액(한은) : ('21.1Q) 1,764.6조원 → (2Q) 1,808.2조원 → (3Q) 1,844.9원

※ **연도별 가계신용 증가규모**(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한은) (단위 : 조원, %)
('17)+108.3(8.1) → ('18)+86.1(5.9) → ('19)+63.6(4.1) → ('20)+127.3(8.0) → **('21.3)+163.1(9.7)**

가계신용 잔액 및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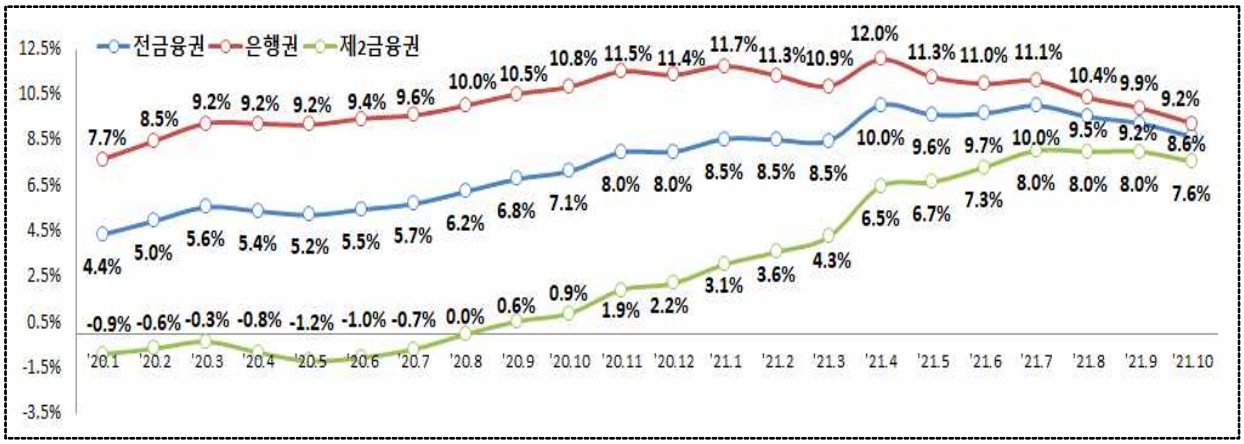
□ 성과분석

○ 코로나19 장기화 과정에서 우리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부각된 가계부채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로 7월 이후 가계부채 급증세가 점차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상반기 중 가계부채는 급증**하였으나,

- 7월부터 **강도 높은 관리 개시**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비, 금감원 속보치) >



○ 아울러, **상환능력 만큼 대출**받는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관리방안」**('21.4.29)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21.10.26)을 마련하여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 (21.7월~) 규제지역 6억원초과 주담대 & 1억원초과 신용대출 → (22.1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 (22.7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및 토지 등 **非주담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기준 하향조정(60%→50%) 및 금융회사별DSR 규제비율 강화

 ** 非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全금융권에 도입('21.5.17)

○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계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21.10.26))

-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개별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신설**, 주신보 출연료 우대 확대 등으로 **주담대 분할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며,

 * '21년 목표/'22년 목표(%): (은행) 57.5/60.0 (상호) 40.0/45.0 (보험) 65.0/67.5
 ** '21.6월말 73.8% → '22년 목표 80%

-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실제만기를 적용하여 일시상환 중심의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로 하였습니다.

○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21.4분기중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하였으며, **잔금대출 TF 운영**으로 입주사업장별 자금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금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 **LTV·DTI가 우대**되는 **서민·실수요자 지원대상**(주택가격 6억→ 9억원 등) 및 **우대수준을 확대**(LTV +10%p→ 최대 +20%p)('21.7.1)하여,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과도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 '22년중 **증가율 5% 내외** 수준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만, 내년도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 **미세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차주단위DSR 확대 시행('22.1월~)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지표 금융업권 총자산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 개념 : 금융업권 총자산(조원)
- 조사기관 : 금융감독원
- 조사대상 : 최근 5년간 금융업권(은행, 보험, 저축은행, 증권) 총자산
- 조사방법 : 각 회사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
- 측정산식 : 합산

□ '21년 측정결과

○ 2021년 9월말 기준 금융업권 총자산은 5,840조원입니다.

- 현재 산출 가능한 9월말 기준 통계로 전년말 대비 364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업권 총자산 변동 추이>

(단위:조원)

시기 / 분류	15년12월	16년12월	17년12월	18년12월	19년12월	20년12월	21년 9월
은행	2,450	2,625	2,739	2,935	3,167	3,464	3,746
보험	951	1,034	1,110	1,155	1,239	1,321	1,338
증권	345	356	390	439	483	599	643
저축은행	44	52	60	70	77	92	113
계	3,789	4,068	4,299	4,598	4,966	5,476	5,840

□ 성과분석

○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 신설**(케이뱅크 '16.12월, 카카오뱅크 17.4월, 토스뱅크 본인가 '21.6월), **온라인 손해보험사 예비허가**(카카오손보 '21.6월), **부동산신탁업자 3개사 신규인가**(대신 '19.7월, 신영·한투 '19.10월) 등 새로운 금융사업자의 성공적 안착으로 금융업권 총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 **신규증권사**('20.11.18일 토스증권 본인가) **인가**로 향후 경쟁촉진에 따른 금융업권 총자산 증가가 기대됩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사잇돌대출 취급**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활발하게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실적은 '20년 1.3조원 → '21년(예상) 2.0조원으로 증가하는 등 은행권 중금리대출 중 약 75%를 차지

< 연도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액(단위: 억원) >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상반기	누적공급액
은 행	7,942	8,922	14,897	18,004	13,020	**66,155**
(인터넷전문은행)	1,371	-	**10,440**	**13,516**	**10,095**	**35,421**
저 축	13,602	28,978	51,275	87,853	69,448	**257,197**
여 전	13,330	19,109	14,289	27,617	28,716	**135,577**
(카드론)	-	-	2,944	10,206	9,767	**22,917**
상 호	2,504	2,926	2,146	1,412	675	**9,662**
합 계	**37,378**	**59,935**	**82,607**	**134,886**	**111,859**	**468,592**

○ **소액단기 보험업 진입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20.11월 국회통과, '21.6월 시행령 개정).

- 스몰라이센스 일환으로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자의 신규 시장진입이 용이**하도록 **자본금요건**(300→20억) **등을 완화하였**습니다.

○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출범('20.11월)하여 보험업을 시작으로 신용평가업, 은행업·신용카드업 순으로 경쟁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21.2월 보험업 경쟁도평가를 완료하고 후속조치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21.3월)을 발표하였습니다.

* ❶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 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보험사 추가허가 등
❷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4세대 실손 의료보험 출시, 배달·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❸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빅데이터, AI 활용 보험상품,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등
❹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IFRS17 연착륙, ESG 경영 활성화 등

- '21.8월 신용평가업의 경쟁도평가를 완료하고 경쟁도평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검토과제 발굴*하였습니다.

* ❶無의뢰 평가제도 도입: 발행사 등 요청 없이도 상환능력 평가 → 투자자 제공
❷이해상충방지 강화: 신평사 또는 계열사의 영업·마케팅 요소가 신평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장치 강화(인가요건 반영 등)
❸신평사 관리·감독체계 개선: 인가유지 요건 등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제 강화

- 은행업·신용카드업은 경쟁도평가를 착수하였으며, '22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

□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신규 **온라인 전문 보험회사 본허가** 추진, 은행업·신용카드업 **경쟁도 평가 완료** 및 전금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 5년후 목표치(조원) : ('26년) 7,387

-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 플랫폼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고객접점의 중심축이 오프라인 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여 **금융플랫폼 구축 등도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사잇돌대출 누적공급액

□ 성과지표 개요

〈 사잇돌대출 누적공급액 〉

- 개념 : '16년 사잇돌대출 출시 이후 현재까지의 공급액 누계
- 조사기관 : 서울보증보험
- 조사대상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 조사방법 :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실적을 통해 공급액 파악
- 측정산식 : 합산

□ '21년 측정결과

○ '21년 **사잇돌 대출 공급액은 2조원**으로 목표 공급액(1.45조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21년까지의 **누적 공급액**은 **9.26조원**입니다.

- '21년 계획 수립 시 **사잇돌대출***의 '21년 **보증한도를 2조원 추가**하여 **총 9.26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보증대출상품. 금융회사가 평소 보험료를 납부하고, 중금리 대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

- '21년 **공급한도 2조원**을 전액 소진하여 보증한도 여력 내에서 **최대한으로 사잇돌대출을 공급**하였습니다.

< 업권별 사잇돌대출 공급액 >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누적공급액
은 행	2,504	3,974	5,731	12,871	15,461	15,670	56,211
(인터넷전문은행)	-	-	-	9,167	12,366	12,257	33,788
저 축	1,225	4,697	11,004	7,270	4,106	4,129	32,431
상 호	-	897	1,605	991	280	210	3,983
합 계	3,729	9,568	18,340	21,132	19,847	20,008	92,624

□ 성과분석

○ **(중금리 성과) 사잇돌대출**이 중금리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에 따라, 은행, 여전,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민간 중금리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21.9월까지 14조 6,694억원**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공급하여, '20년 전체 공급실적을 초과하였습니다.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액 >

(단위: 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9월	누적공급액
은 행	866	3,969	3,190	2,063	2,580	3,877	16,545
(인터넷전문은행)	-	1,371	-	1,299	1,149	2,699	6,518
저 축	4,816	8,905	17,974	44,011	84,286	97,306	257,297
여 전	3,799	13,330	19,109	14,289	27,964	44,649	123,140
상 호	-	1,608	1,321	1,594	1,216	862	6,601
합 계	**9,481**	**27,812**	**41,594**	**61,957**	**116,045**	**146,694**	**403,583**

○ **(사잇돌대출 신용점수 요건 신설)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그간 **사잇돌대출이 고신용층에 일부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신용점수 하위 30%**(기존 5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도록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에 **신용점수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22.1.3일~)

○ **(민간중금리 개편) 중·저신용층에 대한 모든 중금리대 대출이 민간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도록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게 공급되는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하였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22.1.1일 시행)

-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금리상한 요건**도 **인하**하였습니다.

< (현 행)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	6.5%	8.5%	11.0%	14.0%	16.0%
금리상한	10.0%	12.0%	14.5%	17.5%	19.5%

↓

< (개 선)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금리상한	6.5%	8.5%	11.0%	14.0%	16.0%

○ **(인센티브 제공)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과 2금융권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였습니다.

- (**은행**) **중금리대출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도록, 금융감독원 검사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였습니다.

- (**2금융권**) **2금융권 중금리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 하여,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시장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유도**하였습니다.

 *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액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여전·저축·상호금융업권의 20%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는 불이익을 폐지하는 등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10월)

○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1.5월)

□ 향후 추진계획

○ 사잇돌대출은 '16년 출시 당시 중금리대출 시장 형성을 위한 과도기적 상품으로 설계되었으며, **당초 목적인 중금리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최근 민간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액이 14조원 이상(vs. 사잇돌 2조원)까지 증가 등

○ 중금리대출 시장이 유의미한 성장을 이룬만큼 서울보증보험 부담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잇돌대출 공급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민간중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비중

□ 성과지표 개요

〈 지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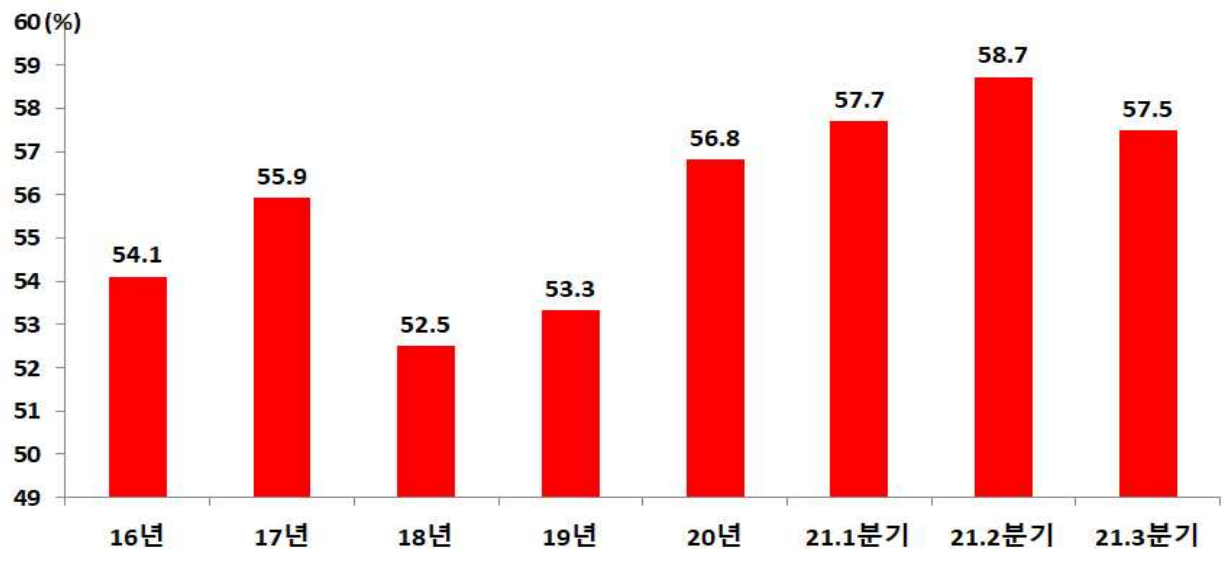
- 개념 :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
- 조사기관 : 한국은행
- 조사대상 : 바금융법인기업
- 조사방법 : 한국은행에서 관련 통계 취합(자금순환표)
- 측정산식 : 채권발행 + 지분증권

□ '21년 측정결과

○ '21.3분기 기준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비중"은 **57.5%**로, '21년말 조달비중은 당초 **'25년말 목표치인 56.2%를 상회**하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 '21.3분기 57.5%의 실적은 **'20년말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 추이(%, 한은)



□ 성과분석

< 주요 정책 >

❶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하였습니다.('21.2월)

❷ **벤처대출*을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하였습니다. ('21.2월)

*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부분 차감),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분투자시 주식집중위험액 산정 면제 등

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프로젝트 투자***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1.6월)

* 다른 사업과 회계 독립성을 유지하여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❹ **IPO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있게 구현될수 있게 일반청약자의 중복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1.6월)

*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시 최초 접수된 청약건에 대해서만 배정

❺ **SPC·금융회사**에 대한 **대출·투자**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21.12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50%이상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해야함

< 주요 성과 >

❶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금융부문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며 **실물경제의 회복을 견인**하였습니다.

* KOSPI (단위 : pt) : ('19) 2,197 ('20) 2,873 ('21.1.7) 3,000 ('21.7.6) 3,305 ('21) 2,977
** KOSDAQ (단위 : pt) : ('19) 669 ('20) 968 ('21.4.12) 1,000 ('21) 1,033

❷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개인투자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주식투자가 국민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주식거래활동계좌수(단위 : 백만) : ('18) 27.0 ('19) 29.4 ('20) 35.5 ('21) 55.5
** 개인투자자 수(단위 : 만명) : ('18) 557 ('19) 613 ('20) 913 ('21) 1,000↑

❸ 증시 활황에 힘입어 **신규 시장참여도 확대**되면서 IPO 공모금액이 역대 최고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이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 IPO 공모금액(단위 : 조원) : ('18) 2.96 ('19) 3.98 ('20) 5.92 ('21) 20.8

❹ '21.6월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총 8개사)의 **기업 신용공여 총액**은 **13.8조원**으로 '14년말 0.8조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종투사 기업신용공여 총액(조원, 금감원) : ('14) 0.8 ('16) 2.1 ('17) 4.9 ('18) 10.6 ('21.6월) 13.8

❺ '21년말 회사채 발행 실적은 **135조원**으로 '17년말 86조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회사채 발행 실적(조원, 코스콤) : ('17) 86 ('18) 105 ('19) 117 ('20) 127 ('21) 135

□ 향후 추진계획

○ '22년중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사다리**로서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안) >

◈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

❶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를 개편하여 기업 신규상장 유도

❷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 폐지하여 투자 접근성 확대

❸ 최대 1천억 규모「코넥스 스케일업 펀드」조성 등 지원 강화

○ 또한, **소액공모 기준을 합리화**하고, **전문투자자 대상 공모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